2020 저작권 수출에 따른 통상 현안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참여연구진 김찬동 박윤석
김효주 김세창
안진영



목 차

1. 서론 ····· 01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 01

나. 연구 방법 및 범위 ····· 05

2. 외국 통상 내용 분석 ····· 11

가. 중국을 바라본 외국 통상 보고서 ····· 11

(1) 2020 스페셜 301조 보고서 ····· 11

(2) 2020 NTE 보고서 ····· 14

(3) 2019 Notorious Market 보고서 ····· 16

(4) 2019 유럽집행위원회 IP 집행 및 보호 보고서 ····· 19

나. 베트남을 바라본 외국 통상 보고서 ····· 21

(1) 2020 스페셜 301조 보고서 ····· 21

(2) 2020 NTE 보고서 ····· 21

(3) 2019 Notorious Market 보고서 ····· 22

(4) 2019 유럽집행위원회 IP 집행 및 보호 보고서 ····· 22

다. 태국을 바라본 외국 통상 보고서 ····· 23

(1) 2020 스페셜 301조 보고서 ····· 23

(2) 2020 NTE 보고서 ····· 23

(3) 2019 Notorious Market 보고서 ····· 24

(4) 2019 유럽집행위원회 IP 집행 및 보호 보고서 ····· 24

3. 각국과의 저작권 통상 쟁점 ····· 26
가. 중국 ····· 26
(1) 한중 FTA ····· 26
(2) 중국 개정 저작권법 ····· 32
(3) OSP 관련 개정 법률 ····· 39
(4) 1단계 미·중 경제무역협정 ····· 42
(5) 방송 분야 ····· 44
(6) 음악 분야 ····· 45
나. 베트남 ····· 48
(1) 한베 FTA ····· 48
(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 54
(3) 음악 분야 ····· 55
다. 태국 ····· 57
(1) 태국과의 FTA ····· 57
(2) 태국 저작권법 개정 ····· 57
(3) 음악 분야 ····· 58

4. 대응 방안 ····· 59
가. 중국 ····· 59
(1) 음반의 2차적 이용에 대한 보상청구 ····· 59
(2) 방송사업자의 권리 확대 주장 ····· 61
(3) 권리 추정 ····· 63
(4) 방송사업자의 저작물 방송시 보수 지급 ····· 64
(5) 영화 도촬 ····· 65
(6) OSP 책임 ····· 66
(7) 1단계 미·중 경제무역협정 및 외국 통상 보고서에서의 시사점 ··· 67
(8) 음악 분야 ····· 68

나. 베트남 ····· 70
(1) 실연자의 복제권 ····· 70
(2) 음반의 2차적 이용에 대한 보상청구 ····· 70
(3) RCEP ····· 71
(4) 외국 통상 보고서에서의 시사점 ····· 72
(5) 음악 분야 ····· 72
다. 태국 ····· 73
(1) RCEP ····· 73
(2) 태국 저작권법 관련 대응 방안 ····· 73
(3) 외국 통상 보고서에서의 시사점 ····· 74
(4) 음악 분야 ····· 74

5. 결론 ····· 76

참고문헌 ····· 79

번역자료 ····· 82
• 2020 스페셜 301조 보고서 ····· 82
• 2020 NTE 보고서 ····· 97
• 2019 Notorious Market 보고서 ····· 112
• 2019 유럽집행위원회 IP 집행 및 보호 보고서 ····· 125

요약문

2020 저작권 수출에 따른 통상현안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중국, 베트남, 태국은 우리나라 저작물의 주요 소비 국가로서, 음악을 비롯한 우리나라 저작권이 많이 수출되는 국가들이다. 중국과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양자 FTA를 체결하였으며, ASEAN 회원국인 태국과는 한-ASEAN FTA와 RCEP을 체결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FTA 내용을 중심으로 각국의 저작권 법령을 분석하여 FTA 내용과 비교·검토하였다. 그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음악 분야 집중관리단체와의 면담을 통해서 음악분야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중국은 제3차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저작권 제도가 한층 발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방송사업자에게 허락권이 아닌 금지권만을 부여하고 있는 부분과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영화를 불법적으로 복제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은 한중 FTA 관점에서는 미흡한 부분으로 분석되었다.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실연자와 투자자가 다른 경우 실연자는 인격권만을 가지게 되어 한베 FTA에 따른 실연자의 복제권이 부분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권리자가 음반의 2차적 이용에 대한 방송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고 있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태국의 경우 WCT·WPPT 가입을 위하여 태국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과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RCEP이 발효되면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면밀히 조사·분석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음악 권리자 단체의 면담을 통하여 국내를 중심으로 한 권리 행사로 인하여 외국에서의 우리의 권리 행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베트남·태국과의 FTA와 각국의 법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권리자가 해당 국가에서의 권리 행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A study on analysis of trade issues and solutions related to copyright export

China, Vietnam, and Thailand are major consumers of Korean works, and are countries where many Korean copyrights including music are exported. China and Vietnam signed the FTA with Korea and Thailand, an ASEAN member state, signed the ASEAN-Korea FTA and RCEP with Korea. In this study, with a focus on the cotents of the FTA, the copyright laws of each country were analyzed, and compared and reviewed with the contents of the copyright section in the FTA. In addition, we listened to the opinions of the music industry by having interviews with the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of the music sector such as the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China is being evaluated as having further developed the copyright system through its third revision of the copyright law. However, some points that the broadcasting organization is granted only the right to prohibit, not the right to permit, and that there is no provisions of criminal penalties for illegal copyright of movies in theaters were analyzed to be insuffici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Korea-China FTA.

In the case of Vietnam, the performer and the investor are distinguished in the Vietnamese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the performer has been granted only moral rights except reproduction right of his or her performance. This could partially limit the performer's right to reproduce his or her performance under the Korea-Vietnam FTA. Also, it was found that performers can claim by themselves the remuneration for secondary use of the phonogram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based on the Korea-Vietnam FTA, but they have not exercised their

rights in Vietnam.

For Thailand, where the copyright law reform is in progress in order to join the WCT and WPPT,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progress of its reform. Also, once the RCEP takes into force, it would be necessary to closely analyze the implementaion of the RCEP.

Through interviews with music copyrights holders' groups, it was found out that our rights are not being exercised well in foreign countries due to the exercise of rights centered in Korea.

This study, focused on the FTAs with China, Vietnam, and Thailand and their respecitve copyright laws, is expected to be used as a basis for our rights holders to exercise their rights overseas.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지난 2월, 영화 '기생충'은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감독상·각본상(한국 및 아시아 영화 최초)·국제장편영화상(한국 영화 최초)'을 수상하며 4관왕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했다. 그리고 최근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은 신곡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싱글 차트 핫100'에서 2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 두 개의 신기록은 한류의 영향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해준 경험이 아니었나 싶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9년 연간 콘텐츠산업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4.9% 증가한 125조 4,164억 원을 기록했으며, 수출액 또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한 103억 9,230만 달러(약 12조 2,701억 원)를 기록했다고 한다.[1] 또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이 공개한 '2019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상품 수출액은 한류 덕분에 전년 동기 대비 19.2% 늘어난 63억8천400만 달러(약 7조5,375억 원)를 기록했다고 한다.[2]

한류의 인기를 통한 간접 수출효과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들의 외모, 패션, 먹거리 등을 따라하고 싶은 글로벌 소비자들이 증가하며 화장품, 액세서리, 식음료 시장은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 방탄소년단의 경우, 구글 검색을 통한 방탄소년단 인지도가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화장품 수출이 0.72%p, 음식류 수출이 0.45%p, 의류 수출이 0.1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

---

1)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년 하반기 및 연간 콘텐츠 산업 동향분석 보고서, 2020, 31~32쪽.

2) 전종근·김승년, 2019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2020),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45쪽.

3) 장유미, BTS 성공 발판 '케이콘'…이재현 뚝심 덕에 '문화 한류' 주도, 아이뉴스24, '20.09.10 〈http://www.inews24.com/view/1298268〉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서도 이러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월에 발표된 “2020년 상반기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4]에서 산업재산권은 17억달러 적자를 보인 반면, 저작권은 10.4억달러 흑자를 나타냈다고 한다. 저작권 분야는 ‘문화예술저작권’과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으로 구분[5]이 되며, ‘문화예술저작권’ 분야는 2019년 까지 계속해서 적자를 나타낸 반면,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분야는 흑자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2020년 상반기에는 ‘문화예술저작권’ 분야에서 0.8억달러 흑자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COVID-19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마이너스 경제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저작권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한된 것은 상당한 의미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행 관계자는 “국내 온라인 게임 수출이 늘고, 광고회사에서 사용한 영상이나 음향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이 줄어들면서 저작권 수지가 개선됐다”며 “한류의 영향도 있을 텐데 정확히 그 정도가 얼마인지 분리해낼 수는 없고 K드라마 영상 수출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6]

유형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추이

(억달러)

	2018	2019p	2018		2019p		2020p
	연간	연간	상반	하반	상반	하반	상반
수지	**-6.1**	**-8.0**	**-5.1**	**-1.0**	**-8.8**	**0.8**	**-7.5**
산업재산권	-15.2	-21.4	-9.7	-5.6	-14.5	-7.0	-17.0
특허 및 실용신안권	-16.5	-18.9	-9.4	-7.1	-13.4	-5.5	-9.7
디자인권	-1.8	-0.8	-1.0	-0.9	-0.9	0.1	0.1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3.0	-1.7	0.7	2.4	-0.1	-1.6	-7.4

4)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0년 상반기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2020.9.18.

5) ‘문화예술저작권’ 분야는 음악 · 영상 저작권(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뮤지컬 등의 방영, 복제, 배포 등에 대한 독점 배타적 권리)과 어문·연극·미술·건축·사진·도형 저작권(책, 원고, 간행물, 그림, 조각, 설계도면 등의 인쇄, 출판, 발행, 복사, 전시, 배포 등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으로,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분야는 연구개발 저작권(연구개발의 결과로서 작성된 독창적인 저작물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독창성이 인정되는 창작물로서의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오랜 시간에 걸쳐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한 결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및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으로 구분하고 있다.

6) 중앙일보, ‘BTS 신드롬’덕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 사상 첫 흑자, (김경희 기자, 2020.9.18. 보도) 〈https://news.joins.com/article/23875307〉 (2020.11.9. 최종 방문)

저작권	14.7	16.2	7.2	7.5	7.4	8.8	10.4
문화예술저작권	-2.9	-1.8	-1.5	-1.4	-0.9	-0.9	0.8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17.6	18.0	8.6	8.9	8.2	9.8	9.7
기타 지식재산권	-5.5	-2.8	-2.6	-2.9	-1.7	-1.0	-0.9
수출	**150.2**	**152.7**	**72.7**	**77.5**	**76.4**	**76.2**	**74.0**
산업재산권	68.9	64.9	33.6	35.3	33.9	31.0	23.3
특허 및 실용신안권	44.3	44.3	22.1	22.1	22.9	21.4	17.8
디자인권	1.0	1.5	0.5	0.5	0.4	1.0	0.9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23.6	19.2	11.0	12.7	10.6	8.6	4.6
저작권	80.4	86.2	38.6	41.8	41.7	44.5	50.2
문화예술저작권	13.4	14.8	6.3	7.1	7.0	7.8	7.5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67.0	71.4	32.3	34.8	34.8	36.7	42.7
기타지식재산권	0.9	1.5	0.6	0.3	0.8	0.7	0.4
수입	**156.3**	**160.7**	**77.8**	**78.5**	**85.2**	**75.4**	**81.5**
산업재산권	84.1	86.4	43.3	40.9	48.4	38.0	40.4
특허 및 실용신안권	60.7	63.2	31.5	29.2	36.3	26.9	27.5
디자인권	2.8	2.3	1.4	1.4	1.4	0.9	0.8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20.6	20.9	10.3	10.3	10.7	10.2	12.1
저작권	65.7	70.1	31.4	34.3	34.4	35.7	39.8
문화예술저작권	16.3	16.6	7.8	8.5	7.8	8.8	6.8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49.5	53.5	23.6	25.8	26.6	26.9	33.0
기타 지식재산권	6.4	4.2	3.2	3.3	2.5	1.7	1.3

출처 : 한국은행, 2020년 상반기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거래상대방 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서도 미국(-18.5억달러), 영국(-4.5억달러), 일본(-2.2억달러) 등의 국가는 적자를 보인 반면, 중국(11.9억달러), 베트남(9.5억달러) 등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듯 중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는 우리나라의 저작권 수출의 중요한 상대 국가들이다.

거래상대방 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추이

(억달러)

	2018	2019p	2018		2019p		2020p
	연간	연간	상반	하반	상반	하반	상반
수 지	**-6.1**	**-8.0**	**-5.1**	**-1.0**	**-8.8**	**0.8**	**-7.5**
미 국	-46.6	-36.8	-20.5	-26.1	-22.3	-14.5	-18.5
영 국	0.6	-4.9	-0.1	0.7	-2.5	-2.5	-4.5
중 국	30.9	20.1	16.1	14.8	10.5	9.6	11.9
베트남	24.6	23.2	12.4	12.2	11.7	11.4	9.5
일 본	-6.9	-7.8	-5.3	-1.6	-5.0	-2.8	-2.2
기 타	-8.7	-1.8	-7.8	-1.0	-1.3	-0.5	-3.7
수 출	**150.2**	**152.7**	**72.7**	**77.5**	**76.4**	**76.2**	**74.0**
미 국	22.0	26.8	11.7	10.3	11.8	14.9	12.6
영 국	10.5	13.4	4.8	5.7	5.4	8.0	9.2
중 국	33.0	25.6	17.2	15.8	15.1	10.5	13.0
베트남	24.8	23.3	12.5	12.3	11.8	11.5	9.6
일 본	4.3	4.8	2.1	2.2	2.3	2.5	2.5
기 타	55.5	58.8	24.4	31.2	30.0	28.8	27.1
수 입	**156.3**	**160.7**	**77.8**	**78.5**	**85.2**	**75.4**	**81.5**
미 국	68.6	63.5	32.3	36.4	34.2	29.4	31.2
영 국	9.9	18.3	4.9	5.0	7.9	10.4	13.6
중 국	2.1	5.4	1.1	1.0	4.6	0.9	1.1
베트남	0.1	0.2	0.1	0.1	0.1	0.1	0.1
일 본	11.2	12.6	7.4	3.9	7.3	5.3	4.8
기 타	64.3	60.6	32.1	32.1	31.2	29.3	30.8

출처 : 한국은행, 2020년 상반기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이와 같이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류 문화 확산에 따라 외국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작권 수출에 따른 통상 현안 및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가 없고, 저작권자들의 해외 수출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수집하는 프로세스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경우 지식재산권 통상 분야 현안 조사 및 상대 교역국과의 협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통상 압력 효과를 거두고 있는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 이하 'NTE 보고서')[7], 스페셜 301조 보고서(Special 301 Report) [8], 악명높은 시장(Notorious Market)[9] 등의 보고서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EU는 유럽 콘텐츠 수출 기업이 외국과 무역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잠재적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비즈니스 전략 및 운영에 이용할 수 있도록 유럽집행위원회 IP 보호 및 집행 보고서(Report on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ird countries)를 2년에 한 번씩 발표하고 있다.[10]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미국과 EU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저작권 수출에 있어서 관련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업계의 개별적인 대응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나. 연구 방법 및 범위

저작권 분야 통상 현안 파악을 위하여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에는 인적인 한계와 시간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일부 국가로 한정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콘텐츠 시장 규모를 들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 최대 시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

7) NTE 보고서는 미국의 지식재산권 등 재화와 용역의 수출, 개인과 기업의 직접해외투자,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무역 장벽(trade barriers) 등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있다.

8)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주요 교역 대상국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수준에 대하여 조사·평가하고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우선감시대상국(PWC)', '감시 대상국(WC)', 미국과 협상이 원활하지 않은 국가들을 '우선협상대상국(PFC')로 분류하여 공표하고 있다.

9) 악명높은 시장 보고서는 저작권 침해 및 상표 위조를 두드러지게 조장·관여하거나, 침해 및 위조의 규모가 커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유자와 소비자, 적법한 온라인 플랫폼 및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전 세계 온·오프라인 시장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이다.

10) 유럽 집행위원회 IP 보호 및 집행 보고서는 지식재산권의 보호·집행·침해 사례, 조치 및 대응을 위한 유관 기관의 지원 및 협조 사례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EU 회원국의 지식재산권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각국을 3가지 등급으로 분류한 결과와 해당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국가별 콘텐츠 산업 규모 및 전망[11)]

(단위 : 억 달러, %)

순위	국가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8-23 CAGR
1	미국	7,056	7,395	7,740	8,046	8,415	8,764	9,131	9,455	9,779	10,077	3.67
2	중국	1,934	2,299	2,710	3,143	3,407	3,653	3,883	4,097	4,302	4,485	5.65
3	일본	1,656	1,697	1,771	1,832	1,889	1,939	1,993	2,037	2,083	2,125	2.38
⋮	⋮											
7	한국	506	522	542	588	623	656	692	727	762	795	5.01
⋮	⋮											

다음으로 법제나 이슈에 대한 정보 입수의 수월성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이 정보를 입수하는데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류가 어느 정도 보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각국의 한류 지수와 한류 이용자 분포 현황 등을 고려 대상으로 삼았다. 한류 지수와 이용자 분포 현황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조사 발표한 "2019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를 활용하였다.[12)] 동 연구에서의 한류현황 지수는 인도네시아(3.65), 베트남(3.62), 말레이시아(3.58), 태국(3.42), 대만(3.36), 중국(3.23), 브라질·터키(3.12) 순으로 나타났다. 열성적인 이용자는 베트남(71.6%), 태국(71.2%), 인도네시아(68.6%), 말레이시아(59.4%), 대만(57.8%), 중국(51.4%) 순으로 나타났다.

11)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해외 콘텐츠시장 분석, 2020, 12쪽.

12) '한류지수'는 각국에서 현재 한류의 대중화 정도를 나타내는 '한류현황지수'와 한류 인기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한류심리지수'로 구분되며, 5점 만점으로 측정된 '한류현황지수'는 3.5 이상인 경우 한류대중화단계, 2.5 이상 3.5 미만은 한류확산단계, 그리고 2.5 미만은 소수관심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한류심리지수'는 100점 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한류쇠퇴, 그 이상은 한류성장으로 해석하며 100~129는 중간성장, 130 이상은 고성장그룹으로 분류한다. (전종근·김승년, 앞의 연구, 19쪽.)

국가별 한류 이용자 집단 분포[13)]

	한류지수		한류 이용자 분포			
	한류현황 지수	한류심리 지수	열성적 이용자	집중적 이용자	실험적 이용자	저 이용자
인도네시아	3.65	141.90	68.6%	16.0%	9.2%	6.2%
베트남	**3.62**	**137.30**	**71.6%**	**14.2%**	**6.8%**	**7.4%**
말레이시아	3.58	127.55	59.4%	16.6%	11.6%	12.4%
태국	**3.42**	**136.87**	**71.2%**	**13.2%**	**8.6%**	**7.0%**
대만	3.36	115.92	57.8%	19.2%	11.6%	11.4%
중국	**3.23**	**121.80**	**51.4%**	**11.2%**	**18.0%**	**19.4%**
브라질	3.12	133.22	32.2%	23.4%	8.8%	35.6%
터키	3.12	135.77	29.8%	34.0%	9.5%	26.8%
UAE	3.05	128.00	34.3%	27.3%	8.5%	30.0%
인도	3.04	137.13	37.0%	22.4%	13.6%	27.0%
일본	2.82	88.72	18.8%	22.0%	9.4%	49.8%
호주	2.80	115.17	24.5%	19.5%	10.0%	46.0%
미국	2.77	115.92	20.8%	20.8%	6.2%	52.2%
프랑스	2.76	115.02	15.0%	24.4%	8.4%	52.2%
러시아	2.70	119.71	13.8%	28.5%	5.8%	52.0%
영국	2.60	115.18	16.2%	21.0%	5.6%	57.2%
남아공	2.54	125.25	23.8%	25.8%	8.8%	41.8%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국가로 중국, 베트남, 태국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2019년에 진행한 “2019 저작권 수출에 따른 통상현안 분석 및 해결 방안 연구”[14)](이하 ‘2019년 연구’라 한다)에서도 중국, 베트남, 태국으로 한정하여 진행한 바 있다.

2019년 연구에서는 ▸ 외국 통상 보고서(미국 스페셜 301조 보고서·NTE 보고

13) 전종근·김승년, 위의 연구, 26쪽.

14)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의뢰하여 법무법인 세종(책임연구자 임상혁 변호사, 참여연구원 송재섭 변호사, 문진구 변호사, 황지원 변호사, 김소리 변호사, 박민영 미국 변호사) 연구팀에서 수행하였다.

서·Notorious Market 보고서, 유럽집행위원회 IP 집행 및 보호 보고서) 내용을 분석하고, ▸ 저작권 통상현안 파악 및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 조사와 중국·베트남·태국에 콘텐츠를 수출하는 업체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 중국·베트남·태국의 저작권 관련 법제, FTA 조항 및 현행 지원 제도를 검토한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외국 통상 보고서(미국 스페셜 301조 보고서·NTE 보고서·Notorious Market 보고서, 유럽집행위원회 IP 집행 및 보호 보고서)를 분석하는 한편, 중국·베트남·태국을 바라보는 미국과 EU의 시각을 자세히 전달하기 위하여 저작권 관련 내용을 발췌·번역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2019년 연구에서는 저작권 분야 통상 현안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국·베트남·태국에 저작권을 수출하는 업체를 7개 분야(방송, 영화, 음악, 웹툰, 출판, 캐릭터, 게임)로 나누어 저작권 통상 현안에 관한 설문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019년 연구에서 설문조사, 인터뷰 및 보고서의 발행 주기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주체들이 잦은 의견 수렴에 피로감을 느껴 의견 제시를 덜하거나 형식적으로 할 우려가 있고, 전년도 보고서와 금년도 보고서가 크게 다르지 않다면 예산의 낭비라는 지적이 나올 우려도 있기 때문에 2년 내지 3년 정도가 적정할 것 같다고 제시한 바 있다.[15] 이에 2020년에는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대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접한 중국·베트남·태국에서의 저작권 이슈에 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 사무소나 해당 국가의 법제에 정통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이슈를 파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콘텐츠의 한류국에서의 소비 비중은 영화(69.7%), 드라마(34.6%), 음악(29.8%), 예능(28.2%)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영화의 경우 한국 영화의 세계적 인기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영화를 연 1~2편 정도로 드물게 보는 사람 중에 한국 영화를 본 사람의 비중이 높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16] 영화를 제외하고 드라마나 예능의 경우 대부분 방송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한류를 대표하는 분야 중에 가장 활발하게 진출되고 있는 방송물과 음악 분야의 경우 저작권해외진흥협회[17], 한

15) 임상혁 외 5인, 2019 저작권 수출에 따른 통상현안 및 해결 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9), 106쪽.

16) 전종근·김승년, 앞의 연구, 28쪽

17)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KBS, MBC, SBS, JTBC, 레진엔터테인먼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회원

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반산업협회와의 개별 면담을 통해 저작권 수출에 따른 현안 사항을 파악하고자 한다.

한류콘텐츠 소비 비중[18)]

단위 : %

구분	드라마	예능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출판물	게임
중국	40.7	33.9	58.5	30.0	23.2	21.1	26.4
일본	29.8	20.3	76.2	28.4	17.4	17.7	19.5
대만	38.7	29.8	71.0	26.8	14.4	15.3	21.6
태국	35.3	28.8	76.7	31.2	21.8	21.0	27.5
말레이시아	43.7	35.1	66.0	36.9	20.0	16.3	21.2
인도네시아	43.7	34.7	72.7	35.9	23.8	25.7	28.8
베트남	48.2	37.6	63.6	36.4	26.9	22.3	28.5
인도	32.7	30.9	65.7	27.9	24.2	22.8	26.9
호주	32.6	26.4	72.6	27.9	19.5	18.7	18.9
미국	28.8	25.6	78.5	25.3	25.8	24.0	27.2
브라질	30.2	26.9	69.4	33.1	27.7	24.5	29.7
프랑스	23.8	22.4	78.3	23.0	19.2	22.9	16.3
영국	27.2	21.2	75.0	24.6	14.4	12.7	18.8
러시아	36.6	24.2	62.2	29.4	19.8	22.0	24.0
터키	38.3	28.7	69.0	33.0	23.5	26.8	29.5
UAE	29.5	28.2	66.7	30.9	24.9	26.1	28.9
남아공	28.4	25.3	62.6	26.3	22.5	19.6	25.1
평균	34.6	28.2	69.7	29.8	21.7	21.1	24.6

우리나라는 중국과 베트남과는 FTA를 직접 체결하고 있으며, 태국의 경우에는 FTA를 직접 체결한 바 없다. 태국은 ASEAN 회원국으로 우리나라는 ASEAN과 FTA 및 역

사이며,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한국 문화 콘텐츠 해외 유통 및 침해 현황 조사,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및 해외 저작권 인식 제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이다.

18) 국가별 열성적 이용자의 한류콘텐츠 소비 비중에서는 '패션', '한식', '뷰티' 분야도 있었으나, 이들 분야는 저작권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기 때문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생략하였다.(전종근·김승년, 앞의 연구, 28쪽 참조)

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체결한 바 있다. 이들 조약과 각국의 저작권법 내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권리자가 해당 국가에서 권리 행사를 하는데 미흡하거나 장애가 되는 제도가 있는지 파악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외국 통상 보고서 내용 분석

가. 중국을 바라본 외국 통상 보고서

(1) 2020 스페셜 301조 보고서

(가) 개요

중국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우선감시대상국 목록에 포함되었다. 중국은 기술이전을 강요하거나 압박하지 말고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를 취하고, 최근 지식재산 조치에 대한 개정을 시행하고, 해외투자에 대한 시장을 개방하여야 하며, 자원을 배분하는데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USTR은 기술이전, 지식재산 및 혁신과 관련된 불공정하고 유해한 중국의 행위, 정책 및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2020년 1월 1단계 미·중 경제무역협정을 서명했으며, 동 협정에서는 중국은 불법 복제 및 위조 상품에 대한 민사, 행정 및 형사 집행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미국은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제거하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중국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19]

(나) 지식재산권 집행

지식재산권 집행과 관련하여, 중국 사법 당국은 가처분이나 판결 보다는 일부 결정만을 게재하는 등 투명성이 결여되었음을 지적되고 있으며, 중국 행정 집행 당국은 권리자에게 집행의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행정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뿐만 아니라 지방기관의 공무원, 당의원 및 법원의 독립과 법치의 독립을

19) USTR, 2020 Special 301 Report, p.39.

훼손하는 강력한 지역 이익집단의 개입이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USTR은 중국에서 법의 지배를 장려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법부의 실질적인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권리자들은 사법부의 독립성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법정 최저 수준의 불충분한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으며, 형사 집행을 위한 부담스러운 기준, 무리한 인증 및 기타 증거 요건, 요구되는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는 수단 부족, 사전적 강제 수단 미비, 억지스러운 수준의 법정 손해와 형사 처분의 미비 등은 모두 지식재산 침해 해결을 위한 중국 법원 시스템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1단계 미·중 경제무역협정에서 중국이 사전 설정 최소·최대 범위 확대, 징역형, 벌금형 등 지식재산 위반에 대한 민사소송과 형사 처분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범죄 위반의 합리적 의심이 있을 때 행정기관에서 형사 당국으로 사건을 이관하도록 하고, 신속한 판결을 보장하며, 저작권에 대한 법적 추정을 제공하고, 저작권 침해의 불필요한 특정 요건을 포기하도록 하고 있고, 외국의 소송 당사자가 중국 법정에서 사용할 증거 인증 절차를 없애거나 합리적으로 바꾸며, 민사소송에서 증인을 제시하고 상대방 증인을 교차 심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0]

(다) 온라인 불법복제

중국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시장이 되면서, 광범위한 온라인 불법 복제 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권리자들은 계속해서 비효율적인 삭제 절차, 반복적인 침해자를 막기 위한 불충분한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권리자들은 또한 허가 받지 않은 수천 개의 주문형 비디오(VOD) 형태 시청각 콘텐츠와 과학, 기술, 의학, 저널기사 및 학술서적의 사본을 무단 전송하는 온라인 플랫폼 형태의 불법복제 행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있다. 중국은 저작권 침해를 촉진하는 시스템의 선도적인 공급자이자 수출국으로서, 그러한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허가 받지 않은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장치(ISD), 불법복제 앱을 포함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웹사이트에 지속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러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DHgate.com, Alibaba Taobao와 Pinduoduo.com이 2019년 악명 높은 시장 목록에 재등장했다.[21]

20) USTR, *ibid*, p.41.

민법전(Civil Code) 제정안의 불법행위 책임 규정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이해관계자 간의 효과적인 협력을 촉진하는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22]

중국은 2019년에도 외국인 투자 목록 금지, 국영기업(SOE)이 영화와 TV 콘텐츠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요건 등 창작 콘텐츠의 온라인 출판, 방송, 유통 자격을 제한하는 개혁조치에도 실패하였다. 권리자들은 사전 승인 요건과 기타 장벽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 TV 콘텐츠의 가용성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중국 및 기타 시장에서 외국 콘텐츠의 동시 출시를 방해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공통으로, 이러한 조치들은 더 큰 불법복제를 초래하고 다른 것들보다 외국 콘텐츠와 외국 기업 참여에 덜 개방적인 시장을 야기하는 조건을 만들어낸다.[23]

(라) 저작권법 개정안

중국 저작권법 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저작권 체계에서 주요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민사상 손해배상액, 비효율적인 형사 집행, 스포츠 등 생방송의 무단송출에 대한 보호조치 결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24]

(마)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미국은 국영기업(SOE)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모든 계층에서 합법적이고 이용허락된 소프트웨어만 사용하도록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권리자들은 중국 정부 및 국영기업(SOE)의 소프트웨어 합법화 프로그램이 여전히 전체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감사 이용을 촉구하고 있으며, 1단계 미·중 경제무역협정에서 중국이 제3자 감사를 통해 정부 기관과 국영기업(SOE)이 이용허락된 소프트웨어 사용의 보장을 요구하고, 미국은 중국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지 감시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25]

---

21) USTR, *ibid*, p.43.

22) USTR, *ibid*, p.44.

23) USTR, *ibid*, p.44.

24) USTR, *ibid*, p.46.

(2) 2020 NTE 보고서

(가) 온라인 침해[26]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중국에서 대규모로 계속되며, 합법적인 음악, 영화, 책과 신문, 소프트웨어, 비디오 게임 유통에 관련된 사람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강화된 집행 활동은 일부 침해 상품들의 온라인 판매 흐름을 막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콘텐츠 제작자와 권리자,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훨씬 더 지속적인 조치와 관심이 필요하다.

미국은 중국이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콘텐츠를 다루는 건전한 시장의 성장 촉진에 도움이 되는 보다 광범위한 정책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또한 역효과로 입증된 기존의 규칙들을 개정할 것을 중국에 촉구해왔다.

중국은 2016년 11월 JCCT 회의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온라인 침해 및 위조 상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미국과 협력해 온라인 집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의 활용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2016년 12월과 2017년 11월에 공개 논평을 통해 새로운 전자상거래법 초안을 발표했다. 미국은 서면 논평에서 이 법안의 최종 개정안이 기존의 통지삭제(notice-and-takedown) 체제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온라인 침해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8월, 중국은 2019년 1월에 발효된 새로운 전자상거래법을 채택했다. 이 법은 중국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시장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에 관한 강력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서 온라인상에서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위조 상품 및 기타 침해 상품 판매에 대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조항을 도입했다. 2019년 1월 발표된 민법 불법행위 책임 초안에는 기존의 통지삭제 시스템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유사한 문제를 포함한 조항이 수록됐다.

25) USTR, *ibid*, p.47.

26) USTR, 2020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pp.111~112.

1단계 미·중 경제무역협정은 중국에 신속한 타결을 요구하고 통지와 역통지의 유효성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온라인 환경에서 침해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또 중국이 침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나) 시청각 및 관련 서비스[27)]

중국은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영화 제작 및 배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극장 서비스 분야 제한으로 인해 중국 내 영화관에 대한 외국 기업의 투자가 완전히 위축되었다.

중국은 TV와 라디오의 관련된 서비스에 외국 공급자들의 참여를 크게 제한한다. 예를 들어 외국 TV 채널의 재송신 금지, TV 제작 투자 금지, 중국 내 TV 방송국과 채널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금지는 물론 매일 중국 TV 채널에서 방영할 수 있는 외국 프로그램 양에 대해 쿼터를 부과한다. 2018년 9월 국가광파전시총국(NRTA)은 이미 규제가 심한 중국의 해외 창작 콘텐츠 시장에 새로운 제약을 가하는 문제적 조치 초안을 내놨다. 그것은 외국 영화, TV쇼, 만화, 다큐멘터리 및 기타 외국 TV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방송과 온라인 시청각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 방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여러 범주에서, 외국 콘텐츠에 대한 지출을 30퍼센트 이하로 하도록 요구됐다. 또한 황금시간대에 외국 TV쇼를 금지할 것이다.

(다) 온라인 비디오 및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서비스[28)]

중국은 콘텐츠와 유통 플랫폼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통해 해외 동영상 및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은 콘텐츠와 관련해 외국 기업이 중국 기업에 콘텐츠 라이선스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도 모호하고 투명하지 않은 기준에 근거한 철저한 콘텐츠 검토 요건을 통해 콘텐츠에 대해 부담스러운 제한을 가한다. 유통 플랫폼과 관련해 국가광파전시총국(NRTA)은 중국 온라인 플랫폼

27) USTR, *ibid*, p.121.

28) USTR, *ibid*, p.121.

공급업체가 외국 콘텐츠를 취득할 수 있는 예산을 30% 이하로 지출하도록 정했다. 국가광파전시총국(NRTA)은 또한 비디오 플랫폼이 모두 중국 소유여야 한다는 요구 조건과 같이 외국 공급업체가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수많은 조치를 시행했다. 국가광파전시총국(NRTA)과 다른 중국 규제 당국도 비디오 유통과 관련된 중국의 GATS 방침을 포함할 수 있는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의 국경을 넘나드는 공급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3) 2019 Notorious Market 보고서

악명 높은 시장(Notorious Market) 목록은 불법 복제 또는 위조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거나 촉진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장의 실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양한 기술, 난독화 방법, 수익 모델, 침해 활동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USTR은 특정 유형의 기술이 아니라 지명된 시장 또는 관련 시장의 소유주, 운영자 또는 사용자가 미국 창작자와 기업의 손해에 대해 실질적인 불법 복제 행위나 위조를 했거나 조장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29]

중국에서 서비스하고 있거나 중국을 상대로 서비스하는 온라인 시장을 소개하고, 오프라인 시장[30]은 주로 위조 상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어 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 소개는 생략하기로 한다.

(가) DHGATE(모바일 앱으로도 이용 가능, 중국 운영)[31]

DHGATE는 2,100만 명의 등록 구매자와 2,200만 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중국 최대 기업 간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중소기업이 많은 200만 명이 넘는 중국 상인들이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DHGATE는 자사

29) USTR, 2019 Review of Notorious Markets for Counterfeiting and Piracy, p.12.

30) 광둥성 광저우시 잔시로드 인근의 의료도매·소매상, 동성 광저우시 남부시계무역센터, uan Wang, Long Sheng 및 광동성 선전시의 Man Har 디지털 플라자몰을 포함한 Huaqiangbei 전자상가, 광동성 선전시 Luohu 상업도시, 베이징시 실크시장, 랴오닝성 선양시 Wu'ai 시장, 저장성 이우시 Yiwu 국제상품도시를 중국내의 악명 높은 오프라인 시장으로 선정했다.(USTR, *ibid*, pp.35~38. 참조)

31) USTR, *ibid*, p.19.

플랫폼의 위조 상품 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다. 예를 들어 위조품 판매자에 대한 벌칙을 높이고, 글로벌 브랜드 정보 수집 과정을 자동화했으며, 위조품의 사진을 식별하기 위한 이미지 인식 시스템을 가동했으며, 위조필터 시스템에 브랜드 관련 키워드를 많이 추가했다. DHGATE는 2018년 악명 높은 시장 목록(Notorious Market List)에서 USTR의 "권리자나 사법 당국이 위조품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에 따라 행동하기도 했다. 그 결과 올해에는 DHGATE는 악명 높은 시장으로 지명하는 댓글이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HGATE는 자사 플랫폼에 위조품이 널리 보급되고 위조품이 쉽게 위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악명 높은 시장으로 남아 있다. USTR은 DHGATE가 판매자 조사, 정책 나열, 보고 절차, 사전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위조품의 가용성을 크게 낮출 것을 촉구하고 있다.

(나) DYTT8(관련 사이트로 dy2018.com이 있음, 대만 운영)[32)]

DYTT8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비영어 토렌트 사이트 중 하나로 허가받지 않은 영화, TV쇼, 음악, 소프트웨어 등의 링크를 제공한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진 DYTT8은 중국 내외부의 합법적인 콘텐츠 제공자들에게 까다로운 위협으로 남아 있다.

(다) PINDUODUO(모바일 앱으로도 이용 가능, 중국 운영)[33)]

소셜커머스 앱 PINDUODUO는 현재 이용자 수로 측정한 중국 2위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2018년 악명 높은 시장 목록(Notorious Market List)에 추가된 이후, PINDUODUO는 위조품의 가용성을 줄이기 위해 취한 몇 가지 조치를 보고했으며, 직원들 중 상당수를 이러한 위조 방지 노력에 헌신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PINDUODUO는 2019년 2월 브랜드케어 프로그램을 출시해 가장 위조 노출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브랜드에 대한 맞춤형 위조방지 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인 목록 검색 및 차단 활동을 펼쳤다. PINDUODUO는 2019년 9월 지식재산 보호 포털의 영문 버전을 공개했는데, 이 포털은 권리자가 PINDUODUO가 자신의 상표를 인식하게 하고 즉시삭제 요청을 할

32) USTR, *ibid* p.19.

33) USTR, *ibid*, p.23.

수 있는 시스템이다. PINDUODUO는 이러한 조치들이 일부 권리자들에게 만족스러운 위조 방지율을 가져왔다고 보고하지만, 또 다른 권리자들은 일부 브랜드에 대한 위조품의 존재는 여전히 높다고 지적한다.

PINDUODUO는 또한 그들의 다른 위조 방지 프로그램의 성공을 설명했다. PINDUODUO에 따르면, 모든 상인들은 팔 물건을 내놓기 전에 개인 신분증과 실시간 3D 안면 스캔을 제공해야 한다. PINDUODUO는 이 정보를 이용해 위조품 판매에 대해 상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책임을 묻게 하고, 위조 조사 및 집행 활동과 관련해 권리자와 법집행기관에 검증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조품 판매업자가 또 다른 상인으로 재등록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입장이다. PINDUODUO는 또 모든 상인들이 위조품 구매자에게 배상하기 위한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보고했다. PINDUODUO가 '비밀매수'를 통해 위조품 판매를 확인하면 전체 물품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이 몰수된다. 그러나 PINDUODUO는 위조품 판매자가 언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언제 플랫폼에서 상인을 차단할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권리자 또는 법집행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권리자들은 PINDUODUO의 명확하고 투명한 지식재산 집행 정책이 부족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현재 플랫폼에서의 위조품 이용 가능성을 다루기에는 부족한 시스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PINDUODUO는 1대 10 보상정책 등 일부 위조 방지 전술을 개척해 왔으며, 플랫폼 위조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유망하다. 그러나 현재 PINDUODUO 플랫폼에 위조품이 널리 퍼진 것으로 보고된 것을 볼 때, 이러한 노력의 완전한 영향을 측정하기는 이르다. USTR은 PINDUODUO가 지식재산 집행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엄격하고 투명한 집행 정책을 개발하며, 권리자와의 협력을 증진하고, 오프라인 시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을 집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그리고 추천 피드를 벗어난 검색 결과가 여전히 많은 수의 위조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

(라) SHOPEE(관련 사이트로 shopee.com.my, shopee.ph, shopee.co.th, shopee.vn, shopee.co.id, shopee.co.id 등이 있음, 모바일 앱으로도

이용 가능, 중국 운영)[34]

SHOPEE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동남아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및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이다. 권리자들은 가짜 약을 포함한 SHOPEE의 모든 플랫폼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위조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보고한다. SHOPEE는 즉시삭제 조치 과정에서 플랫폼에 기재된 내용보다 권리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구하며 권리자가 추가 정보를 제공한 뒤에도 긴급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리자에 따르면 침해 제품을 제거하려면 2주 이상 걸릴 수 있으며, 위조품을 판매한 판매자를 차단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절차가 없다.

(마) TAOBAO(모바일 앱으로도 이용 가능, 중국 운영)[35]

알리바바 그룹이 소유한 TAOBAO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 하나이다. TAOBAO는 2016년 상당한 권리자들의 관심과 지명에 악명 높은 시장 목록(Notorious Market List)에 처음 등재되었고, 이후 보고서에서는 TAOBAO 침해 상품들의 제공과 판매를 억제하기 위한 많은 권고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알리바바는 TAOBAO가 이러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다른 권리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권리자들에 따르면, TAOBAO는 중국에서 가장 큰 위조품 판매처 중 하나로 남아 있다. 일부 권리자들은 TAOBAO의 대응 시간과 정책이 개선된 것에 대해 칭찬했지만, 위조품의 수 및 필터와 기타 적극적인 위조 방지 조치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불평했다. USTR은 TAOBAO의 행동이 위조 및 위조품 확산에 대한 현재 진행 중인 불만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해당 조치가 명백하게 효과적인지의 여부를 계속 감시할 것이다.

(4) 2019 유럽집행위원회 IP 집행 및 보호 보고서

EU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의 지식재산권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나누는 3가지 등급 중 중국을 우선순위 1(Priority 1)로 지정했다. 중국은 지식재산권을 담

34) USTR, *ibid*, p.28.

35) USTR, *ibid*, p.28.

당하는 행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개혁을 단행한 점, 3개의 지식재산 전문법원을 설립한 점, 지식재산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법률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집행에 있어서 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외국 기업의 특허에 대한 빈번한 무효화, 부정한 상표 등록, EU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표준 필수 특허의 무단 사용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36] 특히 저작권 분야의 경우에는 중국 저작권법 개정안이 오랫동안 논의 중에 있으며,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의 공연이나 방송에 따른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의 보상 청구권 도입 문제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밝히고 있다.[37]

36) European Commission, Report on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ird countries[SWD(2019) 452 final/2], pp.16~17.

37) European Commission, *ibid*, p.18.

나. 베트남을 바라본 외국 통상 보고서

(1) 2020 스페셜 301조 보고서

베트남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감시대상국 목록에 포함되었다. 지난 1년간 국가지식재산전략의 공표와 지속적인 국민 인식 캠페인 및 훈련 활동 등으로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지만, 온라인상의 불법 복제 및 위조 상품 판매 문제와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자원과 전문성 부족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베트남은 널리 퍼진 위조 상품의 제조와 불법복제 행위를 차단하는 데 실패한 행정집행조치에 여전히 크게 의존하고 있다. 베트남의 지식재산 위반에 대한 형사 집행과 관련하여 2015년 형법 개정안이 현재 진행 중인 것에 대해, 미국은 면밀하게 감시하고 관여하고 있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영상 콘텐츠에 접근하기 위한 불법 장치 및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포함한 도서 불법 복제, 케이블과 위성 신호 무단 절취, 민간 및 공공 분야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등 여전히 우려 사항이 남아 있다. 베트남은 지식재산 체제 강화를 위한 국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WCT(WIPO Copyright Treaty), WPPT(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에 가입을 준비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지식재산 관련 분야에서 이행 입법 및 기타 조치를 하는 과정에 있다.[38]

(2) 2020 NTE 보고서

베트남의 공공 인식 캠페인 참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인터넷과 시장에서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와 위조 상품 판매는 계속해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보호 집행을 위해 행정적인 조치와 처벌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위조 상품 생산과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저지하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39]

38) USTR, supra note at 19, p.66.

39) USTR, *supra note at 26*, p. 515

(3) 2019 Notorious Market 보고서

악명 높은 시장 목록(Notorious Market List) 중 베트남에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시장은 PHIMMOI 하나만 보고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시장으로는 호치민시 Ben Thanh 시장과 하노이시 Dong Xuan 시장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주로 위조 상품 관련 내용들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영화계에 따르면, PHIMMOI는 1,100만 명의 방문객에서 매달 약 7,500만 명의 방문으로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불법사이트 중 하나가 되었다. 베트남 공안부에 접수된 사이트에 대한 불만과 비난 공문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아직 현장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40]

(4) 2019 유럽집행위원회 IP 집행 및 보호 보고서

베트남의 경우 중국이나 태국과 같이 EU 회원국의 지식재산권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3가지 등급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FTA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41] EU 이해관계자들은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 광범위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침해자에 대한 제재는 억제 효과가 미흡하고 관세 당국을 비롯한 지식재산 관리 담당자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되어왔다. 베트남의 집행 체계는 매우 복잡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권리자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WCT(WIPO Copyright Treaty), WPPT(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를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42]

40) USTR, *supra note at 29*, p.22

41) FTA 이행 모니터링은 EU와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캐나다, 멕시코 및 베트남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42) European Commission, supra note at 36, pp.52~53.

다. 태국을 바라본 외국 통상 보고서

(1) 2020 스페셜 301조 보고서

태국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감시대상국 목록에 포함되었다. 부총리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위조와 불법 복제제품을 계속 압수하고 있으며, 단속 통계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저작권 법령과 관련하여 WIPO 인터넷 조약 가입을 대비하여 저작권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위조와 불법 복제품은 실제 시장과 온라인 모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미국은 태국이 효과적이고 억제적인 집행 수단을 지속해서 제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저작권 관련 문제들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태국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기술 보호조치 예외를 두고 있고, 무단촬영에 대한 집행 절차상 장애, 허가받지 않은 집중관리단체 등 미국 및 외국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표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태국이 사용자들이 허락을 받지 않은 콘텐츠를 스트리밍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장치와 응용프로그램에 의한 온라인 불법 복제를 해결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공공 및 민간 부분에서의 불법 소프트웨어의 광범위한 사용, 오래 걸리는 집행 절차와 낮은 민사상 손해배상액, 광범위한 케이블 및 위성 신호 무단 절취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43]

(2) 2020 NTE 보고서

태국은 불법 복제 및 위조 상품을 차단하기 위한 집행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오프라인 시장에서 불법 복제 및 위조 상품이 계속해서 유통되는데 있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의 광범위한 사용, 광범위한 케이블과 위성 신호의 무단 절취,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의 불법적 비디오 녹화, 기술적 보호 조치의 우회에 대한 광범위한 예외,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43) USTR, *supra note at 19*, p.66.

대한 효과적인 집행의 결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44]

(3) 2019 Notorious Market 보고서

태국에서의 온라인 사장에 대하여는 보고가 되어 있지 않으며, 오프라인 시장은 방콕시 Patpong 시장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불법복제된 DVD를 포함한 다양한 불법복제 및 위조 상품이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45]

(4) 2019 유럽집행위원회 IP 집행 및 보호 보고서

EU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의 지식재산권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나누는 3가지 등급 중 태국을 우선순위 3(Priority 3)로 지정했다. 태국은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by Visually Impaired Persons and 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 가입이나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의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가입 등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에 여전히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46]

EU 이해관계자들은 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에 여전히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한다. 특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과 관련하여 EU 이해관계자들은 신탁관리시스템이 최소한의 투명성, 책임성, 좋은 관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고한다. 이러한 입법 체계는 권리자가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다수의 신탁관리단체(CMO)가 운영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여전히 주된 문제로 남아 있다. 사용자들은 태국의 신탁관리단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또한 EU 이해관계자들은 기술적 보호 조치(TPM)의 우회 및 권리 관리 정보(RMI)의 무단 변경 및 제거에 대한 적절한 법적 보호가 부족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보고한다. 저작권법은 기술 보호 조치의 우회 행위에 대한 법

44) USTR, *supra note at 26,* p. 474.

45) USTR, *supra note at 29*, p.43.

46) European Commission, *supra note at 36*, pp.43~44.

적 보호를 제공하지만 사전에 보호를 차단하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예외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47] 온라인 불법 복제 행위와 관련해, 온라인 불법 복제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컴퓨터범죄법의 개정안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U 이해관계자들은 몇몇의 사례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이 법에 따라 제정된 절차는 지나치게 길고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보인다. 몇 가지 상황의 경우, 이 절차에 따른 지시가 보장되지 않았다.[48] 민사 및 행정 집행과 관련해 EU 이해관계자들은 사법적, 행정적 절차가 더디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권리를 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 집행 기관이 관여하고 위조 및 불법 복제 네트워크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사법 절차는 특히 복잡하다. 특히 재침해자에 대한 벌금을 포함한 벌칙은 효과가 낮아 아무런 억제 효력이 없다. 그리고 WCT(WIPO Copyright Treaty), WPPT(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를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49]

47) European Commission, *ibid*, p.44.

48) European Commission, *ibid*, pp.44~45.

49) European Commission, *ibid*, p.45.

3. 각 국과의 저작권 통상 관련 쟁점

가. 중국

(1) 한중 FTA

우리나라와 중국은 2012년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3년의 논의 끝에 2015년 12월에 FTA가 발효되었다. 한중 FTA는 TRIPS보다 높은 수준의 규정을 마련하여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국제조약 준수를 의무화하였다. 실연자·음반제작자의 보상청구권, 방송사업자에 대한 배타적 권리, 권리자 추정, 영화도촬에 대한 형사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50]

우리나라와 중국의 저작권 관련 국제 조약 가입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베른협약	로마협약	WCT	WPPT	TRIPS	베이징조약	마라케시조약
우리나라	○	○	○	○	○	○	○
중 국	○	-	○	○	○	○	-

50) 우리나라와 체결한 FTA에 대한 저작권 내용에 대해서는 「FTA 저작권 내용 해설서」(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2019) 참고.

(가) 실연자·음반제작자의 보상청구권[51]

국문	영문
제15.7조 방송 및 공중전달 1.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이 방송이나 공중전달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보상에 대한 권리를 향유한다. ---------- 5. 이 항은 국제협정에 따라 그러한 권리를 제공하여야 하는 각 당사국의 의무에 따르는 것으로 양해된다.	**Article 15.7: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o the Public** 1.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shall enjoy the right to remuneration for the direct or indirect use of phonograms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for broadcasting or for any communication to the public. ---------- 5. It is understood that this paragraph is subject to the obligation of each Party to give such right under international agreements.

한중 FTA 제15.7조제1항에서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이 방송이나 공중전달[52]에 직·간접적으로 이용[53][54]되는 경우에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제협정에 따라 그러한 권리를 제공하여야 하는 각 당사국의 의무를 따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하여, 로마협약이나 WPPT 등 다자조약에서 보상청구권을 유보한 경우 그 유보한대로 동 규정을 이행할

51) FTA 협상은 영어로 진행된 후에 국문으로 번역되기 때문에 내용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동 보고서에서는 국문과 함께 영문도 함께 병기하고, 국문은 관보에 게재된 그대로 반영하였다.

52) 한중 FTA에서 방송은 유·무선 및 위성까지 포함하고 있으며(제15.6조제3항), 공중전달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공연으로 이해된다.

53) 방송에서 음반의 직접적 이용은 음반을 이용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요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재방송(rebroadcasting;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동시중계 행위를 의미)은 직접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WIPO, Guide to the Rome Convention and to the Phonograms Convention(1981), 12.7) 따라서 원방송사업자가 방송물에 음반을 이용하는 것은 직접적 이용에 해당하고, 원방송사업자 이외의 자가 동시에 중계할 경우에는 간접적인 이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54) 공중전달을 위한 직접적인 이용이란 디스코텍, 바(bar), 레스토랑, 지하철, 수퍼마켓이나 기타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서 녹음물의 재생(playing)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중전달을 위한 간접적 이용이란 상업적인 음반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을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중에게 재생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찬동, 저작권법상 '음반', '판매용 음반'의 의미와 해석, 그 적용, 『계간 저작권』, 제102호(2013), 210~211쪽.)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의 방송 및 공중전달에 따른 보상은 로마협약 제12조와 WPPT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55]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실연자의 보상청구권은 제75조 및 제76조의2를 통하여, 음반제작자의 보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제82조 및 제83조의2를 통해서 이행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WPPT를 가입하면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의 방송 및 공중전달에 따른 보상 규정인 제15조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유보 선언을 하고 있어, 한중 FTA 제15.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중국 저작권법[56]에서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에 대한 방송이나 공중전달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방송사업자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

국문	영문
제15.7조 방송 및 공중전달	**Article 15.7: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o the Public**
2. 각 당사국은 방송사업자에게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제공한다. 가. 자신의 방송의 재방송 나. 자신의 방송의 고정, 그리고 다.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자신의 방송의 고정물의 복제 ---------- 6 상기 언급된 권리의 행사는 방송에 체화된 저작물, 실연 및 음반의 보호되는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2. Each Party shall provide broadcasting organizations with the exclusive right to authorize or prohibit: (a) the re-broadcasting of their broadcasts; (b) the fixation of their broadcasts; and (c) the reproduction of fixations, made without their consent, of their broadcasts. ---------- 6 The exercise of the above-mentioned right shall not prejudice the protected rights in works, performances, and phonograms embodied in the broadcast.

한중 FTA 제15.7조제2항에서는 방송사업자는 재방송(re-broadcasting), 방송의 고정,

55) 방송과 공중전달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로마협약에서는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의 '직접적' 이용에 한정된 반면, WPPT에서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이용으로 확대되어 있으며, WPPT에서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선이나 무선 수단에 의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음반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음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56) 동 보고서에서 '현행 중국 저작권법'은 2020년 11월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하여 2021년 6월 1일 시행 예정인 제3차 개정 저작권법이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고정물의 복제에 대하여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exclusive right to authorize or prohibit)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중 FTA 제15.7조제2항은 로마협약 제13조의 재방송, 고정, 고정물의 복제에 대하여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authorize or prohibit)를 반영한 것이다. 한중 FTA나 로마협약 모두 '허락하거나 금지'(authorize or prohibit)[57]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허락하거나 금지'한다는 용어의 표현은 로마협약 뿐만 아니라 TRIPS 제14조제2항[58]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다. 반면, WPPT 제7조에서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의 복제에 대하여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exclusive right to authorizing)를, 베른협약 제9조에서는 저작물의 복제에 대하여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exclusive right of authorizing)로 규정하고 있어 로마협약과 TRIPS와 달리 표현하고 있다.

WPPT상의 용어 표현이 베른협약과 같고, 로마협약과 TRIPS와 다른 이유에 대해서 Jörg Reinbothe는 WPPT는 WIPO가 관장하고 있는 조약이며, 베른협약과 더 밀접하게 관련 된다는 관점에서 WIPO의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배타적인 권리를 표현하는 두 형식의 실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59]

방송사업자의 배타적인 권리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저작권법 제84조(복제권)와 제85조(동시중계방송권)로 이행하고 있다. 현행 중국 저작권법 제45조에서는 방송사업자에게 재방송[60]하거나 방송물을 녹음·녹화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것에 대하여 금지권(right to prohibit)을 부여하고 있다.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authorize or prohibit)가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exclusive right of authorizing)와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이므로 중국은 한중 FTA 제15.7조제2항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57)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규정하고 있는 로마협약 제10조에서도 'right to authorize or prohibit'로 표현하고 있다.

58) Producers of phonograms shall enjoy the right to authorize or prohibit the direct or indirect reproduction of their phonograms.

59) Jörg Reinbothe, Silke von Lewinski, The WIPO treaties on copyright:a commentary on the WCT, the WPPT, and the BTAP(SECOND EDITION), OXFORD, 8.7.25

60) 현행 중국 저작권법 제10조제11호에서 방송권(the right of broadcasting)에는 무선에 의하여 저작물을 방송 또는 공중에게 전파하는 권리, 유선 또는 재방송(rebroadcasting)으로 공중에게 저작물의 방송을 전달하는 권리, 기호·소리·이미지를 송신하는 확성기나 기타 유사한 장치를 통하여 저작물의 방송을 공중 전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고 있다.

한중 FTA 제15.7조제2항에서 부여된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가 재방송이나 복제 행위를 하기 전에 허락할 수 있는 사전(事前) 통제권과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허락 없이 한 행위에 대하여 금지할 수 있는 사후(事後) 통제권이지만, 현행 중국 저작권법은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행한 재방송이나 복제에 대한 사후(事後) 통제권만을 주고 있어 한중 FTA을 이행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다) 권리 추정

국문	영문
제15.23조 저작자 또는 권리자의 추정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관련되는 민사, 행정 및 형사 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통상적인 방식으로 그 성명이 표시되는 인을 그러한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지정된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Article 15.23: Presumption of Authorship or Ownership** In civil, administrative, and criminal proceedings involving copyright or related rights,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a presumption that, in the absence of proof to the contrary, the person whose name is indicated in the usual manner is the right holder in such work, performance, phonogram, or broadcast as designated.

한중 FTA 제15.23조에서는 저작물·실연·음반·방송에 통상적인 방식으로 해당 성명이 표시된 경우 민사·행정·형사 절차에서 성명이 표시된 자를 권리자(right holder)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권리자 추정 규정은 베른협약 제15조의 저작자(author) 추정 규정을 확대한 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제8조 및 제64조의2 규정을 통하여 한중 FTA 제15.23조를 이행하고 있다.[61] 반면 현행 중국 저작권법 제11조제4문에서는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저작물에 서명한 공민이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저작자가 된다.'로 규정하고 있어 한중 FTA상의 권리자 추정 보다는 약한 저작자 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62]

61) 2011년 저작권법 개정(법률 제10807호, 2011.6.30, 일부개정)을 통하여 저작자 추정에서 권리자 추정으로 확대하였다.

(라) 영화 도촬

국문	영문
제15.27조 형사절차와 구제 2. 각 당사국은 영상저작물 또는 그 일부를, 고의로 허락 받지 아니하고 상업적인 규모로, 영화관의 상영으로부터 복제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Article 15.27: Criminal Procedures and Remedies** 2.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criminal procedures and penalties to be applied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willful unauthorized copy of a cinematographic work, or any part thereof, from a performance in a movie theater on a commercial scale.

한중 FTA 제15.27조제2항에서는 상업적 규모의 영화관 공연에서 영화 저작물 또는 그 일부를 고의적으로 허락을 받지 않은 복제 행위에 대하여 형사 절차 및 처벌을 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위 영화 도촬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04조의6에서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137조제1항제4호)하고 있으며,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규정(제137조제2항)하고 있다. 중국 영화산업촉진법 제31조에서는 “권리자의 허락없이는 누구든지 현재 상영 중인 영화를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없다. 녹음물이나 녹화물이 발견되면 영화관 직원은 이를 제지하고, 이를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를 따르는 것을 거부할 경우 장소를 떠날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63]하고 있다.

62) 중국 국가판권국 홈페이지(http://en.ncac.gov.cn/copyright/contents/10365/329083.shtml)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영문 중국 저작권법 제11조제4문은 다음과 같다.
The citizen, legal entity or other organization whose name is mentioned in connection with a work shall, in the absence of proof to the contrary, be deemed to be the author of the work .

63) 원문은 다음과 같다. 《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 第31条 未经权利人许可，任何人不得对正在放映的电影进行录音录像。发现进行录音录像的，电影院工作人员有权予以制止，并要求其删除；对拒不听从的，有权要求其离场。

(2) 중국 개정 저작권법

중국 저작권법은 1990년 제정된 이후 2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중국은 1992년 베른협약과 세계저작권협약, 1993년 제네바 협약에 차례로 가입하였으며, 이후 2000년부터 중국의 WTO 가입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되었다. 2001년에는 TRIPS의 이행사항을 다수 반영하여 제1차 개정 저작권법이 공포되었다. 2007년 '법에 의해 출판, 배포가 금지된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중국 저작권법 제4조의 내용이 베른협약과 TRIPS에 위반된다고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하였다. 이 사건에서 WTO 중재위원회는 '중국 저작권법이 베른협약과 TRIPS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중국이 수용함에 따라 2010년에 이를 반영한 제2차 개정 저작권법이 공포되었다.

2011년 이후 중국은 저작권법 전면 개정을 목표로 저작권법 제3차 개정을 진행했으며, 2014년 전부 개정 수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수준의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며 논의가 특별한 진척 없이 진행되다가, 2020년 새로운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2020년에 새롭게 발표된 제3차 저작권법 개정안은 2020년 4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초안 제1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초안 제2안에 대해서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되었다.[64] 개정안은 2020년 11월 1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021년 6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3차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65]

1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법정배상의 상한을 기존 50만 위안(한화 약 8,428만 원)에서 500만 위안(한화 약 8억 4,275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하한을 500위안으로 정하였다(개정 저작권법 제54조). 저작물의 예시 규정을 보완(개정 저작권법 제3조)하였으며, 방송의 개념을 유선으로 확대하였고, 방송권과 정

64) 〈http://pkulaw.cn/fulltext_form.aspx?Gid=1090533722&Db=protocol〉 (2020.10.12. 최종 방문)

65) 상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 사무소 뉴스(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 확정, 내년 6월부터 시행) 참조
〈https://www.copyright.or.kr/kcc/koreacopyright/info/list.do〉 (2020. 11. 19. 최종 방문)

보네트워크전파권(信息网络传播权 우리나라 저작권법상의 '전송권')을 명확히 구분(개정 저작권법 제10조 10호)하였다. 합작저작물[66]의 권리 행사는 합작저작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도록 신설(개정 저작권법 제14조제2항)하였으며, 업무상 실연의 경우 인격권은 실연자가 가지고, 재산권의 경우 약정을 통해서 권리 귀속을 정하고 약정이 없거나 또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실연과 관련된 재산권은 연출 기관이 가지는 것으로 규정(개정 저작권법 제40조)하고 있다. 개정전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위탁관리와 관련된 규정의 대부분을 하위법령인 「저작권집중관리조례(著作权集体管理条例)」에 위임하고 있었으나,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법률에 반영하였다(개정 저작권법 제8조).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에 대하여 명확히 하는(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등의 변화가 있었다.

동 연구에서는 중국 제3차 개정 저작권법은 한중 FTA 이행을 점검한다는 관점에서 중국 저작권법이 한중 FTA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67]으로 판단되는 내용으로 한정해서 분석하는 것으로 한다.

(가) 음반제작자 보상청구권

2010 저작권법	초안 1안	초안 2안	2020 개정 저작권법
〈신설〉	제43조 음반을 **무선이나 유선**으로 방송하거나, 음을 송신하는 기술 장비를 통해 공중 전달하는 경우 음반 제작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45조 음반을 유**선이나 무선**으로 방송하거나, 음을 송신하는 기술 장비를 통해 공중 전달하는 경우 음반 제작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45조 음반을 유선이나 무선으로 **공개전달하거나**, 음을 송신하는 기술 장비를 통해 **공중에게 공개 방송**하는 경우 음반 제작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66) 합작저작물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67) 음반제작자의 보상청구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중 FTA 이행 문제와는 관련성이 없으나, 음반제작자의 권리 확대를 통하여 우리나라 음반제작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분석 내용에 포함하기로 한다.

	第四十三條　將录音制品用于无線或者有線播放,或者通過傳送聲音的技術設備向公衆傳播的,應当向录音制作者支付報酬。	第四十五條　將录音制品用于有線或者无線**播放**,或者通過傳送聲音的技術設備向**公衆傳播**的,應当向录音制作者支付報酬。	第四十五條　將录音制品用于有線或者无線**公開傳播**，或者通過傳送聲音的技術設備向公衆**公開播送**的，應当向录音制作者支付報酬。
제44조　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가 이미 출판된 음반제품을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보수는 지급하여야 한다. 당사자간에 별도로 약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삭제>**
第四十四條　　广播電台、電視台播放已經出版的录音制品，可以不經著作權人許可，但應当支付報酬。当事人另有約定的除外。具体辦法由國務院規定。			

초안 2안에서는 초안 1안에서의 ‘무선이나 유선’을 ‘유선이나 무선’으로 단어의 순서가 바뀌었고, 조문 번호가 변경된 것 이외의 내용상 변화는 없다. 초안의 내용은 WPPT 제15조에 따른 상업용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의 방송이나 공중전달에 따른 보상청구권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WPPT에서는 보상청구의 대상으로 ‘상업용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이지만, 초안에서는 상업용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음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초안의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또한 WPPT에서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초안에서는 방송의 경우에는 직접 이용인지 간접이용인지 구분을 하고 있지 않아 WPPT와 일치하나, 공중

전달[68]의 경우에는 '음을 송신하는 기술 장비를 통한 공중전달'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간접적인 이용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직접적인 공중전달, 음반의 직접적인 재생(playing)을 통하여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라이브 공연에서는 보상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음반을 유선이나 무선으로 공개 전달하거나, 음을 송신하는 기술 장비를 통해 공중에게 공개 방송하는 경우' 음반제작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자구를 수정한 것으로 초안1과 초안2와의 내용상 차이는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중국 저작권법 제44조는 음반의 경우 당사자간 체결한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가 이미 발행된 음반을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국무원이 정한 보수는 지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 개정 저작권법 제45조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음반제작자의 보상청구권은 중국은 WPPT에 가입하면서 유보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중국 음반 산업계에서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통적인 유형의 음반 발매를 통한 상업적 이익 패러다임이 소멸함에 따라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부여가 음악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학계와 음반 업계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음반제작자의 방송보상청구권 관련 규정을 추가하여 국제조약과의 일치를 강력히 촉구함에 따라 반영되었다고 한다. "저작권법 수정안(심사고) 제43조에 관한 문제의 연구회"에서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리순더(李顺德) 교수는 개정안은 음반제작자의 방송권과 공중전달권의 보상청구권을 입법한 것은 시대적 조류에 따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조약의 보호 추세와도 일치하며, 특히 베이징조약 가입국인 중국은 방송권과 공중전달에 대한 보상청구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연구센터 린즈잉(林子英) 연구원은 개정안은 음반제작자의 지적 노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규정이며, 음반제작자는 음악 저작물을 재가공하는 행위를 통해 저작자와 실연자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시야에서 상당한 지적 창작의 노동행위를 하는 주체이며, 국제조약과의 일치와 시장경제에서의 관련 권리자의 이익 균형을 위해 해당 조문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69]

68)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공연'으로 이해된다.

(나) 방송사업자의 허락권/금지권

2010 저작권법	초안 1안	초안 2안	2020 개정 저작권법
제45조 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다음의 행위를 금지할 권리가 있다. (1) 방송된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행위 (2) 방송된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음반영상 매개체에 녹음·녹화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행위	제45조 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 방송사는 프로그램 전달신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타인에게 재방송을 허락하는 권리 (2) 타인에게 고정하거나 복제를 허락하는 권리 (3) 타인에게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중전달을 허락하는 권리	제47조 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다음의 행위를 금지할 권리가 있다. (1) 방송된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유선 또는 무선으로 재방송하는 행위 (2) 방송된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녹음·녹화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행위 (3) 방송된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중전달하는 행위	초안 2안와 같음
第四十五條 廣播電台、電視台有權禁止未經其許可的下列行爲： （一）將其播放的广播、電視轉播； （二）將其播放的广播、電視录制在音像載体上以及复制音像載体。	第四十五條 廣播電台、電視台對其播放的載有節目的信号享有下列權利: (一)許可他人轉播 (二)許可他人录制以及复制 (三)許可他人通過信息网絡向公衆傳播。	第四十七條 廣播電台、電視台有權禁止未經其許可的下列行爲: (一)將其播放的广播、電視以有線或者无線方式轉播 (二)將其播放的广播、電視录制以及复制 (三)將其播放的广播、電視通過信息网絡向公衆傳播。	

현행 중국 저작권법은 방송사업자에게 재방송 및 복제 행위에 대하여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초안 1안에서는 허락할 수 있는 권리로 수정하면서 인

69) 陈翠萍·翁才林, 浅议《著作权法》第三次修正案草案中广电行业相关条款 〈https://www.chinaxwcb.com/info/563874〉 (2020.10.13. 최종 방문)

터넷을 통한 공중전달권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초안 2안에서는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다시 금지할 수 있는 권리로 수정하면서 현행 중국 저작권법과 동일하게 변경되었다. 최종적으로 개정된 저작권법은 초안 2안와 내용이 동일하다.

(다) 권리 추정

2010 저작권법	초안 1안	초안 2안	2020 개정 저작권법
제11조 만약 상반되는 증명이 없는 경우 저작물에 서명한 공민이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저작자가 된다.	제11조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저작물에 서명된 자연인,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이 저작자가 된다.	제12조 저작물에 서명된 자연인,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이 저작자가 된다. 다만, 반대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저작자는 국가 저작권 주무부처가 인정하는 등록 기관에 자신의 저작물을 등록할 수 있다. 저작인접권은 위 두 항에도 적용된다.	제12조 저작물에 서명된 자연인,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이 저작자가 되며, **해당 저작물에 상응하는 권리가 존재한다. 다만,** 반대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저작자 등 **저작권자**는 국가 저작권 주무부처가 인정하는 등록 기관에 자신의 저작물을 등록할 수 있다. 저작인접권은 위 두 항에도 적용된다.
第十一條　如无相反证明，在作品上署名的公民、法人或者其他組織爲作者。	第十一條　如无相反证明,在作品上署名的自然人、法人或者非法人組織爲作者。	第十二條　在作品上署名的自然人、法人或者非法人組織爲作者,但有相反证明的除外。 作者可以將作品向國家著作權主管部門認定的登記机构辦理登記。 与著作權有關的權利參照适用前兩款規定。	第十二條　在作品上署名的自然人、法人或者非法人組織爲作者，**且該作品上存在相應權利**，但有相反证明的除外。 作者**等著作權人可以**向國家著作權主管部門認定的登記机构辦理**作品**登記。 与著作權有關的權利參照适用前兩款規定。

권리 추정과 관련된 중국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 추정에 더하여 권리자 추정까지 확대되었다. 기존 저작권법 개정안 초안에서는 저작물에 성명이 표시된 자를 저작자로 추정하고 저작인접권의 경우에도 저작자 추정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고 하여 저작자 추정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에 성명이 표시된 자를 저작자로 추정하고,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해당 저작물 상응하는 권리자 존재하고, 이 규정은 저작인접권에도 유추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저작자 추정에 더하여 저작(인접)권 추정을 명확히 한 것이다.

(라) 방송사업자의 저작물 방송시 보수 지급

2010 저작권법	2020 개정 저작권법
제43조 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가 타인의 미발표 저작물을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가 이미 발표된 타인의 저작물을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보수는 지급하여야 한다.	**제46조** 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가 타인의 미발표 저작물을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가 이미 발표된 타인의 저작물을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는 지급하여야 한다.
第四十三條广播電台、電視台播放他人未發表的作品，應当取得著作權人許可，并支付報酬。 广播電台、電視台播放他人已發表的作品，可以不經著作權人許可，但應当支付報酬。	第四十六條广播電台、電視台播放他人未發表的作品，應当取得著作權人許可，并支付報酬。 广播電台、電視台播放他人已發表的作品，可以不經著作權人許可，但應当**按照規定**支付報酬。
제44조 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가 이미 출판된 음반제품을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보수는 지급하여야 한다. 당사자간에 별도로 약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삭제>**
第四十四條 广播電台、電視台播放已經出版的录音制品，可以不經著作權人許可，但應当支付報酬。当事人另有約定的除外。具体辦法由國務院規定。	

중국 저작권법에서는 방송사업자가 저작물을 방송할 경우 저작물의 공표 여부와 음

반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다. 미공표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저작권료를 지급하여야 한다.(중국 저작권법 제43조 전문)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이용허락은 필요없으나, 저작권료를 지급하도록 규정(중국 저작권법 제43조 후문)하고 있다. 음반의 경우 당사자간 체결한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가 이미 발행된 음반을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국무원이 정한[70] 보수는 지급하여야 하도록 규정(중국 저작권법 제44조)하고 있다.

중국 개정 저작권법 45조에서는 음반의 방송 이용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제44조는 삭제되었다.

(마) 영화 도촬

이번 중국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는 영화 도촬 관련 규정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3) OSP 관련 개정 법률

(가) 전자상거래법 개정

2019년 1월 1일 시행된 중국 전자상거래법에서 인터넷에서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법 제42조에서는 지식재산권 권리인은 지식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면,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삭제·차폐·접속차단·거래 및 서비스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지할 권리가 있다. 통지에는 권리 침해를 구성하는 초보적인 증거를 포함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통지를 받은 후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통지를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의 확대 부분에 대해 플랫폼 내 경영자와 연대책임을 진다. 잘못된 통지로 인하여 플랫폼 내 경영자가 손해를 본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진다. 악의적으로 잘못된 통지를 하여,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손실이 발생된 경우 배로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70) 국무원이 정한 규칙은 “라디오 및 TV 방송국에서 방송한 음반의 보수에 대한 임시조치”(广播电台电视台播放录音制品支付报酬暂行办法; Interim Measures for the Payment of Remuneration for Phonograms Broadcast by Radio and TV Stations)를 말한다.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통지·삭제(notice & take down) 절차와 유사하다. 즉, 권리 주장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우리나라 저작권법상 OSP에 해당)에게 불법 저작물을 삭제·차폐·접속차단·거래 및 서비스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면,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플랫폼 내 경영자(우리나라 저작권법상 복제·전송자에 해당)에 그 사실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법 제43조에서는 플랫폼 내 경영자가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처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통지가 된 후 플랫폼 내 경영자가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을 경우, 플랫폼 내 경영자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기초적인 증거를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증거를 제출받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관련 주관부서에 고소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후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도달한 후 15일 이내에 권리자가 고소 또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온라인 플랫폼 경영자는 자신이 취했던 조치를 신속하게 중지해야 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 행위가 정당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절차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나) 민법전(Civil Code) 제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2020년 5월 28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제정 민법전(Civil Code)에서도 중국 전자상거래법과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번 민법전은 추가적인 규정을 포함하여 7편(총칙, 물권, 계약, 인격권, 혼인 및 가족, 상속, 불법행위)과 부칙, 84장, 1260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법전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민법전 시행으로 기존 민법(Civil Law), 결혼법(Marriage Law), 보증법(Guarantee Law), 계약법(Contract Law), 재산법(Property Law), 불법행위 책임법(Tort Liability Law)은 폐지된다.[71]

이번 중국 민법전에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은 총칙편의 지식재산권 정의(제123조), 불

71) 〈https://www.reedsmith.com/en/perspectives/2020/06/the-adoption-of-the-chinese-civil-code-and-its-implications-on-contracts〉 (2020. 10. 23. 최종 방문)

법행위편의 고의적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 규정(제1185조), 인터넷 권리 침해 관련 규정(제1195조, 제1196조)을 들 수 있다.[72]

민법전 제123조는 민사주체는 법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향유하며, 지식재산권은 권리자가 법에 따라 ① 저작물, ② 발명·실용신안·디자안, ③ 상표, ④지리적 표시, ⑤ 영업비밀, ⑥ 반도체 배치설계, ⑦ 식물신품종, ⑧ 법에서 규정하는 기타 대상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 제1185조에서는 고의로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피침해자는 상응하는 징벌적 배상 청구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 제1195조는 ①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권리 침해 행위를 한 경우, 권리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차폐(전송중단), 접속차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지할 권리를 가진다. 통지에는 권리 침해를 구성하는 초보 증거 및 권리자의 진실된 신분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통지를 받은 이후, 즉시 해당 통지를 관련 인터넷 사용자에게 전달해야 하고, 권리 침해를 구성하는 초보 증거와 서비스 유형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손해의 확대된 부분에 대하여 해당 인터넷 사용자와 연대 책임을 진다. ③ 잘못된 통지로 인하여 인터넷 사용자 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손해가 발행한 경우, 권리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전 제1196조는 ① 인터넷 사용자는 전달된 통지를 접수한 이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권리 침해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성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성명서에는 권리 침해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초보증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성명서를 접수한 후 그 성명서 통지를 제출한 권리자에게 전달해야 하고, 관련 부서에 민원 제기 또는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성명서를 권리자에게 전달한 이후 합리적 기간 이내에 권리자가 민원 제기 또는 소송 제기를 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즉시 취했던 조치를 중지해야 한다.

이번 민법전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관련 규정은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과 관련된 것으로, 전자상거래법상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서 인

72) 중국 법률을 비공식 영어로 번역된 자료는 www.chinalawtranslate.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터넷 서비스 제공자로, 플랫폼 내 경영자에서 인터넷 사용자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1단계 미·중 경제무역협정[73]

지난 2020년 1월 15일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은 무역 분쟁을 잠시 중단하기 위한 1단계 미·중 경제무역협정안에 최종 서명하였다. 중국 산업 성장과 첨단 기술 유입 등에 대하여 미국은 자국 이익의 위협 요인으로 판단 후 무역 보복 등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이를 다시 중국이 보복하면서 이어져 오던 양국간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되어 보이는 사건이었다. 특히, 미중 무역 분쟁의 주요 촉발제는 단연 지식재산권 분야였다.[74] 미국은 해외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기술 이전 강요, 해외 기술 탈취, 해킹 등을 통한 기업 기밀 수집 등을 이유로 중국산 대미 수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도 제한하였다.[75]

양 국가는 미중 1단계 경제무역협정을 통해 중국이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의 거래, 생방송 무단 송신 등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형사 집행 방안과 구제 수단 등을 마련토록 합의하였다. 중국은 이번 합의로 미국에게 'Notice & Take Down (이하, 통지 및 삭제 절차)' 강화,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사법 집행 보장 및 형사 처벌 강화,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 추정 도입 등을 보장해야 한다.

(가) 통지 및 삭제 절차

양국은 중국 내 온라인 불법 복제·위조 제품 판매와 스포츠 및 기타 생방송의 무단 송신 등으로 인한 권리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단 중 하나로 보다 개선된 '통지 및 삭제 절차'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해당 내용은 제1.1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중국은 해당 시

73)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74)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The U.S.-China "Phase One" Deal: A Backgrounder(2020. 2.4.) 〈https://www.uscc.gov/sites/default/files/2020-02/U.S.-China%20Trade%20Deal%20Issue%20Brief.pdf〉 (2020. 10.23. 최종 방문)

75) USTR, *supra note at 19*, p.13.

스템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미국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항에서 중국이 온라인 환경에서의 권리 침해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지 및 삭제' 절차가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을 명시하였다. 제2항에는 '통지 및 삭제' 절차 개선을 위한 내용에 대해 명시하였는데, (1) 게시 중단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 (2) 선의의 착오로 인한 게시 중단 통지에 대하여 면책할 것 (3) 권리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민원 제기 기간을 20일로 보장할 것 (4) 악의적 구제 신청에 대한 처벌과 구제 신청 관련 정보의 공개 등을 통해 게시 중단 통지 및 이의 제기 신청의 유효성을 보장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기존 불법행위 책임법(Tort Liability Law) 제36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책임을 규정하고 있었다.[76] 해당 규정은 우리나라와 같은 민사책임 면책 구조가 아니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불법행위를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연대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규정이다. 다만, 해당 규정은 권리자의 권리 남용 및 악의적 통지를 억제할 수 없고, 통지 이후 구체적 절차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알다(知道)'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합의문 제1.13조는 이를 보완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파악된다. 앞에서 소개한 민법전 제정으로 불법행위 책임법은 폐지되었으며, 제1195조 및 제1196조를 통해 이를 보완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지식재산권 사건의 사법 집행 및 절차 개선

양국은 중국 내 저작권 침해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국의 효율적이고 강력한 형사 집행 절차 및 제도 마련에 합의하였다. 또한, 권리 침해자가 원활하게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 추정 조항도 도입되었다. 해당 내용은

76) 불법행위 책임법 제36조 네트워크 사용자,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사용자가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불법행위 피해자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블라인드 처리, 연결의 단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통지를 접수한 후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의 확대부분에 대하여 같은 네트워크 사용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네트워크 사용자가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한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네트워크 사용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 4개의 조항에 규정하고 있다.

1)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사법 집행과 형사 처벌 강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명백한 사실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 혐의'가 있는 저작권 침해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하여 행정부처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기존 관행 및 제도를 사법 기관이 집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 중국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정 배상금, 금고형 및 벌금의 한도를 높이는 등 엄중한 처벌을 내려 발생 가능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억제해야 한다.

2) 저작(인접)권 추정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집행과 관련하여 양국은 권리자 추정 제도를 도입할 것을 약속하였다. 통상의 방식으로 성명 표시를 한 자를 해당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 제품의 권리자(right holder)로 추정하며, 또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이 저작물, 실연, 음반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추정에 부합하고 피소된 침해자가 반박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협의 또는 기타 문서 제출요구를 면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소된 권리 침해자가 부담할 증거제공책임과 입증 책임을 규정하여야 한다.

해당 조항의 경우, 중국 저작권법은 '저작자'에 한정하여 권리추정을 규정하며,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권리 추정 규정이 없어, 관련 권리자들이 민·형사상 구제절차 진행 시 권리 관계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5) 방송 분야

MBC는 최근 '찬싱'이라는 중국 제작사와 여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무한도전〉과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 포맷 및 제작 지원 관련 계약을 체결 후 진행 중에 있었는데, 찬싱 쪽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 〈무한도전 시즌1〉의 광고 순수익(프로그램 제작비 등을 제외한 수익) 및 배급 수익 일부 미수금에 대한 소송을 MBC에서 제기했고, 이에 찬싱은 〈무한도전 시즌2〉 제작 시

프로그램 공동 개발에 MBC 제작진이 끝까지 참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 위반에 따른 연합개발 비용 반환 및 위약금 지불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는 한한령에 따른 찬싱의 통보로 철수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를 증빙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MBC는 〈복면가왕 시즌1〉에 대한 미수금 청구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찬싱에게 수익 배분을 2주 안에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으나, 찬싱은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해 인민법원에 공탁했다. 이후 찬싱은 프로그램명을 〈복면 가수를 맞혀라(蒙面唱將猜猜猜)〉로 변경한 후 주주모집신청 광고에 해당 프로그램은 자신들의 오리지널 창작물이라고 명시했다.

(6) 음악 분야[77][78]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는 중국음악저작권협회(MCSC)와 1997년 상호관리계약을 맺은 후 각 단체의 관리지역에서 사용되는 상대 단체의 음악 저작물을 관리해오고 있다. 2008년부터는 중국 내 노래방 관련 이용허락 업무는 중국음상집체관리협회(CAVCA)가 MCSC를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두 협회 간 협의된 비율로 분배하고 있다.

MCSC는 연 2회 징수금을 분배하지만 그 주기는 매년 변동되고 있다. 저작권료를 송금할 때는 협회로부터 청구서 발행을 요청하며, 청구서가 전달 된 후에도 상당한 기일 이후 해당 금액이 입금되는 편이다. 2018년에 중국 최대 온라인서비스사업자 중 하나인 Tencent로부터 MCSC가 과거 사용료 소급분을 전달받아 협회로 분배함으로써 온라인 부문 저작권료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적이 있다. 2019년에는 중국중앙TV(CCTV), 중국인민라디오방송(CNR), 중국국제방송(CRI)의 통합으로 인해 방송부문 저작권료가

77) 음악 분야의 쟁점은 연구진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영상회의(2020. 8. 20.)를 통해 취득한 내용과 서면으로 요청하여 받은 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78)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2020 .9. 21.), 한국음반산업협회(2020. 10. 20.)와의 영상회의를 통하여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 관점에서의 쟁점을 파악하였으나, 중국·베트남·태국과는 법률 체계가 상이하며, 해당 분야 집중 관리 단체가 부재하거나 체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권리 행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동 보고서상의 쟁점 사항으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이하 베트남과 태국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다루지 않기로 한다.

대폭 감소하였다. 대부분 중국 음악 시장과 중국에서 발생하는 음악 저작권료의 규모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18년 기준 MCSC의 징수금액(316,600,000위안, 약 538억원)은 KOMCA의 징수금액(2,034억원) 대비 약 26%에 불과하다. 즉, 중국 음악 시장 규모에 비해 MCSC 징수 금액은 매우 낮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MCSC의 중국 음악 시장과 관련된 연차 보고서[79]에 따르면, 2019년도 징수금액은 404,880,000위안(약 688억)이며, 징수 유형은 온라인이 55%, 실연 21%, 방송 14%, 복제 6%, 해외 징수 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호관리계약에 따라 2019년도에 MCSC가 외국으로부터 징수한 금액과 외국으로 분배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음악이 중국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MCSC의 해외 징수 및 분배 금액(상위 10위 기준)〉

금액 단위 : 중국 위안화

징수		분배	
CMO/국가	금액	CMO/국가	금액
MUST/대만	1,913,972	CASH/홍콩	16,975,243
CASH/홍콩	1,548,359	MUST/대만	9,552,483
JASRAC/일본	1,506,425	ASCAP/미국	2,241,261
BUMA/네덜란드	1,064,914	BMI/미국	1,873,671
COMPASS/싱가폴	935,543	JASRAC/일본	1,350,119
GEMA/독일	917,251	PRS/영국	1,283,849
SACEM/프랑스	632,781	KOMCA/한국	1,125,370
PRS/영국	494,230	COMPASS/싱가폴	952,919
MACP/말레이시아	407,482	MACP/말레이시아	579,063
ARTISJUS/헝가리	196,154	GEMA/독일	468,927

출처 : MCSC 2019 Annual Report

중국 저작권법 제43조(개정 저작권법상 제46조)에서 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가 이미 발행된 타인의 저작물을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중국 중앙 정부에서 TV 및 라

79) MCSC 홈페이지 참조(http://www.mcsc.com.cn/about/annual_report.html)

디오 방송국의 녹음 방송에 대한 보수를 위한 임시 조치(广播电台电视台播放录音制品支付报酬暂行办法)[80]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불균형으로 인해 MCSC에서는 임시 조치를 따르지 않고, 각 방송국들과 개별적으로 사용료 등을 협의하여 계약함으로써 MCSC가 모든 방송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표준 사용료(징수 규정)가 없는 상황이다. KOMCA는 2019년까지 직접 큐시트를 작성하고 MCSC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더불어 MCSC는 2019년 기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곳이 TV 방송국 51곳, 라디오 방송국 69곳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저작권료를 지급한 이력이 없는 TV 방송사는 20여곳, 라디오 방송사는 15여곳라고 밝혔다. 또한, 사전 계약된 보상 시스템을 준수하고 있지 않아 TV 방송국 27곳, 라디오 19곳과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전송 사용료 관련해서는 MCSC가 온라인에서 서비스되는 방송물, 영화 등의 영상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중국 저작권법 제15조에 따라 방송사가 영화를 구매하는 경우 저작권자와 제작사 간의 계약서에 방송권도 포함되어 있으며, 영상 저작물에 사용된 음악은 이러한 저작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KOMCA가 직접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의 불법 유통 여부를 확인한 후, MCSC에 협조를 통해 해당 플랫폼과의 계약 체결을 요청하거나,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문제의 음악 저작물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MCSC는 MIUI Music, Xiami Music 등 중국 유수의 온라인 음악 서비스 플랫폼과 이용계약을 맺고 있으며, 해당 플랫폼에서는 KOMCA의 관리 음악저작물이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KOMCA가 MCSC로부터 받은 저작권료 분배 내역에는 해당 플랫폼에 대한 사용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MCSC의 분배내역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KOMCA에 분배한 금액의 대부분은 Baidu 또는 Tencent 및 그 계열사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그 외 플랫폼에서 서비스되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불어 KOMCA로 제보된 민원에 따르면, 중국 제작사와 우리나라 저작자와의 작곡 계약시 중국 제작사가 해당 계약의 저작물을 영구히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내용으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80) Interim Measures for Payment of Remuneration by Radio and Television Stations for Broadcasting Sound Recordings

나. 베트남

(1) 한베 FTA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2012년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3년의 논의 끝에 2015년 12월에 FTA가 발효되었다. 한베 FTA는 TRIPS보다 높은 수준의 규정을 마련하여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높은 수준의 집행 절차를 규정하여 베트남 내 우리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권리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에게 배타적인 복제권 부여, 실연자·음반제작자의 보상청구권, 권리자 추정, 인터넷상 반복 침해 대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81]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저작권 관련 국제 조약 가입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베른협약	로마협약	WCT	WPPT	TRIPS	베이징조약	마라케시조약
우리나라	○	○	○	○	○	○	○
베 트 남	○	○	-	-	○	-	-

이하에서는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중 저작권 관련 규정이 한베 FTA의 규정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거나 우리나라의 권리자가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을 이해하고 있지 못해서 권리 행사가 미흡한 부분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81) 우리나라와 체결한 FTA에 대한 저작권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FTA 저작권 내용 해설서」(2019)를 참고.

(가) 실연자의 복제권

국문	영문
제12.8조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1. 각 당사국은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방식과 형태를 불문하고, 그의 저작물, 실연, 음반 및 방송의 모든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Article 12.8 :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Protection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1.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uthors,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have the right to authorize or prohibit all reproductions of their works, performances, phonograms and broadcasts, in any manner or form.

한베 FTA 제12.8조제1항에서는 실연자에게 실연의 모든 방식 및 형태로의 복제와 관련하여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복제의 형태와 매체를 불문하고 모든 복제 행위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한베 FTA를 이행하고 있다.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에서는 실연자의 권리라는 제목으로 인격권과 재산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인격권과 재산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실연자가 투자자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연자가 투자자가 아닌 경우에 실연자는 인격권만 가지고 재산권을 가질 수 없고, 재산권은 투자자가 가지는 것으로 규정(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29조제1항)하고 있다. 인격권에는 ① 실연할 때, 음반이나 비디오 녹화물을 발매하거나 실연을 방송할 때 성명을 표시할 권리와 ② 실연 이미지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타인이 실연자의 명예나 명성을 변경, 훼손 또는 왜곡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수 있는 권리(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29조제2항)가 있다. 재산권에는 ① 음반이나 비디오 녹화물에 생실연을 고정할 권리, ② 음반이나 비디오 녹화물에 고정된 실연을 직·간접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 ③ 방송 목적을 제외하고 고정되지 않은 실연을 방송하거나 기타 공중 송신할 수 있는 권리, ④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 판매, 대여 또는 배포의 방법으로 실연의 원본 또는 복사본을 공중에게 배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29조제3항)

(나) 실연자·음반제작자의 방송보상청구권

국문	영문
제12.8조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2. 각 당사국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미 발행된 음반을 방송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5. “사람”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양해된다. 6. 보상은 사용자와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 간에 합의하거나, 또는 각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달리 결정된 조건에 따라 지급된다.	**Article 12.8 :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Protection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2.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persons that directly or indirectly use phonograms already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for broadcasting are not required to obtain permission but must pay remunerations to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 5. “Persons” shall be understood as natural or juridical persons. 6. The remuneration shall be paid under the terms agreed between the user and the performers or producers of phonograms or otherwis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of each Party.

한베 FTA 제12.8조제2항에서는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을 방송에 직·간접적으로 이용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연한 경우에 보상금 지급에 대한 언급은 없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모두 가입하고 있는 로마협약에서는 음반의 2차적 이용에 대하여 방송과 공중전달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로마협약 제12조) 그러나 베트남은 로마협약을 가입하면서, 음반의 2차적 이용에 대한 보상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유보하고 있어, 동 규정을 이행할 의무는 없다. 반면, 한베FTA에서는 로마협약과의 관계를 정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82] 또한, 한베 FTA에서는 ‘직접적’인 이용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82) 한중 FTA 제15.7조제1항에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이 방송이

이용까지 확대하고 있다.[83][84] 따라서 한베 FTA는 방송 보상청구권과 관련하여 로마협약보다 높은 수준의 내용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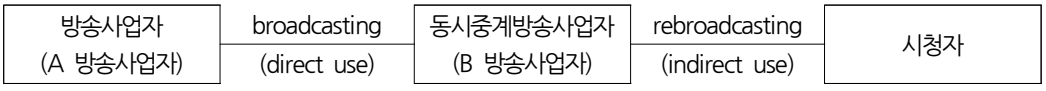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방송 보상금뿐만 아니라 공연 보상금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실연자의 보상에 대해서는 제75조 및 제76조의2를 통하여, 음반제작자의 보상에 대해서는 제82조 및 제83조의2를 통해서 한베 FTA를 이행하고 있다.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33조제1항[85]을 통해서 한베 FTA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 또는 비디오녹화물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하여 방송을 제작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유료 방송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연자·음반제작자와 방송을 제작하는 자가 이용일로부터 합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regulations of the Government)을 따르거나 소제기가 가능하며, 무료 방송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방송을 제작하는 자는 실연자·음반제작자에게 시행규칙(regulations of the Government)에 따라 이용일로부터 합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나 공중전달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보상에 대한 권리를 향유한다."고 하면서, 동 규정은 "국제협정에 따라 그러한 권리를 제공해야 하는 각 당사국의 의무에 따르는 것으로 양해된다."라고 하여 국제협정과 해당 FTA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은 WPPT에서 상업용 음반의 2차적 사용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고 유보선언을 하고 있어, 한중 FTA에 따른 보상 청구 내용에 대한 이행 의무가 면제된다고 하겠다.

83) 방송의 '직접적'인 이용과 '간접적'인 이용에 대한 설명은 각주55 참고

84) 방송보상청구권에 있어서의 직접/간접 이용 개념에 대해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85) 제33조 이용허락이 불필요하나 저작권이용료 또는 보상금의 지불이 필요한 경우 저작인접권의 이용

1. 어떠한 방식으로든 후원 내지 광고를 받거나 유료인 방송을 제작함에 있어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되어 있는 음반 또는 비디오녹화물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단체 및 개인은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저작자, 저작권자, 저작권자, 실연자·음반제작자·비디오녹화물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이용일로부터 합의한 이용료(royalty) 또는 보상금(remuneration)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시행규칙을 준수하거나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후원 내지 광고를 받지 않은 방송 또는 무상인 방송을 제작함에 있어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되어 있는 음반 또는 비디오녹화물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단체 및 개인은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저작자, 저작권자, 실연자·음반제작자·비디오녹화물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시행규칙에 따라 이용일로부터 합의한 이용료(royalty) 또는 보상금(remuneration)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실연자·음반제작자의 공연 보상청구권에 대한 내국민 대우

국문	영문
제12.2조 일반 원칙 2. 이 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범주의 지식재산에 관하여, 각 당사국은 그러한 지식재산권의 보호 와 향유 및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조와 제5조에 따라 그러한 권리로부터 유래하는 모든 혜택과 관련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에게 부여한다. ---------- 1. 제2항의 목적상, “보호”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지식재산권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가용성, 취득, 범위, 유지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그리고 나. 제12.8조에서 규정하는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신호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 2. 이 장의 목적상, “국민”이라는 용어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Article 12.2 General Principles** 2. In respect of all catego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covered in this Chapter, each Party shall accord to nationals of the other Party 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that it accords to its own nationals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and enjoyment of su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ny benefit derived from such rights in accordance with Articles 3 and 5 of the TRIPS Agreement. ---------- 1.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the term “nationals” shall have the same meaning as in the TRIPS Agreement. 2.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protection” shall have the same meaning as in the TRIPS Agreement, and shall include: (a) matters affecting the availability, acquisition, scope, maintenance,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well as matters affecting the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pecifically covered by this Chapter; and (b) the rights and obligations concerning encrypted program-carrying satellite signals set out in Article 12.8.

베트남 지식재산법 제33조제2항[86]에서는 영업 활동이나 상업적 활동에 이미 발행된

86) 제33조 이용허락이 불필요하나 저작권이용료 또는 보상금의 지불이 필요한 경우 저작인접권의 이용
2. 영업 활동 또는 상업적 활동에 이미 발행된 음반 또는 비디오녹화물을 이용하는 단체 및 개인은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저작자, 저작권자, 실연자·음반제작자·비디오녹화물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이용일로부터 합의한 이용료(royalty) 또는 보상금(remuneration)을 지급하여야 한다.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을 준수하거나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음반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실연자·음반제작자에게 이용일로부터 합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regulations of the Government)을 따르거나 소제기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공연 보상에 대한 내용으로 한베 FTA에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한베 FTA제12.2조제2항에서는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를 규정하고 있다.

내국민 대우란 외국인의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에 적용되는 보호가 내국민에 대하여 부여하는 권리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내국민 대우의 표현과 관련하여 베른협약·UCC·WCT·WPPT에서는 '권리'(rights), 로마협약·TRIPS에서는 '대우'(treatment)를 사용하고 있다.[87] 베른협약·UCC·WCT에서의 '권리'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며, WPPT에서의 '권리'는 배타적 권리에 더하여 보상청구권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로마·TRIPS에서의 '대우'란 「보호에 관한 대우」(▸로마; treatment accorded by the domestic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protection is claimed, ▸TRIPS;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it accords to its own nationals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를 말한다.

한베 FTA에서 내국민 대우는 TRIPS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이익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향유에 관한 대우를 말한다. 즉, '파생되는 이익과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내국민 대우와 '파생되는 이익과 지식재산권의 향유'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의미한다.

TRIPS에서의 '대우'란 「보호에 관한 대우」이며, TRIPS에서 보호(protection)란 TRIPS에서 특별히 정한 지식재산권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과 지식재산권의 취득가능성, 취득, 범위, 유지 및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며,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기관의 내국민 대우에 대해서는 TRIPS에서 규정되어 있는 권리에 관해서만 적용된다고 하고 있다. TRIPS에서 규정되어 있는 실연자의 권리는 비고정 실연의 고정과 복제, 생실연에 대한 무선 방송 및 공중전달에 대한 금지권(제14조제1항)이 있으며, 음

87) 베른협약 제5조제1항, 로마협약 제2조제1항, UCC 제2조제1항, TRIPS 제3조제1항, WCT 제3조, WPPT 제4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반제작자의 권리는 복제에 대한 허락·금지권(제14조제2항)이 있다. TRIPS에서는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향유'에 대해서만 내국민 대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 '파생되는 이익'에 대한 '보호'와 '향유'에 대한 내국민 대우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베 FTA는 TRIPS보다 높은 수준의 내국민 대우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파생되는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다. TRIPS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연자·음반제작자의 권리에 공연권이 있느냐에 따라서 공연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보상청구권에 대한 내국민 대우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TRIPS에서 실연자는 자신의 생실연에 대하여 허락없이 이루어진 무선 방송이나 공중전달(공연권에 해당)에 대한 금지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 고정된 실연에 대한 공연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TRIPS에서 음반제작자는 자신의 음반의 직·간접적인 복제에 대하여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 음반의 공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TRIPS에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고정 실연 및 음반에 대한 공연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생되는 이익'에 대한 '보호'와 '향유'에 대한 내국민 대우가 적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2020년 11월 15일에 열린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협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RCEP은 우리나라, ASEAN[88],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참여하고 있는 다자협정으로 2012년에 협상을 개시하였다. RCEP 정상회의에서 최종 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현재 협정문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존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아세안 회원국들 간의 제도적 차이로 인해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이 일반적 협력 수준에 그쳤으나, 이번 협정에서는 참여 국가들의 특성을 고려해 회원국에 포괄적

88)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을 회원국으로 하고 있다.

으로 적용되는 저작권 보호의 근거가 되는 규범들을 도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WCT, WPPT 등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협정 참여국에서도 이 조약들에 상응하는 수준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도 이번 협정의 큰 성과라고 하면서, 협정에 참여한 국가들이 한류 콘텐츠의 주요 소비국이기도 한 점을 감안할 때,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한 이번 협정은 한류 콘텐츠의 안정적인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 민형사 구제를 디지털 침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마련해 온라인 환경에서의 한류 콘텐츠 침해에 대한 구제 근거를 마련한 점, ▸ 집중관리단체들의 투명한 장부 기재와 저작권료의 상호 송금 노력 의무를 명문화해 해외에서 소비되는 우리나라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수령 가능성을 높인 점, ▸ 온라인 침해 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에 협력할 의무 조항을 신설해 협정 국가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의 발판을 마련한 점 등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고 덧붙였다.[89]

(3) 음악 분야[90]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는 베트남음악저작권협회(VCPMC)와 2009년 상호관리계약을 맺은 후 각 단체에서 관리지역에서 사용되는 상대 단체의 음악 저작물을 관리해오고 있다. VCPMC는 연 4회 징수금을 분배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그 주기는 협회 사정에 따라 변동되고 있다. 저작권료를 송금할 때는 협회로부터 청구서 발행을 요청하며, 청구서가 전달 된 후에도 상당한 기일 이후 해당 금액이 입금되는 편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2019년까지 저작권료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9년 K팝 아티스트들의 베트남 공연으로 2020년 저작권료는 상승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분석에 기인한 통계 결과가 아니라, VCPMC와의 서신으로 알게 된 결과이다. VCPMC에서 저작권료 분배 시 매체별 송금이 아닌 전체 금액을 입금하고 있어 분석을 위해서는 분배파일이 필요하며, 또 이는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89) 문화체육관광부 2020. 11. 13.자 보도자료(신남방 국가에서 게임·시청각·관광 시장 개방 확대 및 저작권 규범 정립으로 한류의 안정적 진출 기반 마련 – 15개국,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최종 서명 –)

90) 음악 분야의 쟁점은 연구진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국제팀장)와의 영상회의(2020. 8. 20.)를 통해 취득한 내용과 서면으로 요청하여 받은 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있다.

베트남 무대공연 프로모터들과의 갈등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콘서트 개최 직후 회사를 폐쇄하고 재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저작권 침해를 해결하는 데에는 방법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효과가 미비하여 꺼려지는 것이 현실이다. 공연사용료 미납 매체는 호텔부터 노래방, 선박회사까지 다양하며, 이럴 경우 KOMCA는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등을 송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회신을 받은 적은 없고, 해당 누수 저작권료의 소급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다. 태국

(1) 태국과의 FTA

우리나라와 태국과의 직접적인 양자 조약을 체결하지는 않고 있다. 태국은 ASEAN 회원국이며, 우리나라는 한-ASEAN과 2006년 FTA를 체결한 바 있다. 한-ASEAN FTA에서는 지식재산권을 경제 협력 분야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특별히 다룰만한 의무 규정이 없다. 다만, 태국의 경우에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0년 11월 15일에 최종 서명된 RCEP을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2) 태국 저작권법 개정

태국 저작권법을 WIPO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WCT)]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작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중개 서비스 제공자(intermediate service provider), 일시적인 컴퓨터 데이터 저장 서비스제공자(temporary computer data storage service provider), 컴퓨터 테이터 저장 서비스 제공자(computer data storage service provider), 컴퓨터 데이터 소스 검색 서비스 제공자(computer data source searching service provider)로 구분하고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요건을 명확히 하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서비스·제품·장비를 서비스·제조·판매·배포하는 행위를 기술적 보호조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진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영상(audiovisual)·영화(film)·음반(sound recording)·방송 저작물(broadcasting work)의 보호기간을 최초 공표 후 5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91]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태국 정부 관계자는 현행 태국 저작권법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 저작물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저작권자는 법원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웹사이트의 불법 저작물 제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로 인하여 불법 저작물을 삭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절약되

91) 〈https://thelegal.co.th/2020/10/06/thailand-revision-of-the-copyright-law/〉 (2020. 11. 10. 최종 방문)

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유리하며,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를 억제하는 효율성의 높이고 창작자에게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3) 음악 분야[92]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는 태국음악저작권협회(MCT)와 1998년 공연·복제에 대한 상호관리계약을 맺은 후 각 단체에서 관리지역에서 사용되는 상대 단체의 음악 저작물을 관리해오고 있다. MCT는 연 2회 징수금을 분배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징수액은 2억 1천 7백여만원 정도이다. MCT는 태국 내 K팝 공연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징수액의 80%이상이 공연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베트남과 같이 태국 또한 현지 무대공연 프로모터들과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태국의 대표적인 무대공연 프로모터인 A사의 경우 MCT의 이용허락을 득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사용료를 미납하고 있다. 2016년 태국 방송사 B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 10편에 대한 방송사용료 미납으로 MCT와 소송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는 원만한 합의로 종결된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이후 방송사용료가 징수되었는지의 여부는 여전히 회신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92) 음악 분야의 쟁점은 연구진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국제팀장)와의 영상회의(2020. 8. 20.)를 통해 취득한 내용과 서면으로 요청하여 받은 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4. 대응 방안

가. 중국

(1) 음반의 2차적 이용에 대한 보상청구

중국 저작권 연구계는 음반제작자의 보상청구권 도입과 관련하여 국제조약과의 일치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조약은 WPPT 제15조일 것이며, 이를 반영한 중국 저작권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음반제작자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WPPT 제15조의 적용을 중국은 유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송이나 공연시 음반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음반제작자의 보상청구권 규정 내용이 확정되면 우리나라의 음반제작자도 중국에서 음반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한중 FTA 제15.2조제2항[93]에 따른 내국민 대우 원칙상 당연한 결론이다.

우리나라 음반제작자는 중국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되게 되면 중국에서도 방송과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음반제작자는 중국에서 음반의 방송과 공연 이용에 대한 보상청구 시스템을 시행 초기부터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등 외국에서의 음반 이용에 따른 보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음반제작자의 내부 전담 인력을 배치하거나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국가의 음반제작자 단체와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제3차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음반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여 공연하는 경우에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보인다. 향후 중국 제3차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 한중 FTA 제15.31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위

93)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주의 지식재산에 대하여,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그 당사국이 보호와 관련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원회에서 그 이유와 배경을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음반제작자 이외의 실연자도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음반의 특성상 실연이 필수적인 바, 실연자에게는 어떻게 해당 권리 행사가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현행 중국 저작권법 제44조에서는 "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가 이미 출판된 음반을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보수는 지급하여야 한다. 당사자간에 별도로 약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음반을 방송에 이용할 경우 방송사업자는 저작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는 지급할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음반제작자의 경우에는 이번 개정으로 일부 권리 행사가 가능하지만, 실연자는 여전히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입법의 배경에 대해 胡开忠 교수는 중국 방송국의 재정이 좋지 않고, 만약 음반의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게 되면 방송국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로 방송국은 정부가 운영 주체이며, 방송은 정치 선전과 인민 문화를 발전시킬 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방송국이 실연자에게까지 보상청구권을 인정한다면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대외 선전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94] 반면 张今 교수는 동 규정은 국제조약과 충돌되기 때문에 방송사업자는 음반을 방송하는 경우 음반제작자와 음반 제작에 참여한 실연자도 보상금 분배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95]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 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SCCR)에서 논의 중인 방송사업자 보호 조약(안)에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에 대한 배타적인 이시 재송신(deferred retransmission)[96]을 부여

94) 황선영, 중국 저작권법상 실연자 권리 보호 규정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제130호 (2020), 224쪽

95) 황선영, 앞의 연구, 제225쪽

96) SCCR에서 이시 재송신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으나, 이시 송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deferred transmission" means a transmission for the reception by the public by any means of a programme-carrying signal delayed in time, other than a near simultaneous transmission, including transmissions made in such a way that members of the public may access them from a place and a time individually chosen by them.」(SCCR/39/7)

하느냐가 주요 쟁점 중에 하나이다. 이시 재송신이란 시간을 달리하여 방송 신호를 공중이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전송 개념과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저작권법 개정안 초안 2안 제47조 제3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SCCR에서 논의 중인 이시 재송신권을 도입하는 것이다. 중국은 방송사업자에게 기존에 없던 권리인 이시 재송신권을 추가하여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하면서, 방송시 저작인접물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논리는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胡开忠 교수가 저작인접권자에게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국 체계상 타당하지 않다는 설명은 더 이상 설득력이 가질 수 없다.

외국의 권리자 또는 단체에서는 각자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입법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의견을 개진한다. 우리나라의 실연자 또는 관련 협회에서도 중국 저작권법 개정 입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하여 우리나라 실연자의 권리가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방송사업자의 권리 확대 주장

중국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대해여 금지권(현행)에서 허락권(1차 초안)으로, 다시 허락권(1차 초안)에서 금지권(2차 초안)으로 수정하는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한중 FTA에서는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authorize or prohibit)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에서 “하거나”(or)의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거나”(or)는 포함적 선언 판단(inclusive disjunction)으로 “하거나”(or)를 중심으로 한 전·후의 모든 요소가 해당되는 경우로 사용되어 오고 있으며,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이는 굳어진 관행(uniformed practice)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한미 FTA의 ‘exclusive right to authorize or prohibit’[97]를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exclusive right to do and to authorize’[98]라는 표현으로 수용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EU의 정보사회지침에서도 “exclusive right to authorize or prohibit”[99]이라는

97) 한미 FTA 제18.4조, 제18.5조

98)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

표현을 영국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exclusive right to do”[100] 라는 표현으로 수용하고 있다.

중국은 한중 FTA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금지권에서 허락권으로 개정이 필요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안 2안에서 현행과 같이 금지권으로 다시 수정하였다.

초안 2안에서 허락권에서 금지권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한 입법 자료나 문헌 자료는 찾아 볼 수 없었으며, 중국 학자에게 서면으로 문의[101]하여 받은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潘天怡 교수는 방송사업자는 창작자가 아닌 저작인접권자로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향유하지 않으며, 방송사업자는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신호에 대한 권리만 가지므로 창작자(저작자)가 가지는 허락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오히려 저작인접권자인 방송사업자에게 프로그램의 방송, 복제, 공중전달에 관한 금지권만 부여하여 소극적으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하였다.[102] 그러나 현행 중국 저작권법은 실연자에게 방송권, 복제권, 공중전달권 등의 허락권을 부여하고 있어 저작인접권자이기 때문에 창작자가 가지는 허락권을 부여하는 것을 타당하지 않다는 논거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刘春田 교수는 허락권과 금지권의 의미상 큰 차이는 없으며, 허락권의 주된 표현이 금지행위이므로 실질적인 의미는 거의 없고, 동 조항의 수정은 방송사업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담당하는 기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103]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authorize or prohibit) 및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exclusive right

99)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제2조

100) 영국 저작권법 제16조 등

101)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동아대학교 황선영 교수에게 2020년 9월 18일에 전자메일로 의뢰하였다.

102) 베이팡공업대학 법학원 판톈이(潘天怡) 교수 자문 회신 내용(2020년 9월 28일)

103) 인민대학교 지식재산법학원 원장, 중국지식재산연구회 회장 류춘전(刘春田)교수 자문 회신 내용(2020년 10월 3일)

of authorizing)로 표현되는 두 형식의 배타적인 권리가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한 Reinbothe의 의견이나 영미법계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 등을 비추어 보아 刘春田 교수의 설명 또한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금지권에서 허락권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중국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허락권은 현행 중국 저작권법상 저작권자, 기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보호 형식과 일치하며, 관련 국제조약과의 표현과도 일치하며, 저작권 보호 형태가 '행위 통제'에서 '방송 장려'로 이어지는 긍정적 전환을 의미한다.[104] 금지권에서 허락권으로의 개정은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중국 저작권법에서 사용하는 금지권 모델은 침해가 소극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만 방송사업자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시장화 발전에 맞춰 방송사업자가 능동적인 모델을 사용하여 스스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 방송사업자의 노동 성과와 투자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105]

초안 2안에서와 같이 금지권으로 다시 변경되어 개정된 저작권법은 한중 FTA와 불합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중 FTA 제15.31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나라 방송사업자 또는 관련 협회에서도 중국 저작권법 개정 입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하여 우리나라의 방송물이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권리 추정

중국 개정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 추정에 준용되는 저작인접권의 범위가 실연, 음반, 방송에 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중국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저작인접권이 추정되는 준용 범위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까지 포함되는지 향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104) 罗娇·冯晓青, 《著作权法第三次修改中的相关权评析》, 法学杂志 2014年第10期期, 北京市法学会, p.137.

105) 〈https://baijiahao.baidu.com/s?id=1669096639383542622&wfr=spider&for=pc〉 (2020. 10.15. 최종 방문)

저작권법과 별도로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도 권리자 추정과 관련하여 지난 2020년 8월 5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 강화에 대한 의견(초안)”[이하 ‘의견(초안)’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동 의견(초안)에는 소송에서 권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정 규정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밝히고 있다.[106] 현행 중국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에 한해서 저작자 추정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초안)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대의 증거가 없는 경우 저작물, 실연, 음반에 통상적인 성명이 표시된 경우 당사자가 주장하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여 저작물뿐만 아니라 실연, 음반까지 추정의 대상을 확대하고, 추정의 내용도 권리 추정으로 확대하고 있다. 다만, 추정의 대상에 한중 FTA에는 포함되어 있는 방송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추정의 내용에 방송이 포함될 수 있도록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 권리자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권리자 추정은 권리 구제 절차에서 적용이 가능하며, 권리자에게는 해당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107]

중국 개정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최고인민법원의 발표 내용은 저작자 추정에 더하여 저작권자까지 추정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이번 중국 개정 저작권법 및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초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작권자가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인증 제도라는 것을 이용하여 진정한 권리자임을 확인받고 있다. 저작권자 추정과 관련한 중국 개정 저작권법과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이 시행되게 되면 인증 제도라는 절차를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나 중국의 정책 당국은 법제도와 집행을 변칙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저작권자 추정 규정을 어떻게 시행할 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저작권자 추정 규정이 우리나라 저작권자에게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4) 방송사업자의 저작물 방송시 보수 지급

베른협약 제11조의2 제1항에서는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① 그의 저작물을

106) 〈http://www.court.gov.cn/zixun-xiangqing-246041.html〉 (2020.8.7. 최종 방문)

107)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최고인민법원, 저작(인접)권자 추정으로 확대 적용하여 권리 보호 강화 (김찬동 작성), 저작권 동향 속보(2020.8.7.)

방송하거나 또는 기타 무선 송신의 방법으로 기호, 소리, 또는 영상의 공중 전달, ② 원기관 이외의 기관이 유선이나 재방송에 의하여 저작물의 방송을 공중 전달, ③ 기호·소리·이미지를 송신하는 확성기나 기타 유사한 장치를 통하여 저작물의 방송을 공중 전달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조건은 각 당사국에서 정할 수 있고, 조건은 해당국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그 조건은 인격권을 해치지 않아야 하고, 또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권한있는 기관이 정한 공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방송권 등에 대하여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부여된 배타적 권리의 행사 조건은 각 당사국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저작권법 제43조(개정 저작권법 제46조)에서는 미공표 저작물에 대해서는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공표된 저작물에 대하여서는 허락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 공표된 저작물에 대하여 중국 저작권법 제43조(개정 저작권법 제46조)는 베른협약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제15.3조에서는 베른협약 등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지식재산권 분야의 기존 국제협정에서 창설한 자국의 약속한 확인한다(affirm their commitments)고 규정하고 있다. 확인 규정은 FTA에서 기존 조약을 토대로, 그 위에 새로운 내용을 규정하고자 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저작권법 제43조(개정 저작권법 제46조)의 내용이 한·중 FTA를 직접적으로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베른협약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중국측에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진다.

(5) 영화 도촬

한중 FTA 제15.27조 제2항에서 영화 도촬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중국 영화산업촉진법 제31조에서 영화 도촬시 영화관 직원은 이를 제지하고, 도촬 영화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는 있지만, 영화 도촬에 따른 형사 처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중국 형법 제217조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어문, 음악, 영화, 텔레비전 및 비

디오 저작물,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타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복제하고 배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영화 도촬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이 아니라, 영화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복제하고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중국 저작권법 제22조제1호에서 개인이 학습·연구·감상을 위하여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사용한 경우에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상영 중인 영화를 녹음·녹화하는 자가 중국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른 사적 복제를 주장할 경우 중국 형법 제217조에 따른 처벌을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최근 중국의 경우에도 저작권 인식이 높아져 도촬 행위를 통한 불법 영화 유통이 거의 사라졌고, 사드보복, 중국의 영화 상영 쿼터제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극장 상영 영화가 많지 않아 동 규정의 실효성이 적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규정 내용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한중 FTA 이행을 위해서는 중국측에 해당 규정 내용의 이행을 확인할 필요성은 있다.

(6) OSP 책임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행위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자국의 저작권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한 결과 제정 민법전과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OSP 책임 규정을 개선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1단계 미·중 경제무역협정에서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중국은 저작권법의 하위 법령 중 하나인 「정보네트워크 전송권 보호 조례」를 통하여 통지 및 삭제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108] 동 조례상의 통지 및 삭제 절차는 제정 민

108) 제14조 정보저장공간 또는 검색, 링크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해 권리자가 해당 서비스가 제공하는 저작물, 실연, 음반영상물이 자신의 정보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했거나 자신의 전자적 저작권관리정보가 삭제 또는 변경됐다고 판단한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서면통지를 통해 해당 저작물, 실연, 음반영상물의 삭제나 링크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서면통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리자의 성명(명칭), 연락방식, 주소
(2) 삭제 또는 링크해제를 요구하는 작품, 실연, 음반영상물의 명칭과 인터넷 주소
(3)권리침해를 증명할 수 있는 기초자료
권리자는 서면통지서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전의 통지 및 삭제 절차와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제정 민법전 및 개정 저작권법 등에 따라 동 조례의 개정도 예상되는 바, 이를 유심히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

한중 FTA 내국민 대우 규정에 따라 중국 민법전에 따른 OSP 책임 규정을 우리나라의 권리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중국내에서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통지 및 삭제 절차를 통하여 온라인상의 불법 복제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에 진출하는 저작권 업계에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과의 각종 교류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국내 업계를 이를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권리 행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7) 1단계 미·중 경제무역협정 및 외국 통상 보고서에서의 시사점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중국의 지식재산권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그 결과 중국은 2019년 전자상거래법 개정, 2020년 민법전 제정과 저작권법 개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 등 USTR이 발표한 통상 보고서상의 문제점이 대부분 1단계 미·중 경제무역 협정에 반영되어 있고, 협정의 내용을 제정 민법전과 개정 저작권법 등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

제15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권리자가 보낸 통지서를 수령한 후 권리침해가 된 저작물, 실연, 음반영상물을 즉시 삭제하거나 링크를 해제해야 하며, 동시에 해당 저작물, 실연, 음반영상물을 제공한 서비스 대상에게 통지서를 전달해야 한다. 그 대상의 인터넷주소를 알 수 없어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 정보네트워크 상에 통지서의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16조 서비스 이용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전달한 통지서를 접수한 후, 자신이 제공한 저작물, 실연, 음반영상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서면설명서를 제출해 삭제 또는 링크 해제된 저작물, 실연, 음반영상물의 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서면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비스 이용자의 성명(명칭), 연락방식, 주소

(2) 복구를 요구하는 저작물, 실연, 음반영상물의 명칭 및 인터넷주소

(3) 권리침해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초자료

서비스이용자는 서명설명서 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서비스 이용자의 서면설명서를 수령한 후 즉시 삭제 또는 링크 해제된 저작물, 실연, 음반영상물을 복구해야 한다. 동시에 서비스 이용자의 서면설명서를 권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권리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해당 저작물, 실연, 음반영상물의 삭제나 링크해제를 요구하는 통지를 다시 보낼 수 없다.

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미국과 같이 중국을 비롯한 상대 교역국가의 저작권 제도의 미비점, 저작권 침해 행위와 그에 따른 집행 체계의 문제점 등을 조사·분석하여 정보를 축적하고, 관련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통상 채널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권리자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주장할 필요성이 있다.

(8) 음악 분야

국제음반산업협회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IFPI)가 발표한 보고서(Global Music Report the industry in 2019)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에 이어 세계 7위 규모의 음악시장이다. 2017년 한국 음악 시장 규모는 464 백만달러로, 중국 음악 시장 규모 292백만달러의 약 1.6배 규모였으며, 2020년의 경우 이 격차는 더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중국의 세계 음악 시장에서의 순위와 규모 비교〉109)

(시장가치 단위 : 백만달러)

구분	한국		중국	
	순위	규모	순위	규모
2010	21	116.9	38	23.2
2011	11	199.5	NA	NA
2012	11	187.5	20	9.24
2013	10	211.3	NA	NA
2014	8	265.8	19	105.2
2015	8	281.3	14	169.7
2016	8	330.1	12	202.2
2017	6	464.4	10	292.3
2018	6	NA	7	NA
2019	6	NA	7	NA

109) 2010년~2014년은 연도별 IFPI annual report, 2015년 이후는 연도별 IFPI Grobal music report를 각각 참고하여 재작성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음악 시장 규모와 2018년 기준 MCSC의 징수금액(482억원)은 KOMCA의 징수금액(2,034억원) 대비 약 25%에 불과한 수치 등으로 미루어 보아 중국에서의 음악 저작권료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음악 저작권료 징수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징수 시스템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중국의 저작권료 징수 시스템이 현대화될 수 있도록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 저작권 계약과 관련하여 중국 제작사 등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권리를 전부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에게 표준계약서 제정 등의 제도적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항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권리자들은 저작권 수출 계약시 애로 사항을 관련 협회 등을 통하여 꾸준히 문제 제기하여 다양한 유형의 사례를 축적할 필요성이 있다.

나. 베트남

(1) 실연자의 복제권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에서는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을 실연하는 배우·가수·연주자·무용수 등을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실연자로 규정(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16조제1항)하고 있으며, 실연에 시간과 재정·물적·기술적 자원을 투자한 단체 및 개인은 관련 당사자 사이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실연의 권리자라고 규정(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44조제1항)하고 있다. 실연의 권리자에는 실연자와 투자자가 있으며, 실연자와 투자자가 동일할 경우 인격권과 재산권을 가지지만,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 실연자는 재산권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29조제1항)하고 있다. 한베 FTA에서는 실연자에게 모든 형태의 복제 행위에 대한 배타적인 재산권 부여하지만, 실연한 자와 실연에 투자한 자가 다를 경우 실연자에게 복제 행위에 대한 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즉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은 한베 FTA 제12.8조제1항의 복제권을 부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베 FTA 제12.2조제2항 내국민 대우 규정에 따라 외국인인 실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또한,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에서는 음반과 비디오 녹화물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고 있어서, 두 용어의 정의에 따라 복제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음반이나 비디오 녹화물이 CD나 카세트테이프 등 유형적인 매체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복제의 매체에 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베 FTA와 일치하지 않게 될 수 있다.

추후 통상 협상 채널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실연자의 권리가 베트남에서도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찰할 필요가 있다.

(2) 음반의 2차적 이용에 대한 보상청구

한베 FTA에서는 음반의 2차적 이용에 대하여 방송에 한하여 보상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베트남 저작권법에서도 이를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음반의 2차적 이용에 대한 보상청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면담[110]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베트남 음악실연예술가권리보호협회가 2016년 2월에 설립되었고,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는 2016년 말에 MOU를 체결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베트남에서의 방송 보상 징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음반산업협회의 면담[111]에서도 베트남의 신탁단체의 소극적인 태도, 방송국이 음반제작사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음반이 방송에 이용되는 것은 음반의 홍보 용도로 활용되기 때문에 방송 보상 요구가 사실상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베트남에서도 방송 보상 징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 보상청구는 지정한 단체를 통해서만 행사가 가능하나, 베트남의 경우 지정한 단체를 통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으로 확인되고 있다. 베트남에서 방송 보상청구 시스템을 정확히 확인한 후 우리나라 권리자는 방송사업자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도 있고, 현지의 협회나 에이전시 등을 통해서 방송 사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RCEP

RCEP 협정문이 2020년 11월 현재 공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위에서 살펴본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에 따라 베트남의 경우에도 WCT·WPPT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저작권·저작인접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5조제3항에서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한 조약이 이 법의 규정과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 그 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아직 WCT·WPPT에 가입하고 있지 않지만, RCEP이 발효되면 WCT·WPPT 수준으로 보호를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된다. 향후 RCEP 협정문이 공개되면 내용을

110) 2020년 9월 21일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하여 진행하였으며,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황은호 기획국장과 이주영 대리가 참석하였다.

111) 2020년 10월 20일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하여 진행하였으며, 한국음반산업협회 김관기 사무총장과 이정아 대리가 참석하였다.

면밀히 분석하고, 국제조약과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등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권리자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4) 외국 통상 보고서에서의 시사점

USTR 및 유럽 집행위원회의 통상 보고서에서 베트남은 온라인에서의 광범위한 저작권 침해 문제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집행력 부족 문제를 주요한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RCEP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베트남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집행 체계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5) 음악 분야

KOMCA의 베트남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는 2016년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고 한다. 그러나 PwC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음악 산업 규모 및 전망에 따르면, 베트남의 음악산업 규모는 2017년 45백만달러, 2018년 46백만달러, 2019년 47백만달러, 2020년 49백만달러, 2021년 50백만달러, 2022년 53백만달러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3.5%로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 음악산업 규모 및 전망(2013~2022)>[112]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CAGR
30	베트남	41	42	42	43	45	46	47	49	50	53	3.5%

출처 : PwC

이러한 성장률 전망에 비추어 KOMCA에서 징수하는 금액이 매년 감소한다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이는 베트남의 저작권 징수 체계의 문제로 인하여 징수금의 누수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베 FTA에서는 집중관리단체의 설립을 장려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112)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한국음악산업백서, 2019, 151쪽.

는 규정(한베 FTA 제12.8조 제3항 및 제4항)[113]이 도입되어 있다. 베트남 집중관리단체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

다. 태국

(1) RCEP

태국은 WCT·WPPT에 가입하고 있지 않지만, RCEP이 발효되면 WCT·WPPT 수준으로 보호를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된다. 향후 RCEP 협정문이 공개되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제조약과 태국 저작권법 등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권리자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태국 저작권법 관련 대응 방안

태국 저작권법 개정안은 2020년 9월 29일에 내각의 승인을 받아 11월에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법안이 발효되기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114] 동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하게 되면 태국내 우리나라 저작물의 불법 유통 차단을 통하여 우리나라 권리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 개정안의 진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

113) 권리의 집중관리

3. 양 당사국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집중관리 단체들에 위임된 권리의 효과적인 관리와,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사용에 비례하여 징수된 보상의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하여, 투명성과 우수한 관리 관행의 문맥에서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집중관리단체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4.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저작물 또는 그 밖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물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상호 송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당사국 간에 콘텐츠의 더욱 용이한 접근 및 전달을 상호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의 징수단체 간의 약정 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각 당사국은 그들 각각의 징수단체의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114)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1995239/copyright-act-draft-adds-picture-device-protections〉 (2020. 11. 10. 최종 방문)

(3) 외국 통상 보고서에서의 시사점

2020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태국은 WIPO 인터넷 조약인 WCT·WPPT 가입을 대비하여 저작권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RCEP이 발효되면 태국은 WCT·WPPT 가입을 서둘러서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태국의 WCT·WPPT 가입과 태국 저작권법 개정안의 내용 분석은 우리나라 권리자 보호를 위하여 더욱 중요해 질 수 밖에 없다. 2020 NTE 보고서, 2019 Notorious Market 보고서 및 2019 유럽집행위원회 IP 집행 및 보호 보고서에서 태국 상황에 대해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RCEP을 이행해야 할 태국이 집행 관련 RCEP 내용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음악 분야

2015년 이후 KOMCA가 태국의 MCT로부터 징수한 금액과 같은 기간 KOMCA가 VCPMC로부터 징수한 금액 비중의 경우 태국이 베트남보다 약 1.6배 정도 많이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wC에서 발표한 태국과 베트남의 음악 산업 규모를 살펴보면, 태국의 음악 산업 규모는 베트남에 비해 약 5배~6배 정도가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태국 및 베트남 음악 산업 규모 및 전망(2013~2022)>[115]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CAGR
21	태국	241	232	209	200	204	216	231	252	274	300	8.1%
30	베트남	41	42	42	43	45	46	47	49	50	53	3.5%

출처 : PwC

따라서 태국에서의 징수 금액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15) 한국콘텐츠진흥원, 위의 백서(각주 114), 151쪽.

현지 무대공연 프로모터가 공연시 음악을 허락없이 이용하고, 허락이 있더라도 특별한 이유없이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등 음악 산업의 규모에 비하여 현지 프로모터의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을 개선할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음악 산업 규모 측면에서도 태국은 우리나라 한류의 주요 진출국인 만큼 기체결된 RCEP뿐만 아니라 양자간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5. 결론

외국의 통상 보고서에서 중국·베트남·태국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고,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 점은 우리나라 권리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 통상 보고서의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저작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소개하였고, 중국, 태국, 베트남에서의 콘텐츠 서비스 장벽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생략하였다. 영화 상영 쿼터제와 같은 우리나라 교역 상대국에서의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장벽이 있을 경우, 우리나라 콘텐츠가 해당 국가에 진출하는 시기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늦어지거나 동시에 출시되지 않게 될 것이다. 합법적인 시장에서 콘텐츠를 구입하거나 향유할 수 없게 되는 해당 국가의 콘텐츠 이용자는 콘텐츠를 조금 더 빨리 구입하거나 향유하기 위하여 불법 시장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USTR에서 발표한 「2020 Special 301 Report」에서도 중국은 국영기업(SOEs)이 영화나 TV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상의 소유 지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나 외국인의 투자 상품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창작물의 온라인 출판, 방송, 배포와 관련하여 외국 기업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개혁하지 못하였고, 증가하는 사전 승인 요구 사항 및 기타 장벽으로 인해 외국 TV 콘텐츠의 활용성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중국 및 기타 시장에서 외국 콘텐츠의 동시 출시가 차단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더 많은 불법 복제를 초래한다고 밝히고 있다.[116] 자국의 콘텐츠와 외국의 콘텐츠를 달리 취급하는 콘텐츠 서비스 시장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는 해당 콘텐츠가 수출되지 못함으로 인한 권리자의 직접적인 불이익 뿐만 아니라, 서비스 시장의 진입 장벽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따른 권리자의 간접적인 불이익까지 발생하게 된다. 어찌 보면 직접적인 불이익보다 간접적인 불이익이 더 심각할 수 도 있을 것이다. 해당 콘텐츠를 수출하는 시기가 늦어져 권리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시점이 늦어질 뿐이라면, 저작권 침해

116) USTR, *supra note at 19*, p.44.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국가에 대한 시장 자체가 없어져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권리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역 상대국의 콘텐츠 서비스 시장에 대한 장벽을 없애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한류 국가를 상대로 콘텐츠 서비스 시장 장벽에 따른 문제점과 그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조사·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체결한 FTA 이행 여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다. 방송사업자의 배타적인 권리 부여, 영화 도촬에 따른 형사 처벌 등과 같이 한중 FTA를 중국 저작권법에서 충분히 이행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정부 채널 뿐만 아니라 민간 채널을 통해서라도 중국이 한중 FTA를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1단계 미·중 경제무역협정에 따라 중국이 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대한 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 한베 FTA에 따라 실연자의 복제권이 부분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와 우리나라의 권리자가 음반의 2차적 이용에 대한 방송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고 있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1차적으로 베트남내의 보상 시스템이 완전하게 구비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일 수 도 있지만, 우리나라 권리자 단체를 포함한 권리자가 해당 국가의 법체계를 정확히 알고 그에 따른 권리행사가 미흡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태국의 경우 RCEP이 발효되면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면밀히 조사·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WCT·WPPT 가입을 위하여 태국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태국 저작권법 개정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권리자가 어떠한 권리 행사가 가능한 지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태국 저작권법 개정 상황을 면밀히 관찰할 것을 제안한다.

음악 권리자 단체의 면담을 통하여 국내 중심의 권리 행사뿐만 아니라 외국에서의 권리 행사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내에서의 저작권 시장은 포화상태이지만, 외국의 저작권 시장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보여진다. 음악 저작권의 경우 외국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외국 시장에서의 권리를 담당할 인력 확충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번 연구는 중국·베트남·태국을 대상으로 2019년도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진행하였다. 중국의 경우 1단계 미·중 경제무역협정 체결, 민법전 제정, 저작권법 개정 등 법체계 변화가 많이 있었다. 이러한 체계 변화가 정착되고, 우리나라 권리자가 중국에서의 권리 행사를 체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베트남과 태국의 경우에도 저작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각 국에서 시행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통상 현안 분석을 최소 2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차년도에는 중국·베트남·태국이 아닌 한류 국가를 상대로 통상 현안 분석 연구 진행을 제안한다. 한류 지수가 높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인도 등의 국가를 예로 들 수 있다.

중국·베트남·태국과의 FTA와 각국의 법제를 음악 권리자 중심으로 살펴본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음악 권리자가 해당 국가에서의 권리 행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문헌

전종근·김승년, 2019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2020),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임상혁 외 5인, 2019 저작권 수출에 따른 통상현안 및 해결 방안 연구(2019), 한국저작권위원회

김찬동, 저작권법상 '음반', '판매용 음반'의 의미와 해석, 그 적용, 『계간 저작권』, 제102호(2013)

황선영, 중국 저작권법상 실연자 권리 보호 규정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제130호(2020)

WIPO, Guide to the Rome Convention and to the Phonograms Convention(1981)

罗娇·冯晓青, 《著作权法第三次修改中的相关权评析》, 法学杂志 2014年第10期期, 北京市法学会

USTR, 2020 Special 301 Report

_____, 2020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_____, 2019 Review of Notorious Markets for Counterfeiting and Piracy,

European Commission, Report on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ird countries[SWD(2019) 452 final/2]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The U.S.-China "Phase One" Deal: A Backgrounder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FTA 저작권 내용 해설서」(2019)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년 하반기 및 연간 콘텐츠 산업 동향분석 보고서, 2020

_____, 2019 해외 콘텐츠시장 분석, 2020

_____, 2018 한국음악산업백서, 2019

연도별 IFPI annual report, IFPI Grobal music report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0년 상반기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2020.9.18.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신남방 국가에서 게임·시청각·관광 시장 개방 확대 및 저작권 규범 정립으로 한류의 안정적 진출 기반 마련 – 15개국,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최종 서명 –), 2020. 11. 13.

• 인터넷 자료

http://www.inews24.com/view/1298268

https://news.joins.com/article/23875307

http://en.ncac.gov.cn/copyright/contents/10365/329083.shtml

http://pkulaw.cn/fulltext_form.aspx?Gid=1090533722&Db=protocol

https://www.copyright.or.kr/kcc/koreacopyright/info/list.do

https://www.chinaxwcb.com/info/563874

https://www.reedsmith.com/en/perspectives/2020/06/the-adoption-of-the-chinese-civil-code-and-its-implications-on-contracts

https://www.copyright.or.kr/kcc/koreacopyright/info/list.do

http://pkulaw.cn/fulltext_form.aspx?Gid=1090533722&Db=protocol

https://www.uscc.gov/sites/default/files/2020-02/U.S.-China%20Trade%20Deal%20Issue%20Brief.pdf

http://en.ncac.gov.cn/copyright/contents/10365/329083.shtml

https://thelegal.co.th/2020/10/06/thailand-revision-of-the-copyright-law/

https://baijiahao.baidu.com/s?id=1669096639383542622&wfr=spider&for=pc

http://www.court.gov.cn/zixun-xiangqing-246041.html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1995239/copyright-act-draft-adds-picture-device-protections

http://www.mcsc.com.cn/about/annual_report.html

해당 내용은 본 연구를 위해 자체적으로 진행한 번역의 결과물로 전문적인 번역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2020 스페셜 301조 보고서

개요

행정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국가가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에 대한 시장 개방을 장려하고, 지식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 및 집행을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의 무역 정책 주요 목표는 미국의 지식재산권자가 전 세계 지식재산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완전하고 공정한 기회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전 세계 미국 무역 파트너들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상태에 대한 연간 검토 결과이며,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이하 'USTR')는 1974년 개정된 무역법 제182조에 따라 수행한다. 의회는 1988년에 "지식재산권 보호에 의존하는 미국인들에게 지식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와 공정하고 공평한 시장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전반적인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무역법을 개정하였다. 특히 의회는 "미국 지식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가 없고, 공평한 시장 접근이 거부된다면, 지식재산권 보호에 의존하는 미국인의 해외 수출 및 운영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하여 미국의 경제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발명자, 창작자, 브랜드, 제조업체,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을 제공하지 않는 법률, 정책 및 관행이 있는 외국 국가들을 공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보고서에서 지식재산 관련 시장 접근 장애물을 확인하고, 이러한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를 파악하는 것은, 유해한 지식재산 관련 무역 장애물로부터 미국인을 방어하기 위한 당국의 진보적인 노력의 부분이다.

특히, 지금 행정부는 여러 해 동안 우선감시대상국 목록(Priority Watch List)에 있었던 국가들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앞으로 몇 주 간 USTR은 해당 국가의 스페셜 301 행동 계획에 설정된 기준점과 비교하여 개발 상황을 검토할 것이다. 미국의 우려를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의 경우, USTR은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또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에 따라 또는 기타 무역 협정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집행조치를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보고서는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이 악화되거나 부적합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지식재산 보호에 의존하는 미국인들이 공정한 시장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 무역 파트너를 구별한다.

스페셜 301조 절차

의회에서 규정한 연간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절차이다. 보고서를 의무화하는 법령에 따라 미국 무역 대표부는 가장 부담스럽거나 악랄한 행위, 정책 또는 관행이 관련 미국 제품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는 국가(실제 또는 잠재적으로)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야 한다. 법령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USTR은 이 보고서 내에 우선감시대상국 목록과 감시대상국 목록을 만들었다. 우선감시대상국 목록 또는 감시대상국 목록에 무역 파트너가 있다면 이는 미국의 지식재산 보호, 집행, 또는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에 특정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 개정된 스페셜 301조 법령의 조항은 미국무역대표부에게 1년 이상 우선감시대상국으로 구별된 각 국가들에 대한 행동 계획을 발표하도록 지시한다.

공공 합의

USTR은 2020 스페셜 301조 검토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무역 파트너의 지식재산 보호와 집행 및 지식재산 집약적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시장접근문제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 잡힌 평가를 촉진하고, 스페셜 301조 검토가 무역 파트너 시장의 지식재산 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의 기반이 되도록 보장했다.

USTR은 2019년 12월 23일에 연방등록부에 게시된 공지를 통해 공중에게 의견 서

면 제출을 요청했다. 또한, 2020년 2월 22일 USTR은 관계 부처 간 통상정책참모위원회(TPSC) 특별 301조 소위원회(특위)에 앞서 이해관계자들이 스페셜 301조 검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발언할 기회를 제공하는 공청회를 실시했다. 공청회에는 외국 정부, 산업계 및 비정부기구의 대표를 포함한 증인들의 발언이 있었다. USTR은 스페셜 301조 공청회에서 한 증언을 공개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며, 공청회 증인이 증언을 뒷받침하거나, 이에 대한 응답으로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의견수렴기간을 제공했다. 연방 관보의 통지 및 후기 의견 제출 기회는 51개의 비정부 이해관계자와 21개의 외국 정부로부터의 의견 제출을 이끌어냈다. 해당 의견은 www.regulations.gov 에서 USTR-2019-0012으로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www.ustr.gov에서 청문회 녹취록과 동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

감시대상국 목록 작성

이 보고서에 발표된 스페셜 301조 목록 및 조치는 미국 정부 내의 모든 관련 기관들의 집중적인 심의 결과이며, 참여한 이해관계자, 외국 정부, 미국 의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광범위한 협의이다.

USTR은 스페셜 301조의 소위원회와 함께 법적 기준에 따라 지식재산 거래가 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시장 접근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 무역 파트너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에 대한 광범위하고 균형 잡힌 평가를 수행한다. 스페셜 301조 소위원회는 TPSC를 통해 이 평가를 기반으로 USTR에 감시대상국 목록 작성하는 것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이 평가는 무역 파트너들의 개발 수준, 국제적 의무 및 약속,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우려, 미국의 무역과 투자 정책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케이스별로 수행된다. 이것은 섹션I에서 다양한 문제와 동향으로 결정된다. 각 평가는 특정 무역 파트너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을 구성하는 사실과 정황을 기반으로 한다. 앞으로도, USTR은 이 보고서에서 논의된 문제에 대해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다. 이러한 협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USTR은 다음을 수행한다. :

- 미국 이해 당사자, 미국 의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교류하여 관련 문제에 대한 모든 범위의 견해를 통해 미국 정부의 입장 알리기.
- 개별 지식재산 파트너십과 관련하여 개별 무역 파트너와 광범위한 토론을 수행.
- 지식재산 파트너십에 대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무역 파트너가 완전히 투명하게 참여하도록 장려.
- 우선감시대상국 목록에 최소 1년 이상 오른 국가들이 지식재산 문제에 대한 진전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별 벤치마크로 실행 계획을 수립.
- 가능하다면 미국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USTR은 미국의 정책목표를 발전시키고 미국의 무역 파트너와 의미 있는 정책 대화의 중요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논의를 수행할 것이다. 또한, USTR은 미국 무역 정책 목표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미국 정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2020 스페셜 301조 목록

스페셜 301조 소위원회는 100개 이상의 무역 파트너들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연방관보에 게시된 요청에 응답한 제출물에 대한 검토에 중점을 두어 특정 무역 파트너를 우선감시대상국 목록 또는 감시대상국 목록에 있거나 아직 보고서에 나열되지 않은 국가지만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명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USTR은 광범위한 연구 및 분석 결과로 다음과 같이 33개의 무역 파트너들을 구별했다.

우선감시대상국 목록	감시대상국 목록
■ 알제리 ■ 아르헨티나 ■ 칠레 ■ 중국 ■ 인도 ■ 인도네시아 ■ 러시아 ■ 사우디 아라비아 ■ 우크라이나 ■ 베네수엘라	■ 바베이도스 ■ 볼리비아 ■ 브라질 ■ 캐나다 ■ 콜롬비아 ■ 도미니카 공화국 ■ 에콰도르 ■ 이집트 ■ 과테말라 ■ 쿠웨이트 ■ 레바논 ■ 멕시코 ■ 파키스탄 ■ 파라과이 ■ 페루 ■ 루마니아 ■ 태국 ■ 트리니다드 토바고 ■ 터키 ■ 투르크메니스탄 ■ 아랍에미레이트 ■ 우즈베키스탄 ■ 베트남

불법 복제에 대한 악명 높은 시장 검토(악명 높은 시장 목록)

2010년 USTR은 연간 스페셜 301조 보고서와 별도로 매년 악명 높은 시장 목록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악명 높은 시장 목록은 관보에 발표된 통지에 대한 응답으로

USTR에 제출된 정보에 따르면 상당한 저작권 침해와 상표권 위조에 관여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외면하거나, 이익을 얻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USTR은 2019년 8월 19일에 이러한 의견을 요청하고 2019 악명 높은 시장 목록을 발표했다. USTR은 2020년 가을, 악명 높은 불법 복제 시장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계획이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구조

2020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섹션과 부록이 포함되어 있다. :

섹션I : 지식재산권 보호, 집행 및 관련 시장 접근의 개발은 미국 정부가 매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보호 및 집행, 관련 시장 접근의 세계적 동향과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섹션II : 국가 보고서에는 특정 무역 파트너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부록1 : 스페셜 301조 법적 근거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법적 근거를 설명한다.

부록2 : 미국 정부 후원의 기술지원 및 역량 강화는 미국 정부가 후원하는 기술지원 및 역량 구축 노력을 강조한다.

2020년 4월

국가 보고서

〈중국〉 중국은 2020년에 우선감시대상국 목록을 유지하며 306조의 모니터링을 계속 받는다.

지속적인 과제와 우려

중국은 기술이전을 강요하거나 압박하지 말고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를 취하고, 최근 지식재산 조치에 대한 개정을 시행하고, 해외투자에 대한 시장을 개방하여야 하며, 자원을 배분하는데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이미 매우 어려운 비즈니스 환경에서 지식재산 보호에 의존하는 미국인들에게는, 기술이전에 대한 비공식적 압박과 강요, 지식재산 보호 범위의 격차, 불완전한 법적 개혁 및 취약한 집행수단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지속된다.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USTR은 기술이전, 지식재산 및 혁신과 관련된 불공정하고 유해한 중국의 행위, 정책 및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USTR은 또한 WTO에서 차별적 라이선싱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 해결절차를 시작했다. 작년 한 해 동안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2020년 1월 1단계 미·중 경제무역협정의 서명으로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다.

1단계에는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에 대한 별도의 챕터가 포함되어 있다. 이 챕터는 혁신, 창의적 표현 및 브랜드의 보호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는 다양한 미국산업의 오랜 우려를 다루고 있다. 이 협정은 중국이 비공식 압력과 강제적으로 기술이전을 달성하는 것을 끝내고 영업비밀, 특허, 제약 관련 지식재산, 상표, 지리적 표시 등이 포함된 법률 및 규제 제도 등 다양한 분야를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 협정은 중국이 사법절차에 많은 변화를 가해 단념시키는 수준의 형벌을 설정하고, 효과적인 판결 집행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중국은 불법 복제품 및 모조품에 대한 민사, 행정 및 형사 집행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국은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제거하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중국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것이다.

진행을 포함한 개발 및 취한 조치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USTR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기술이전, 지식재산 및 혁신과 관련된 불공정하고 유해한 행위, 정책 및 관행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는 투자 또는 기술이전을 요구하거나 압박을 가하는 다른 규제 사항, 기술 라이선스 조건에 대한 상당한 제한사항, 국내 기업이 최첨단 기술을 얻기 위해 외국 기업 및 자산을 인수하는 지시 또는 촉진하는 것, 그리고 지식재산에 대한 무단 접근을 얻기 위해 미국회사 컴퓨터의 네트워크로 무단 침입이나 도난을 수행 및 지원하는 것이 포함된다.

2018년 3월, USTR은 WTO에서 중국의 차별적 라이선스 관행을 다루기 위해 분쟁해결절차를 시작했으며, 이는 과거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반복적으로 강조된 문제다. 2018년 8월에 조사가 시작되어 2018년 11월에 이 사건을 위한 패널이 꾸려졌다. 2019년 3월 중국은 미국이 제기한 조치를 개정하였으며, 개정 의의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1단계 협정의 일환으로 중국은 미국인이 기술을 중국인에게 이전하도록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것 없이, 중국 시장에 효과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했다. 중국은 또한 미국인이 중국인에게 기술을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은 자발적이고 상호합의를 반영하는 시장조건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왜곡을 일으키는 산업계획의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산업 관련 외국 기술 인수를 목표로 하는 사람의 직접 해외투자 활동을 지원하거나, 지시하지 않을 것에 동의했다. USTR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약속이 국가, 지방 그리고 도시 차원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행동에 변화를 가져왔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중국은 특정 지식재산 관련 법적 규제에 대해 개정을 하려 했지만, 개정을 향한 단계는 효과적인 이행이 필요하며, 중국의 지식재산 환경에 필요한 모든 근본적인 변화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중국은 상표법(2019년 11월 1일 발효), 부당경쟁 금지법(AUCL) 및 행정 면허법(2019년 4월 23일 발효)을 개정하고, 상표법 시행 규정(2019년 12월 1일 발효)을 제정했다. 아래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개정의 효과는 불분명하며 권리자는 오랜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고한다.

또한, 중국은 2019년 3월 15일에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을 통과시켰다. 외국인 투자법 조항은 중국인이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위급의 성명서는 그러한 보호가 중국에서 현지 사업을 등록한 외국 권리보유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2018년 지식재산의 보호 및 집행을 담당하는 부처 및 기관의 개편 이후, 중국 지식재산권 관리국(CNIPA)은 특허, 상표, 영업 비밀의 행정 집행, 독점 금지법의 시행, 의약품 규제 및 승인 표준 설정 등에 대한 책임을 중앙집중화하는 시장규제국(SAMR)에 따라 운영되었다. 그러나 지식재산의 관리 및 집행을 재정비하고 중앙 집중화하려는 이러한 노력이 특허 및 상표 등록의 무결성을 훼손하는 행위인 부실 특허와 상표를 등록하려는 많은 시도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 사법 당국은 가처분이나 판결 보다는 일부 결정만을 게재하는 등 투명성이 결여되었음을 계속 보여준다. 미국의 권리자들은, 베이징 지식재산 법원을 항소하는 결정의 절차상 장애물을 때때로 극복할 수 없으며 항소를 모두 기각시킬 수 있다고 보고한다. 행정 집행 당국은 권리자에게 집행의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더 광범위한 우려에는 행정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뿐만 아니라 지방기관의 공무원, 당의원 및 법원의 독립과 법치의 독립을 훼손하는 강력한 지역 이익집단의 개입이 포함된다. 중국에서 법의 지배를 장려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하다.

권리자들은 사법부의 독립성이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법정 최저 수준에 따라 불충분한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결과 등 많은 문제를 계속 보고하고 있다. 형사 집행을 위한 부담스러운 기준, 무리한 인증 및 기타 증거 요건, 요구되는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는 수단 부족, 사전적 강제구제 미비, 억지스러운 수준의 법적 손해와 형사 처분의 미비 등은 모두 지식재산 침해 해결을 위한 중국 법원 시스템의 실효성을 저해한다.

1단계 협정은 중국이 사전 설정 최소·최대 범위 확대, 징역형, 벌금형 등 지식재산 도용에 대한 민사소송과 형사 처분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합의는 또한, 중국은 범죄위반의 합리적 의심이 있을 때 행정기관에서 형사 당국으로 사건을 이관하도록 하고, 신

속한 판결을 보장하며, 저작권에 대한 법적 추정을 제공하고, 저작권 침해의 불필요한 특정 요건을 포기하도록 규정한다. 게다가, 이번 합의로 중국은 외국의 소송 당사자가 중국 법정에서 사용할 증거 인증 절차를 없애거나 합리적으로 바꾸고, 민사소송에서 증인을 제시하고 상대방 증인을 교차 심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영업 비밀

2019년 4월 중국 반부정당경쟁법(AUCL) 및 행정허가법(Administrative Licensing Law) 개정안은 중국 영업 비밀제도에 대한 변경사항으로 포괄적 조치 및 행위자의 범위, 적절한 상황에서의 증명책임 변경, 전문가 검토에 참여하는 정부인사 및 전문가에 의한 영업비밀 무단공개에 대한 보호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보호범위의 격차가 지속되고, 실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마찬가지로,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지식재산분쟁의 '조항 보존'에 관한 사법해석서 발급으로 권리자가 적시에 가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중국은 이러한 결함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영업 비밀에 대한 사법결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법해석이나 법원결정을 지도해야한다. 또한 개혁은 정부 규제기관, 법원 및 기타 당국에 제출된 영업 비밀 기타 기밀정보의 무단공개를 방지하고 범죄 집행에 대한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해 절차적 보호수단을 제공해야한다.

1단계 협정은 중국 내 영업 비밀에 대한 보호와 단속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상품 및 서비스의 제조나 판매에 직접 관여하는 기업의 부정에 대한 민사책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침입 등의 행위를 영업비밀도난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영업비밀도난의 합리적 의심이 있을 때 증명책임의 부담을 피고인에게 전가하도록 하고, 도난당한 영업비밀의 사용을 막기 위해 가처분이 용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실제 손해를 보지 않고도 범죄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고의적인 영업비밀도난에 대한 형사 집행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며, 정부인사나 전문가 또는 자문위원이 정부에 제출된 영업비밀 또는 기밀 기업정보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지 감시할 것이다.

전자상거래 불법복제, 위조 및 기타 문제

중국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시장이 되면서, 광범위한 온라인 불법 복제 행위와 위조가 미국 권리자들에게 중대한 우려가 되고 있다. 위조범들은 작은 소포와 최소한의 창고 재고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집행을 회피하고, 이를 위해 미국으로 많은 양의 소포를 이용하는데 능숙해졌다. 게다가 일부 선도적인 온라인 판매 플랫폼은 지식재산범죄 및 민사집행 개선을 위해 침해 조항의 절차 간소화를 제공하고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강화했다고 보도되었지만, 권리자들은 계속해서 비효율적인 삭제절차, 중소기업에 대한 대응 둔화, 반복적인 침해자를 막기 위한 불충분한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다른 권리자들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전자상거래 기능에서 모조품이 판매되고 있는 추세를 보고하고 있다. 권리자들은 또한 허가 받지 않은 수천 개의 주문형 비디오(VOD) 형태 시청각 콘텐츠와 과학, 기술, 의학, 저널기사 및 학술서적의 사본을 무단 유포하는 온라인 플랫폼 형태의 불법복제 행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중국은 저작권 침해를 촉진하는 시스템의 선도적인 공급자이자 수출국으로서, 그러한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허가 받지 않은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장치(ISD), 불법복제 앱을 포함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웹사이트에 지속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우려가 확산되면서 DHgate.com, Alibaba Taobao와 Pinduoduo.com이 2019년 악명 높은 시장 목록에 재등장했다.

2019년 전자상거래법 시행은 자신의 지식재산을 강제하려는 권리자에 대한 부담요건, 선의로 제출된 오류 내용에 대한 엄격한 책임,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한 이의제기 신청서 등에 대한 주요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챕터 초안에는 전자상거래법의 문제점과 유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불법행위 책임 챕터의 최종본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이해관계자 간의 효과적인 협력을 촉진하는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중국은 2019년에도 외국인 투자 카탈로그 금지, 국영기업(SOE)이 영화와 TV 콘텐츠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요건 등 창조콘텐츠의 온라인 출판, 방송, 유통 자격을 제한하는 개혁조치에도 실패하였다. 권리자들은 사전 승인 요건과 기타 장벽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 TV 콘텐츠의 가용성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중국 및 기타 시장에서 외국 콘

텐츠의 동시 출시를 방해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종합하면, 이러한 조치들은 더 큰 불법 복제를 초래하고 다른 것들보다 외국 콘텐츠와 외국 기업 참여에 덜 개방적인 시장을 야기하는 조건을 만들어낸다. 또한, 중국이 영화와 관련해 2012년 미·중 양해각서(MOU)의 조건을 충분히 이행하고 미국 콘텐츠에 대한 의미 있는 추가 보상 협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1단계 협정은 중국이 신속한 단속을 요구하고 통지와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온라인 환경에서 침해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또 중국이 침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지 감시할 것이다.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법 개정안 초안은 계류 중이다. 중국이 저작권 틀에서 주요 결함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테면 낮은 민사상 손해배상액 제지, 비효율적인 형사 집행, 스포츠 등 생방송의 무단송출에 대한 보호조치 결여 등이다.

기타 우려

이해관계자들은 중국의 규정과 절차로 인해 지리적 표시(GIs)가 미국 수출에 시장접근장벽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반대, 취소, 무효화 및 기타 절차를 통해 당사자들이 지리적 표시(GIs)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다. 2019년 11월 중국과 EU는 다수의 지리적 표시(GIs)를 보호하기 위한 양자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그 후 중국지식산권국(CNIPA)은 계류 중인 협정의 지리적 표시(GIs)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모든 반대의견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중국이 일반 용어에 대한 안전장치, 사전 상표권 존중, 반대와 취소를 허용하는 명확한 절차, 상표권이나 일반 용어의 사용에 의존하는 미국의 대중 수출에 대한 공정한 시장접근을 포함한 지리적 표시(GIs)의 보호와 관련하여 완전한 투명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1단계 협정은 중국이 국제 협약과 관련하여 취한 어떠한 GI 조치도, 상표와 일반 용어를 사용하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시장접근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중국은 사전, 신문, 웹사이트에서 용어의 사용을 포함한 일반성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관련 요인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용어에 의해 언급된 상품이 어떻게 시장에서 판매되고 무역에서 사용되는지, 관련 기준에서 사용되는지 여부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개별 구성요소가 일반적일 경우 다중 구성요소 용어의 개별 구성요소에 대한 GI 보호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다중 구성요소 용어에 GI 보호를 허용할 때 어떤 개별 구성요소가 보호되지 않는지를 공개적으로 구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지 감시할 것이다.

권리자들은 중국의 식물 보호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는데, 여기에는 새로움의 정의, 보호의 면제, 제한된 수의 분류군을 제외한 보호의 격차 등이 포함된다. 특정 식물 기반 개발은 특허법과 중국의 식물품종 보호 제도에 따라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은 국영기업(SOE)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모든 계층에서 합법적이고 허가된 소프트웨어만 사용하도록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권리자들은 중국 정부 및 국영기업(SOE) 소프트웨어 합법화 프로그램이 여전히 전체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감사 이용을 촉구한다. 1단계 협정은 중국이 제3자 감사를 통해 정부 기관과 국영기업(SOE)이 허가받은 소프트웨어만 사용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지 감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는 중국 상표청 심사원과 관련된 우려, 특히 불신임, 혼동 가능성 및 기타 문제를 평가할 때 여러 등급에 걸쳐 신청서와 점수를 고려할 수 있는 심사자의 능력에 대한 불필요한 제약사항을 계속 파악한다. 이해관계자들은 등록 과정에서 공존의 계약서와 동의서를 상표 당국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계속 보도하고 있다. 추가 우려 사항으로는 이의제기 및 취소에 대한 번거로운 문서의 요구사항, 이의제기 절차의 투명성 부족, 출두하지 않는 신청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판결 부재, 그리고 잘 알려진 상표의 지위를 얻는데 합법적인 권리자의 어려움 등이 있다. 게다가, 상표 이의제기 절차의 변경으로 반대자에 대한 이의제기가 제거되어 취소 절차에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악의적인 상표등록자가 상표를 사용하거나 합법적인 브랜드 소유자로부

터 갈취할 수 있는 창이 더 넓어지게 되었다.

〈베트남〉 베트남은 2020년 감시대상국 목록에 남아있다.

지난 1년간 국가지식재산전략의 공표, 지속적인 국민 인식 캠페인 및 훈련 활동, 일부 지역의 국경집행 개선보고 등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지만, 지식재산 집행은 여전히 문제와 심각한 불법 복제품 및 위조 상품 판매문제로 남아있다. 시행을 담당하는 부처 간의 조정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집행과 관련된 역량 부족은 부분적으로 자원과 지식재산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 지속되고 있다. 베트남은 널리 퍼진 위조 상품 제조와 불법복제 행위를 저지하는 데 실패한 행정집행조치에 여전히 크게 의존하고 있다. 베트남의 지식재산 위반에 대한 형사 집행과 관련하여 2015년 형법 개정안이 현재 진행 중인 것에 대해, 미국은 면밀하게 감시하고 관여하고 있다. 모조품들은 실제 시장에서 널리 팔리고 있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영상 콘텐츠에 접근하기 위한 불법 장치 및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포함한 도서 불법 복제, 케이블과 위성 신호 도난, 민간 및 공공 분야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등 여전히 우려 사항이 남아있다. 게다가, 베트남의 불공정한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뿐만 아니라 의약품에 대한 판매 승인을 얻기 위해 진행된 비공개 테스트나 기타 데이터에 대한 무단 공개도 명확화가 필요하다. 미국은 국회가 2018년 11월 비준한 환태평양경제공동체협정(CPTPP)과, 2020년 5월 국회 비준이 예상되는 유럽연합-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식재산 조항 이행을 감시하고 있다. 베트남은 지식재산 체제 강화를 위한 국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 조약 및 WIPO 실연·음반 조약에 따른 준비를 포함한 다수의 지식재산 관련 분야에서 입법 및 기타 조치들을 입법하는 과정에 있다. 베트남은 2019년 9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 가입했으며, 미국은 그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감시할 것이다. 미국은 베트남이 이러한 문제에 관여하고 해결하며, 이러한 개혁을 진행함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에게 의미 있는 의견수렴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최근 서명한 관세 상호 원조 협정의 이행을 통해 양국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장려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베트남 무역 및 투자 기본협정 및 기타 양자 간 협력을 통해 베트남과의 지식재산 문제 등을 계속 압박할 것이다.

〈태국〉 태국은 2020년 감시대상국 목록에 남아있다.

태국은 미국-태국 무역 및 투자 기본협정의 하나로 제기된 우려를 해소하고, 진전을 지속하고 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 침해방지 소위원회가 계속 소집되고 있다. 특히 태국은 위조와 불법복제제품을 계속 압수하고 있으며, 단속 통계를 온라인에 게재하고 있다. 태국은 특허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 정체와 지연을 줄이고, 헤이그 협정 가입준비를 하기 위해 특허법 개정을 진행 중이다. 태국은 또한 밀린 특허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심사 인력을 늘렸다. 저작권법과 관련해서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인터넷 조약 가입에 대비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있다. 태국이 이들 분야에서 계속 진전을 보이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위조와 불법 복제품은 실제 시장과 온라인 모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미국은 태국이 효과적이고 억제적인 집행수단을 지속해서 제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저작권 관련 문제들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태국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기술 보호조치 예외를 두고 있고, 무단촬영에 대한 집행 절차상 장애, 허가받지 않은 집중관리단체 등 미국 및 외국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표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태국이 사용자들이 허락을 받지 않은 콘텐츠를 스트리밍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장치와 응용프로그램에 의한 온라인 불법 복제를 해결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다른 미국의 우려 사항으로는 계류 중인 제약 특허 출원의 지연,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무면허 소프트웨어의 광범위한 사용, 오래 걸리는 집행 절차와 낮은 민사상 손해배상액, 광범위한 케이블 및 위성 신호 도난 등이 있다. 미국의 권리자들은 또한 영화에 대한 콘텐츠 쿼터 제한을 허용하는 법률제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은 태국이 제약 및 농약 제품의 판매 승인을 얻기 위해 진행된 비공개 테스트나 기타 데이터에 대한 무단공개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효과적인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미국은 수정된 지식재산 업무 계획에 합의하는 것을 포함하여 무역 및 투자협정(TIFA) 및 기타 양자 간 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과 또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태국과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 2020 NTE 보고서

서문

범위 및 대상 영역

2020년 무역장벽 국가무역통계보고서(NTE)는 미국 수출, 외국인 직접투자, 전자상거래에 대한 상당한 대외장벽을 골자로 한 35번째 보고서이다. 이 문서는 지난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간한 '2020년 무역 정책 의제 및 2019년 연례보고서'와 동반되는 보고서이다.

1974년 무역법 181조, 1984년 무역관세법 303조, 1988년 미국종합무역법 1304조, 우루과이 라운드 무역협정법 311조, 인터넷 조세자유법 1202조에 따라 USTR은 주요 대외 무역 장벽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대통령, 상원 재무위원회 및 하원에 있는 해당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법은 농산물과 미국의 지식재산을 포함한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외국 장벽의 목록, 특히 그러한 투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미국인의 외국 직접 투자, 그리고 미국의 전자 상거래에 관한 것을 요구한다. 이런 목록은 무역 제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러한 장벽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미국의 협상을 용이하게 하며, 미국 무역법을 집행하고 규칙 기반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있어 귀중한 도구이다.

NTE 보고서는 USTR, 미국 무역 대표부, 다른 미국 정부 기관, 미국 대사관 내에서 취합된 정보와 함께 연방관보에 게재된 고시에 대응하여 대중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

이 보고서는 59개국, 유럽연합, 대만, 홍콩, 아랍 연맹을 아우르는 미국의 최대 수출 시장에 대해 논하고 있다. 중국 무역장벽 논의는 미·중 무역 문제에 대해 USTR이 작성한 다른 의회 보고서와 밀접하게 일치하도록 구조화되고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국 섹션에는 다른 USTR 보고서에 대한 상호 참조가 포함되어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특정 국가나 장벽이 빠진다고 해서 미국이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어, USTR의 2019년 악명 높은 시장 목록은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

서에서 특정 국가의 악명 높은 시장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악명 높은 시장의 부재나 작년 NTE 보고서의 상황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무역장벽은 고정된 정의를 피하지만, 대체로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국내 상품과 서비스를 보호하거나, 특정 국내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인위적으로 자극하거나, 지식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정부 법률, 규제, 정책 또는 관행으로 정의될 수 있다.

NTE 보고서는 국제 무역 규정과 일관성이 있든 없든 중요한 장벽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관세는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994)에 따라 허용되는 보호 방법이다. 매우 높은 관세라도 특정 요금, 즉 관세 제약을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한 국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미국의 수출에 상당한 장벽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이는 NTE 보고서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국제 무역 협정과 일관되지 않는 조치는 무역 장벽과 정책 우려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서도 미국 무역법에 따라 기소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외국의 무역 장벽을 11개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범주는 재화와 용역의 국제적 교환을 제한, 방지 또는 방해하고, 미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또는 미국의 전자상거래를 과도하게 방해하는 정부가 부과하는 조치와 정책을 다룬다.

범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입 정책(예: 관세 및 기타 수입 요금, 양적 제한, 수입 허가, 관세 장벽과 무역 촉진에서의 단점 및 기타 시장 접근 장벽);
-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예: 불필요한 무역 제한 표준, 불필요하거나 차별적인 기술 규정 또는 통신 제품의 표준을 포함한 적합성 평가 절차 또는 기술 규정)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예: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조치를 통해 시행되는 무역 제한)
- 수출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예: 우대조건에 따른 수출금융과 제3국 시장에서 미국의 수출을 대체하는 농업수출보조금)과 지방 콘텐츠 보조금(예: 수입품이 아닌 국산품 구매 또는 사용에 따른 보조금)

- 정부 조달(예: "국가적" 정책 및 비공개 입찰)
- 지식재산권 보호(예: 부적절한 특허권, 저작권 및 상표권 제도와 지식재산권의 부적절한 집행)
- 서비스 장벽(예: 외국인의 시장 참여 금지 또는 제한, 차별적 면허 요건 또는 규제 표준, 국내 규제 요건 및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
- 디지털 무역 및 전자 상거래에 대한 장벽(예: 데이터 지역화 요건, 디지털 제품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차별적 관행, 인터넷 지원 서비스 제공 제한 및 기타 제한적 기술 요건을 포함한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흐름에 대한 장벽)
- 투자 장벽(예: 외국 자본의 참여와 외국 정부 지원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제한, 현지 콘텐츠 요건, 기술이전 요건 및 수출 성과 요건, 수익금, 자본금, 수수료 및 로열티의 송환 제한)
- 경쟁(예: 외국 시장에서의 미국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나 구매를 제한하거나 무역을 억제하기 위한 경쟁법의 남용을 제한하는 정부 소유 또는 민간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
- 기타 장벽(예: 뇌물 및 부패와 같은 둘 이상의 범주를 포괄하는 장벽)

미국종합무역법 1377조에 따라 USTR은 매년 미국 통신 무역 협정 합의의 당사자인 외국 정부가 해당 정부의 의무를 준수하는지, 혹은 관련 협정의 맥락 안에서 미국 통신 제품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상호 유리한 시장 기회"를 거부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협정의 운영 및 효과를 검토한다. NTE 보고서는 1377조에서 요구하는 연례 검토에서 사용되는 미국 통신 서비스와 상품 수출에 대한 현재와 새로운 장벽을 모두 강조한다.

USTR은 외국 노동 관행을 적극적으로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미국 자유무역협정(FTA)의 노동 의무를 침해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부정하는 기준 이하의 관행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한, USTR은 미국 FTA 파트너들의 이행 및 준수 노력에 대한 감시와 집행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시책을 진전시키기 위해 USTR은 FTA 국가의 노동권 관행 및 환경조치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과 검토를 위한 관계 부처 합동의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USTR 직원은 정기적으로 FTA 국가들과 협력하여 관행을 감시하고, 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을 감시활동에 직접 참여

시키고 있다. 행정부는 이러한 활동에 대해 2020년 무역 정책 의제 및 2019년 무역 협정 대통령 연차보고서에 보고했다.

NTE 섹션은 또한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 무역에 관한 가장 최근의 통계 자료를 보고하고, 이 자료들을 전년도 자료와 비교한다. 이 정보는 독자에게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 보고된다. NTE에 포함된 상품 거래 데이터는 상무부 조사국이 보고한 바와 같이 미국 총 수출액, 선박 가격(f.a.s)과 미국 일반 수입품, 통관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한다. 서비스 데이터와 직접 투자는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이 작성한다(참고: 부록 II에 시장 규모에 따라 순위를 매긴 데이터가 제공된다).

2020년 3월

국가 보고서

〈중국〉

무역 개요

미국의 중국 상품 무역적자는 2019년 3,456억 달러로 2018년에 비해 17.6%(739억 달러) 줄었다. 미국의 중국 상품 수출액은 1,066억 달러로 전년보다 11.3%(135억 달러) 줄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4,522억 달러로 16.2% 감소했다. 중국은 2019년 미국의 3대 상품 수출시장이었다.

미국의 중국 서비스 수출은 2019년 567억 달러로 추산됐고, 미국 수입은 187억 달러였다. 2017년 미국 다수 계열사의 중국 서비스 매출은 549억 달러인 반면 중국 다수 계열사의 미국 서비스 매출은 180억 달러였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18년 1,165억달러로 2017년보다 8.3% 증가했다. 미국의 중국 직접투자는 제조업과 도매무역, 금융과 보험이 주도하고 있다.

주요 무역 장벽

미국은 미국의 기업, 노동자, 농부, 목장주,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소비자들이 중국과의 무역과 경제적 유대로부터 얻는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활발한 참여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 현재 몇 가지 특정 분야에서 중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은 미국과 미국 이해관계자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들 각 분야의 주요 관심사는 아래에 요약되어 있다. 우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세계무역기구(WTO) 준수 관련은 2020년 3월 6일에 발간된 2019 USTR 보고서를 참조하고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혁신과 관련된 중국의 법률, 정책, 관행 조사 결과는 2018년 3월 22일에 발간된 1974년 무역법 4301조에 따른 보고서를 통해, 업데이트 된 부분은 2018년 11월 20일에 발행된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개요

중국은 WTO 가입 후 WTO의 지식재산권 무역 관련 협정(TRIP)에서 요구하는 대로 국내외 권리자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과 규정의 골격을 대폭 수정했다. 현재 중국은 지식재산 상고법원 설치와 특정법규 개정 작업이 한창이다. 국무원이 발표한 각종 계획과 지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체제의 미흡함은 미국의 수출과 투자에 심각한 장벽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USTR의 201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우선감시대상국 리스트에 다시 올랐다. 더불어 USTR은 2019년 4월 불법 복제와 모조 상품에 반대하는 글로벌 투쟁의 핵심 과제로 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장을 파악한 2018년 악명 높은 시장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몇몇 중국 시장은 악명 높은 시장으로 명명된 시장들 중 하나이다.

1단계 협정은 중국의 불충분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과 관련된 미국의 많은 오랜 우려를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협정은 중국이 영업비밀, 제약 관련 지식재산권, 특허, 상표권, 지리적 표시 등의 분야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률과 규제체제를 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이번 합의로 중국은 사법절차를 수없이 변경하고, 제지할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을 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온라인 환경, 오프라인 시장, 국경에서의 불법 복제와 모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영업 비밀

중국의 영업 비밀 보호와 집행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최근 몇 년 동안 미국과 중국 간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중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영업비밀 도용 사례가 중국 안팎으로 여러 건 발생했다. 많은 경우에 범법자들은 계속해서 처벌 없이 행동하고 있다. 특히 골치 아픈 것은 중국 정부와 중국 군인들이 중국 기업의 상업적 이점 제공을 위해 미국 기업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해 기업의 독점 정보와 지식재산권 등의 데이터를 훔쳤다는 보도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영업 비밀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적 지침을 내리겠다는 약속을 확보했다. 미국은 또한 중국으로부터 국가가 후원하는 상업용 영업비밀의 유용을 묵인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확보했다. 미국은 특히 반공정경쟁법 초안과 관련해 중국의 영업비밀 관련 법 및 규제에 대한 주요 개정을 촉구했다. 미국은 또한 중국이 국가가 후원하는 행위자들의 부적당한 문제를 해결하고 영업 비밀 수칙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2016년 11월 JCCT(미중 무역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영업비밀 체제를 강화하고 시장가치에 따른 증거보존명령과 피해의 가용성과 함께 예비상해 등에 대한 사법해석서 발급 등 여러 중요 분야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2016년과 2017년 국민 의결을 위해 불공정경쟁금지법 개정안을 회람했다. 중국은 이에 상응하는 최종 조치를 2017년 11월, 2018년 1월 발효했다. 사전법에 비해 영업비밀 보호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조치에는 효과적인 영업비밀 보호를 촉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친 것이 반영되었다. 중국이 2019년 4월 불공정경쟁행위금지법과 행정면허법을 추가 개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여전히 보호 범위와 집행 장벽의 중대한 단점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지속하고 있다. 영업비밀은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1단계 협정은 중국에서의 영업비밀 도용에 대한 보호와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지식재산 관련 장에서는 중국이 상품 및 서비스의 제조나 판매에 직접 관여하는 주체를 넘어 유용에 대한 민사책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침입 등의 행위를 영업비밀도용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영업비밀도용의 합리적인 징후가 있을 때 민사사건의 입증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도용된 영업비밀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하고, 실제 손실을 보여줄 필요 없이 범죄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적인 영업비밀 유용에 대해 형사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에 제출된 미공개 정보, 영업비밀 및 기밀업무 정보의 무단 공개에 정부 인사 및 제3의 전문가 및 자문위원이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 침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중국에서 대규모로 계속되며, 합법적인 음악, 영화, 책과 신문, 소프트웨어, 비디오 게임 유통에 관련된 사람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강화된 집행 활동은 일부 침해 상품들의 온라인 판매 흐름을 막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콘텐츠 제작자와 권리자,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훨씬 더 지속적인 조치와 관심이 필요하다.

미국은 중국이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콘텐츠를 다루는 건전한 시장의 성장 촉진에 도움이 되는, 보다 광범위한 정책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또한 역효과로 입증된 기존의 규칙들을 개정할 것을 중국에 촉구해왔다.

중국은 2016년 11월 JCCT 회의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온라인 침해 및 모조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미국과 협력해 온라인 집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의 활용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2016년 12월과 2017년 11월에 공개 논평을 위해 새로운 전자상거래법 초안을 발간했다. 미국은 서면 논평에서 이 법안의 최종 개정안이 기존의 통지삭제(notice-and-takedown) 체제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온라인 침해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8월, 중국은 2019년 1월에 발효된 새로운 전자상거래법을 채택했다. 이 법은 중국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시장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에 관한 강력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최종 확정과 같이, 법은 온라인상에서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위조 상품 및 기타 침해 상품 판매에 대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조항을 도입했다. 2019년 1월 발간된 민법 불법행위 책임 초안에는 기존의 통지삭제 시스템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유사한 문제를 포함한 조항이 수록됐다.

1단계 협정은 중국이 신속한 타결을 요구하고 통지와 역통지의 유효성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온라인 환경에서 침해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또 중국이 침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

개요

중국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중국 내 미국 서비스 공급업체에 대한 정망이 밝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2018년 중국과의 서비스 무역에서 388억 달러의 흑자를 유지한 반면, 중국 서비스 시장에서의 미국 점유율은 세계 서비스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을 크게 밑돌았다.

2019년에는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수많은 과제가 지속되었다. 과거처럼 중국의 규제당국은 차별적 규제 절차, 진입과 확장에 대한 비공식적 금지, 일부 서비스 분야의 사례별 승인,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인허가 및 운영 요건, 그리고 중국에서 완전한 시장 잠재력을 달성하기 위한 미국 서비스 공급자들의 노력을 좌절시키기 위한 다른 수단들을 계속 사용했다.

이러한 정책과 관행은 은행, 증권 및 자산관리, 보험, 전자 결제, 클라우드 컴퓨팅, 통신, 온라인 비디오 및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영화 제작 및 배급, 신속 배달, 법률 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미국 서비스 공급 업체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중국의 사이버보안법 및 관련 초안과 최종 이행조치에는 국내 ICT 제품과 서비스의 구매 의무화,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의 제한, 데이터를 국지적으로 저장 및 처리하는 요건이 포함되는데, 이는 모두 미국 서비스 공급자의 시장 접근 기회를 저해한다. 중국은 전자 결제 서비스와 극장용 영화 수입과 유통 등 WTO 분쟁 해결의 대상이 된 분야에서도 미국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1단계 협정은 은행, 보험, 증권, 자산관리, 신용 등급, 전자 결제 서비스를 포함한 광범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업체에 대한 오랜 무역 및 투자 장벽을 다룬다. 이 협정에서 다루어지는 장벽에는 공동기업 요구사항, 해외지분제한, 다양한 차별적 규제요건이 포함된다. 이러한 장벽을 제거하면 미국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보다 수준 높은 경쟁 분야에서 경쟁할 수 있고 중국 시장에서 그들의 서비스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극장 영화

2012년 2월, 미국과 중국은 미국이 승소한 WTO 사례에서 영화의 수입과 배급에 관한 일부 판결과 관련해 대체 결의안을 도출했다. 양측은 미국 영화 제작자들에게 상당한 추가 수입과 함께 매년 중국에서 수입되고 배급되는 외국 영화의 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중국은 수입 영화의 영화 배급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중대한 약속을 포함한 MOU 약속을 아직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에 MOU 전면 이행을 압박해 왔다.

2017년 MOU 조항에 따라 양측은 업데이트된 MOU를 통해 미국에 추가적인 의미 있는 보상 제공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논의는 2018년 3월 중국이 중국영화국(China's Film Bureau)에 중대한 변화를 수반하는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에 착수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2018년 12월 1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미중 무역협상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논의가 재개됐다. 현재까지 중국이 미국에 빚진 의미 있는 추가 보상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미국은 중국이 의무를 다하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다.

시청각 및 관련 서비스

중국은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영화 제작 및 배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국장 서비스 분야 제한으로 인해 중국 내 영화관에 대한 외국 기업의 투자가 완전히 위축되었다.

중국은 TV와 라디오의 관련된 서비스에 외국 공급자들의 참여를 크게 제한한다. 예를 들어 외국 TV 채널의 재전송 금지, TV 제작 투자 금지, 중국 내 TV 방송국과 채널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금지는 물론 매일 중국 TV 채널에서 방영할 수 있는 외국 프로그램 양에 대해 쿼터를 부과한다. 2018년 9월 국가광파전시총국(NRTA)은 이미 규제가 심한 중국의 해외 창작 콘텐츠 시장에 새로운 제약을 가하는 문제적 조치 초안을 내놨다. 그것은 외국 영화, TV쇼, 만화, 다큐멘터리 및 기타 외국 TV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방송과 온라인 시청각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 방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여러

범주에서, 외국 콘텐츠에 대한 지출을 30퍼센트 이하로 하도록 요구됐다. 또한 황금시간대에 외국 TV쇼를 금지할 것이다.

온라인 비디오 및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서비스

중국은 콘텐츠와 유통 플랫폼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통해 해외 동영상 및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은 콘텐츠와 관련해 외국 기업이 중국 기업에 콘텐츠 라이선스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도 모호하고 투명하지 않은 기준에 근거한 철저한 콘텐츠 검토 요건을 통해 콘텐츠에 대해 부담스러운 제한을 가한다. 유통 플랫폼과 관련해 NRTA는, 과거 국가언론·출판·라디오·필름·텔레비전국(National Administration of Press, Publication, Radio, Film, Television), 중국 온라인 플랫폼 공급업체가 인수 예산의 30% 이하를 해외 콘텐츠에 지출하도록 했다. NRTA는 또한 비디오 플랫폼이 모두 중국 소유여야 한다는 요구 조건과 같이 외국 공급업체가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수많은 조치를 시행했다. NRTA와 다른 중국 규제 당국도 비디오 유통과 관련된 중국의 GATS 방침을 포함할 수 있는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의 국경을 넘나드는 공급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베트남〉

무역개요

미국의 베트남 상품 무역적자는 2019년 558억 달러로 2018년에 비해 41.3%(163억 달러) 증가했다. 미국의 베트남 상품 수출액은 109억 달러로 전년보다 12.5%(12억 달러) 증가했다.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액은 667억 달러로 35.6% 증가했다. 베트남은 2019년 미국의 27위 상품 수출시장이었다.

미국의 베트남 서비스 수출은 2018년 약 25억 달러로 추산됐고, 미국의 수입은 13억 달러였다. 2017년 대다수의 미국 소유 계열사의 베트남 서비스 매출은 8억3500만 달러인 반면, 베트남 주요 기업의 미국 서비스 매출은 100만 달러였다.

미국의 베트남(주식)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2018년 24억달러로 2017년보다

17.3% 증가했다.

무역협정

베트남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FTA 지역의 당사국이다. 나아가 베트남은 호주·중국·홍콩·인도·일본·한국·뉴질랜드와 무역 협정을 맺었고, 2019년 11월 역내경제동반자포괄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대한 텍스트 기반의 협상을 타결했다. 베트남은 칠레, 일본, 한국과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베트남-유라시아 경제연합(Eurian-Euarasian Economic Union)의 당사국이기도 하다. 베트남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중국, 이스라엘과 추가 FTA 협상을 하고 있다. 게다가 유럽연합(EU)은 EU-베트남 FTA 비준이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보호

베트남은 2019년 스페셜 301조 감시대상국 목록에 포함되었다. 베트남의 공공 인식 캠페인 참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능력, 부패 및 자원에 대한 제약은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시행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인터넷과 시장에서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와 위조 상품 판매는 계속해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베트남의 호치민시의 벤탄(Ben Thanh) 시장과 하노이의 동쉬안(Dong Xuan) 시장은 Notorious Market 보고서의 Out-of-Cycle Review에 포함되었다.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보호 집행을 위해 행정적인 조치와 처벌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위조 상품 생산과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저지하는 데 실패했다. 게다가 미국은 베트남의 불공정한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뿐만 아니라 제약 제품에 대한 판매 승인을 얻기 위해 생성된 비공개 시험이나 그 밖의 데이터에 대한 무단 공개도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미국은 베트남과 이 문제들을 계속 논의 중이다.

서비스 장벽

시청각 서비스

2016년 3월에 제정된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료 텔레비전 서비스에서 총 외국 채널 수가 30% 이하를 차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은 또한 외국의 유료 텔레비전 제공자들에게 모든 영화와 과학, 교육, 스포츠, 오락, 음악 프로그램의 상영 전 베트남어로 번역을 위해 현지 대리인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베트남은 해외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제작 후 작업(번역, 콘텐츠 검토, 베트남 방송 배치 승인 광고에 대한 배치료 지불 포함)의 서비스를 현지 제작사로부터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베트남은 OTT(Internet-enabled subscription video services) 서비스 확대를 위해 Decree 06/2016의 개정 초안을 마련 중이다. 아직 초안이지만, 시행령 개정안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인허가, 현지 주재, 지역 콘텐츠 할당량, 사전 편집 및 번역, 광고에 대한 부담스러운 규제 내용에 대해 우려를 자아냈다. OTT 서비스에 대한 최종 조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통신부는 "스마트" TV 제조업체들에게 OTT 서비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사전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도록 압력을 가하여 하드웨어와 서비스 공급업체 모두의 사업 기회를 방해하고 있다. 미국은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과 협력하고 있다.

〈태국〉

무역개요

미국이 태국을 상대로 한 상품무역의 적자는 2019년 202억 달러로 2018년에 비해 3.8%(7억2900만 달러) 증가했다. 태국에 대한 미국 상품 수출액은 133억 달러로 전년보다 6.9%(8억6000만 달러) 늘었다. 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3.0% 증가한 335억 달러였다. 태국은 2019년 미국에서 25번째로 큰 상품 수출 시장이었다.

미국의 태국 서비스 수출은 2018년 약 30억 달러로 추산됐고, 미국의 수입은 43억

달러였다. 태국의 서비스 매출은 2017년 53억달러인 반면 태국의 서비스 매출은 1억 8,900만달러였다.

태국(주식)에 대한 미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2018년 177억달러로 2017년보다 17.7% 증가했다.

무역협정

태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FTA 지역의 당사국이다. 나아가 태국은 호주·중국·홍콩·인도·일본·한국·뉴질랜드와 무역 협정을 맺었고, 2019년 11월 역내경제동반자포괄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대한 텍스트 기반의 협상을 타결했다. 아세안 중심의 무역 협정과는 별개로 태국은 호주·칠레·인도·일본·페루·뉴질랜드와 맺은 무역 협정을 포함한 많은 양자간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태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태국은 유럽연합(EU)·파키스탄·스리랑카·터키와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한 논의를 벌여왔다.

지식재산권 보호

태국은 2019년 스페셜 301조 감시대상국 목록에 포함되었다. 태국은 위조 상품 및 불법 복제품 퇴치를 위한 집행 노력과 특허 및 상표 출원에 대한 밀린 업무 처리를 위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지식재산권(IP) 보호와 집행에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미국은 방콕의 팻퐁(Patpong) 시장이 Notorious Market 보고서의 Out-of-Cycle Review에 계속 포함됨에 따라 시장과 온라인 모두에서 위조 및 복제 상품의 존재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다른 미국의 우려는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의 무허가 소프트웨어의 광범위한 사용, 광범위한 케이블과 위성 신호 도난,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상의 불법적 비디오 녹화, 기술 보호 조치의 무단 회피를 처벌하는 법률의 지나치게 광범위한 예외,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집행의 지속적인 결여 등이다.

국은 태국이 제약 및 농약 제품의 판매 승인을 얻기 위해 생성된 비공개 시험이나 기타 데이터에 대한 무단 공개, 그리고 불공정한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효과적인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태국이 제약 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지식재산법, 규정 또는 지침을 채택하기 전에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의미 있고 투명한 방식으로 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시청각 서비스

태국 문화부는 2019년 말 현재까지 외국 영화의 수입을 제한하는 비율과 쿼터를 제정할 권한을 태국 영화진흥위원회에 부여하는 영화영상법 검토를 진행 중이다. 지상파 방송망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등록자본과 의결권의 25%로 제한된다.

• 2019 Notorious Market 보고서

2019년 위조 및 불법복제에 대한 악명 높은 시장의 검토 결과의 개요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와 상표권 위조는 미국의 권리자와 합법적인 기업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고, 미국 노동자의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비교 우위를 손상시키며,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 악명 높은 시장 목록(NML)은 불법 복제 및 위조에 관여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및 실제 시장의 두드러지고 실례가 되는 예시를 비춰준다. NML의 목표는 민간 부문과 정부가 불법 복제 및 위조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전 세계 위조 및 불법 복제문제에 대한 우려를 예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에서의 침해 활동 규모가 미국 지식재산권 권리자, 소비자, 합법적 온라인 플랫폼 및 경제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시장을 강조한다. 확인된 시장 중 일부는 합법적인 행위와 허락되지 않은 행위의 조합을 실행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또는 보고된 다른 이들은, 허락받지 않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NML에는 소유주, 운영자 및 정부가 명시된 우려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에 확인된 몇몇 시장을 포함하고 있다. 이전에 확인된 다른 시장은 시장이 닫혔거나, 시장의 인기나 중요성이 감소되었거나, 집행이나 자발적 조치로 지식재산 침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유형을 현저히 줄였다거나, 시장 소유자 또는 사업자가 권리자와 협력하고 있거나, 기타 다양한 이유로 NML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2018년 NML의 온라인 시장은 올해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미국은 관련 시장에 대한 우려를 계속 제기할 수도 있다.

NML은 지식재산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전 세계 모든 실체적 및 온라인 시장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 아니다. NML은 법적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지 않으며, 열거된 시장과 연관된 국가의 일반적인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환경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분석

을 반영하지도 않는다. 특정 국가 또는 경제에서의 지시재산 보호 및 집행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은 매년 4월말에 발행된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제공된다.

USTR은 매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 과정의 후원 하에 NML을 개발했다. 연방 관보에 게재된 공개 논평 요청서(https://www.regulations.gov, Docket Number USTR-2019-0013)를 통해 의견을 구했다. NML은 주로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USTR은 2006년부터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악명 높은 시장을 확인했다. 2010년 USTR은 주기적 검토에 따라 스페셜 301조 보고서와 별도로 NML을 게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USTR은 2011년 2월에 처음으로 NML을 별도로 발행했다.

2019년 악명 높은 시장 검토의 결과

악명 높은 시장 목록은 불법 복제 또는 위조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거나 촉진하는 온라인 및 실체적 시장의 두르러지고 실례의 예시를 확인한다. 이는 국가 또는 경제에서 일반적인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환경에 대한 위반의 법적 발견 또는 분석을 구성하지 않는다. NML은 지식재산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전 세계 모든 실체적 및 온라인 시장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 아니다. NML 상의 시장은 불법 복제 또는 위조 상품 및 서비스가 지식재산 집약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합법적인 거래의 손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밀거래 되는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및 실체적 시장의 두드러진 예시를 강조하기 위해 미국 대사관과 같은 곳으로부터의 조언뿐만 아니라 많은 지명으로부터 이끌어진다.

불법 복제 및 위조를 처리할 의향이 있는 악명 높은 시장의 소유주 및 운영자에게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예를 들어, 합법적인 콘텐츠의 라이선스 배포에 의존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할 수 있으며, 권리자와 적절한 라이선스 협상을 할 수 있다. 만약 합법적인 사업이 불법 복제 또는 위조를 위한 플랫폼이 된 경우, 소유주 또는 운영자는 권리자 및 법집행 공무원과 협력하여 침해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 산업계는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모범사례를 개발했다. 선의의 노력이 없다면, 책임 있는 정부 당국은 이러한 시장 및 유사 시장에서 발생한 불법 복제 및 위조 보고서

를 조사하고, 해당 시장과 그 소유주 및 운영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적절한 집행수단을 권리자와 정부 기관이 처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운영자는 집행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온라인 시장

2019년 악명 높은 시장 목록은 다양한 기술, 난독화 방법, 수익 모델, 침해 활동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의 예시를 보여준다. USTR은 특정 유형의 기술이 아니라 지명된 시장 또는 관련 시장의 소유주, 운영자 또는 사용자가 미국 창작자와 기업의 손해에 대해 실질적인 불법 복제 행위나 위조를 했거나 조장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선정했다.

올해 공개 의견서를 제출한 이들은 복잡한 생태계를 부각시켰다. 도메인 이름 등록자, 역방향 프록시 서비스, 호스팅 제공자, 캐싱 서비스, 광고주 및 광고 배치 네트워크, 지불 프로세서, 소셜 네트워크, 검색 엔진을 포함한 불법 복제 콘텐츠의 제공자들에 의해 악용된다. 이 생태계의 각 구성요소는 불법 복제 행위를 용이하게 하거나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해 악명 높은 시장인 MP3va 사이트는 지불 수령을 중단하려는 미국 지불 프로세서의 행동으로 인해 인기가 크게 떨어졌다. 게다가 올해 처음으로 광고 배치 네트워크인 프로펠러 광고는 불법 복제 웹사이트에 자금을 대는 역할로 악명 높은 시장으로 확인되었다.

올해의 검토 과정에서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의해 촉진되는 위조품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권리자들은 위챗과 같은 대형 플랫폼과 관련된 전자상거래 기능에서 위조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점점 더 많은 우려를 표명해왔다. USTR은 이러한 우려를 더 연구하고 감시할 것이다. 플랫폼은 산업 표준 지식재산 집행 정책을 수립하고, 불만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권리자와의 투명성과 협력을 증대하며, 지식재산권 침해자를 식별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USTR은 연방관보 통지서에서 미국 기반의 아마존과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온라인 제3의 시장에 대한 제출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행정부는 2019년 4월 위조와 불법 복제의 밀매를 다루는 대통령 각서를 발행한 이후 그들의 역할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2020년 1월 대통령 각서에 대응해 국토안보부(DHS)는 '위조품 및 불법 복제 거래의 결합'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비록 전자상거래가 수천 개의 합법적인 사업의 창업을 지원했지만 전자상거래 플랫폼, 온라인 제3의 시장, 그리고 그들의 지원 매개체가 위조품 및 불법 복제 상품 밀매를 위한 강력한 자극제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온라인 제3의 시장을 통해 위조품 및 불법 복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다. 위조업자들에게는 제작비가 저렴하고, 잠재 고객 수백만 명이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거래가 편리하며, 잘 알려진 플랫폼에 상품을 나열하는 것은 합법적인 분위기를 제공한다. 게다가 불법 상품 판매자들이 다른 나라에 있을 때 그들은 현행 법 집행과 규제 관행 하에서 형사 고발이나 민사 책임의 위험에 상대적으로 거의 노출되지 않는다. USTR은 위조범들이 초래한 피해와 손실로부터 미국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이러한 우려에 비추어 USTR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위조품과 불법 복제 상품의 밀매를 방지하고 플랫폼에서 그런 상품의 가용성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Combating Trafficking in Counterfeit and Pirated Goods)" 보고서는 제3의 시장 및 기타 제3의 중개인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신속한 채택을 요구했다.:

1. 포괄적 "서비스 약관" 계약서
2. 타사 판매자에 대한 조사 능력 대폭 향상
3. 고위험 제품에 대한 제한사항
4. 효율적인 공지 및 삭제조치 절차
5. 향상된 검색 작업
6. 외국인 판매자에 대한 배상 요구 사항
7. 미국 집행 요청에 응하는 은행을 통한 거래 명확화
8. 타사 판매자의 사전 식별
9.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ID 설정
10.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원산지 공지

이런 조치가 없다면 미국의 권리자들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수입된 위조 및 불법 복제 상품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USTR은 위조 및 불법 복제 상품 밀거래에 관한 대통령 각서와 일관되게 앞으로도 미국 무역 거래자들과 함께 위조 및 불법 복제 상품 문제를 계속 다룰 것이며, 향후 악명 높은 시장에 대한 검토에서 미국에 본사를 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모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중국〉

DHGATE(모바일 앱으로도 이용 가능, 중국 운영)

DHGATE는 2,100만 명의 등록 구매자와 2,200만 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중국 최대 기업 간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중소기업이 많은 200만 명이 넘는 중국 상인들이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DHGATE는 자사 플랫폼의 위조 상품 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다. 예를 들어 위조품 판매자에 대한 벌칙을 높이고, 글로벌 브랜드 정보 수집 과정을 자동화했으며, 위조품의 사진을 식별하기 위한 이미지 인식 시스템을 가동했으며, 위조필터 시스템에 브랜드 관련 키워드를 많이 추가했다. DHGATE는 2018년 NML에서 USTR의 "권리자나 사법 당국이 위조품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에 따라 행동하기도 했다. 그 결과 올해에는 DHGATE는 악명 높은 시장으로 지명하는 댓글이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HGATE는 자사 플랫폼에 위조품이 널리 보급되고 위조품이 쉽게 위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악명 높은 시장으로 남아 있다. USTR은 DHGATE가 판매자 조사, 정책 나열, 보고 절차, 사전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위조품의 가용성을 크게 낮출 것을 촉구하고 있다.

DYTT8(관련 사이트로 dy2018.com이 있음, 대만 운영)

DYTT8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비영어 토렌트 사이트 중 하나로 허가받지 않은 영화, TV쇼, 음악, 소프트웨어 등의 링크를 제공한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진 DYTT8은 중국 내외부의 합법적인 콘텐츠 제공자들에게 까다로운 위협으로 남아

있다.

PINDUODUO(모바일 앱으로도 이용 가능, 중국 운영)

소셜커머스 앱 PINDUODUO는 현재 이용자 수로 측정한 중국 2위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2018년 NML 보고서에 추가된 이후, PINDUODUO는 위조품의 가용성을 줄이기 위해 취한 몇 가지 조치를 보고했으며, 직원들 중 상당수를 이러한 위조 방지 노력에 헌신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PINDUODUO는 2019년 2월 브랜드케어 프로그램을 출시해 가장 위조 노출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브랜드에 대한 맞춤형 위조방지 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인 목록 검색 및 차단 활동을 펼쳤다. PINDUODUO는 2019년 9월 지식재산 보호 포털의 영문 버전을 공개했는데, 이 포털은 권리자가 PINDUODUO가 자신의 상표를 인식하게 하고 즉시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PINDUODUO는 이러한 조치들이 일부 권리자들에게 만족스러운 위조 방지율을 가져왔다고 보고하지만, 또 다른 권리자들은 일부 브랜드에 대한 위조품의 존재는 여전히 높다고 지적한다.

PINDUODUO는 또한 그들의 다른 위조 방지 프로그램의 성공을 설명했다. PINDUODUO에 따르면, 모든 상인들은 팔 물건을 내놓기 전에 개인 신분증과 실시간 3D 안면 스캔을 제공해야 한다. PINDUODUO는 이 정보를 이용해 위조품 판매에 대해 상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책임을 묻게 하고, 위조 조사 및 집행 활동과 관련해 권리자와 법집행기관에 검증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조품 판매업자가 또 다른 상인으로 재등록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입장이다. PINDUODUO는 또 모든 상인들이 위조품 구매자에게 배상하기 위한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보고했다. PINDUODUO가 '비밀매수'를 통해 위조품 판매를 확인하면 전체 물품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이 몰수된다. 그러나 PINDUODUO는 위조품 판매자가 언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언제 플랫폼에서 상인을 차단할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권리자 또는 법집행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권리자들은 PINDUODUO의 명확하고 투명한 지식재산 집행 정책이 부족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현재 플랫폼에서의 위조품 이용 가능성을 다루기에는 부족한 시스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PINDUODUO는 1대 10 보상정책 등 일부 위조 방지 전술을 개척해 왔으며, 플랫폼 위조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유망하다. 그러나 현재 PINDUODUO 플랫폼에 위조품이 널리 퍼진 것으로 보고된 것을 볼 때, 이러한 노력의 완전한 영향을 측정하기는 이르다. USTR은 PINDUODUO가 지식재산 집행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엄격하고 투명한 집행 정책을 개발하며, 권리자와의 협력을 증진하고, 오프라인 시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을 집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그리고 추천 피드를 벗어난 검색 결과가 여전히 많은 수의 위조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

SHOPEE(관련 사이트로 shopee.com.my, shopee.ph, shopee.co.th, shopee.vn, shopee.co.id, shopee.co.id 등이 있음, 모바일 앱으로도 이용 가능, 중국 운영)

SHOPEE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동남아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및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이다. 권리자들은 가짜 약을 포함한 SHOPEE의 모든 플랫폼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위조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보고한다. SHOPEE는 즉시삭제 조치 과정에서 플랫폼에 기재된 내용보다 권리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구하며 권리자가 추가 정보를 제공한 뒤에도 긴급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리자에 따르면 침해 제품을 제거하려면 2주 이상 걸릴 수 있으며, 위조품을 판매한 판매자를 차단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절차가 없다.

TAOBAO(모바일 앱으로도 이용 가능, 중국 운영)

알리바바 그룹이 소유한 TAOBAO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 하나이다. TAOBAO는 2016년 상당한 권리자들의 관심과 지명에 NML에 처음 등재되었고, 이후 보고서에서는 TAOBAO 침해 상품들의 제공과 판매를 억제하기 위한 많은 권고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알리바바는 TAOBAO가 이러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다른 권리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권리자들에 따르면, TAOBAO는 중국에서 가장 큰 위조품 판매처 중 하나로 남아 있다. 일부 권리자들은 TAOBAO의 대응 시간과 정책이 개선된 것에 대해 칭찬했지만, 위조품의 수

및 필터와 기타 적극적인 위조 방지 조치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불평했다. USTR은 TAOBAO의 행동이 위조 및 위조품 확산에 대한 현재 진행 중인 불만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해당 조치가 명백하게 효과적인지의 여부를 계속 감시할 것이다.

〈베트남〉

PHIMMOI(베트남 운영)

영화계에 따르면, PHIMMOI는 1,100만 명의 방문객에서 매달 약 7,500만 명의 방문으로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불법사이트 중 하나가 되었다. 베트남 공안부에 접수된 사이트에 대한 불만과 비난 공문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아직 현장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실체적 시장

온라인으로 위조 상품 및 불법 복제품의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체적 시장은 위조 상품 및 불법 복제품의 실질적인 거래를 계속 가능하게 한다.

세계적 환경에서 부도덕한 유통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단속만으로는 모조품의 흐름을 줄이기엔 충분하지 않다. 현재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을 포함한 현대화된 타겟 집행 수단이 필요하다. :

자국에서 제조된 위조 상품 및 불법 복제품의 수출과 해당 상품을 자국으로 수입하는 것, 그리고 자국을 통해 해당 상품을 목적지 국가로 환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경집행조치

세관 및 범죄 당국이 자유무역지대로 출입하는 위조 상품 및 불법 복제품을 구금, 압류, 파기하는 것

- 우편 또는 특송 서비스를 통해 발송되는 것과 같은 소규모 위탁 운송을 금지하기 위한 강력한 국경 집행 권한
- 침해 상품을 판매하고 보관하는 시장이나 시설의 소유주에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

인 자산 몰수

· 위조 라벨 및 포장 밀매에 대한 형사 절차 및 처벌

·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품의 밀거래와 같은 심각한 사건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불법 복제 및 위조를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를 합법적인 대안으로 인도하는 것에 있다.

〈중국〉

지난 몇 년간 여러 의견 게시자들이 중국을 모조품의 주요 공급원으로 계속 지목하고 있다. 중국 상품이 종종 환적되는 홍콩과 함께, 중국은 2018년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이 압류한 위조 상품 및 불법복제품 가격의 85%(제조업체의 권장소매가격으로 측정), 그리고 위조 상품 및 불법복제품의 총량의 87%를 차지했다. 일부 중국 시장, 특히 대도시에서는 모조품의 이용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채택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널리 채택되지 않았으며 집행은 일관성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주요 악명 높은 시장은 중국의 대도시에서 여전히 쉽게 볼 수 있다. 권리자들은 이러한 시장 중 일부에서 공습과 압류가 계속되고 있음을 인정하였지만, 다른 시장에서는 사실상 강제 조치가 존재하지 않았다.

2020년 1월 15일, 미국과 중국은 지식재산, 기술이전, 농업, 금융서비스와 통화 및 외환거래분야에서 중국의 경제무역체제에 대한 구조적 개혁과 기타 변경을 요구하는 1단계 무역협정에 역사적이고 집행 가능한 계약을 체결했다. 지식재산챕터는 불법 복제품 및 모조품에 대한 집행 영역을 포함하여 수많은 오랜 우려를 다루고 있다. 특히 중국의 실체적 시장에서 수출되거나 운송되는 불법 복제품 및 모조품에 대한 단속 횟수를 대폭 늘릴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USTR은 중국이 다음과 같은 주요 시장에 특히 중점을 두고, 중국에서 보고된 문제의 규모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강력한 집행 조치의 범위를 채택하고 확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광둥성 광저우시 잔시로드 인근의 의료도매·소매상 Jinlongpan, Kindo, Yulong, hanxi markets

광저우(Guangzhou) 잔시로드(Zhanxi) 근처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 시장은 서로 1마일 내 위치하고 있으며, 주로 의류와 신발을 판매한다. 권리자들은 모조품이 이들 시장에서 30%~70%의 상품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고한다. 이들 시장은 전 세계로 배송하기 위해 모조품을 구매하는 외국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지식재산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포스터가 곳곳에 걸려 있는 것 외에는 이 지역에 명백한 지식재산 집행은 없다.

광동성 광저우시 남부시계무역센터

최소 150개의 공급업체가 있는 2층 시장은 잔시로드 근처의 의류 도매시장과 인접해 있다. 권리자에 따르면, 사실상 모든 상점이 위조 시계를 판매하고 있으며, 그 중 다수는 수백 달러에 판매되는 고급 모조품으로 알려져 있다. 보안 담당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지식재산 집행이 거의 없다. 남부시계무역센터는 여행 가이드가 홍보하며, 또한 모조품을 수출하려는 외국 구매자에게 인기 있는 곳이기도 하다.

Yuan Wang, Long Sheng 및 광동성 선전시의 Man Har 디지털 플라자몰을 포함한 Huaqiangbei 전자상가

이 지역의 쇼핑몰에는 각각 수백 개의 전자제품 및 부품 공급 업체가 있다. 권리자들은 공급 업체가 중국 및 전 세계의 위조 전자 장치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위조 컴퓨터 칩, 배선, 콘덴서 및 LED를 제공한다고 보고한다. 이 쇼핑몰의 공급업체는 또한 위조 스마트폰, SD카드 및 비디오 게임 콘솔 등을 제공한다. 이 쇼핑몰의 집행조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쇼핑몰 운영자들은 권리자들의 노력을 좌절시키고 있다.

광동성 선전시 Luohu 상업도시

선전과 홍콩의 사이를 가로지르는 뤄후(Luohu) 국경 옆에 위치한 유명한 쇼핑몰이

다. 권리자들은 그 위치와 규모가 국제적 명성을 높이고 관광객과 국경을 넘어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곳이라 보고한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상품의 반은 위조 상품 또는 불법 복제품으로 구성된다. 법 집행 기관은 시장과 연결된 창고 및 공장에 정기적으로 급습을 실시하지만, 침해 제품이 계속 보급됨에 따라 노력이 더 필요하다.

베이징시 실크시장

2011년부터 NML에 기록된 실크시장은 지식재산 집행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2019년에도 여전히 우려되는 시장이다. 권리자들은 이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상품이 모조품이라 보고한다. 2019년 3월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에 강화된 집행으로 인해 눈에 띄게 침해되는 상품이 줄어들었다고 보고되었지만, 단속이 곧 줄어들고 침해 제품이 다시 나왔다. 권리자들은 시장에서 판매자를 일시 중단시키는데 있어 잠깐의 성공을 거두었지만, 시장 운영자가 권리자와 협력을 거부하면서 전반적인 집행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랴오닝성 선양시 Wu'ai 시장

이곳은 6,000개가 넘는 상점이 있는 중국 동북부에 위치한 최대 시장이며, 이 지역 전역에 모조 신발, 핸드백, 수하물 및 의류를 유통하는 중심지이다. 2018년 당국은 이 시장의 판매업체를 상대로 29건의 상표권 침해 사례를 만들었지만 이러한 사례의 총 가치는 12,666달러에 불과했으며, 이 노력은 침해 문제의 규모를 해결하는 데 크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저장성 이우시 Yiwu 국제상품도시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규모 상품 시장이며, 5만개의 공급 업체가 상상할 수 있는 제품의 대부분을 대량으로 세계 고객에게 판매한다. 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많은 상품은 브랜드가 없고 차별화되지 않지만, 권리자들은 일부 상인들이 더 높은 이윤을 보거나 모조품인 핸드백, 신발, 그리고 의류를 공개 전시 및 판매한다고 보고한다. 권리자들은 또한 지방 당국이 침해 제품과 관련된 상점 및 창고에 대해 정기적으로 급습 및 압류를 수행하였으며 침해자에 대한 행정 및 형사 처벌을 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시장 운영자는 위조자에 대한 경고를 게시하고, 보호 브랜드 목록을 작성한 지식재산 보호 브로셔를 배포하여 권리자들과 협력했다. 그러나 권리자들은 이러한 노력이 이 시장에서 침해 제품의 가시성을 줄이는데 불충분하다고 보고했다.

〈베트남〉

호치민시 Ben Thanh 시장

이 시장은 하노이시의 동 쑤언(Dong Xuan) 시장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소매시장 중 하나이다. 벤탄(Ben Thanh) 시장은 호치민시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 중 하나이며, 많은 관광객과 방문객을 끌어 들이는 도시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 및 현지에서 생산된 기념품부터 의류, 신발, 악세사리 및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모조품으로 알려져 있다. 권리자들에 따르면, 당국은 이러한 시장에 상대적으로 빈번한 단속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2019년 7월과 8월에 시 당국은 시가 14,200달러 침해 제품을 압수하는 두 번의 급습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전체 규모로 보았을 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침해 제품을 판매하는 공급 업체는 이러한 조치에도 단념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되었다. USTR은 베트남이 해당 시장 및 기타 지명된 시장에서 위조 상품 및 상표의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집행 조치를 강화하고 지속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노이시 Dong Xuan 시장

이 시장은 하노이시 구시가지 위치한 3층짜리 시장이며, 공급업체들은 위조 의류, 신발, 악세사리 및 화장품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 권리자들에 따르면, 현지 당국은 공급업체에게 침해 상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서명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현지 소비자들의 취향이 변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침해 상품을 구매하는 현지인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의 전반적인 지식재산 문제는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태국〉

방콕시 Patpong 시장

이 시장은 방콕에서 인기 있는 야시장으로 스포츠 의류, 시계, 핸드백, 의약품 및 불법 복제 DVD를 포함한 다양한 위조품을 판매한다. 태국 왕립 경찰과 경제 범죄 진압 부서의 감시 및 집행 조치에도 불구하고, 권리자들은 이용 가능한 위조품의 수량이 여전히 높다고 보고한다. USTR은 태국이 합법적인 권리자에 대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집행 노력을 권장한다.

• 2019 유럽집행위원회 IP 집행 및 보호 보고서

제3국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보고서

효율적이고 잘 설계되어진 균형 잡힌 지식재산 시스템은 혁신과 성장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핵심 지렛대의 역할을 한다. 지식재산권은 기업, 창작자 및 발명가가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투자의 수익을 창출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이다.

이 보고서는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유럽위원회의 노력의 일환이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06년부터 격년제로 출판되어 2018년 2월 21일부터 마지막으로 출간되었다.

이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상태(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가 가장 큰 염려를 일으키는 제3국을 식별하여 소위 "우선순위 국가"의 업데이트된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 세계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에 대한 포괄적 분석이 아니다. "우선순위 국가"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이 절대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가 아니라, 그러한 결함이 EU 이익에 가장 큰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들이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개선을 목표로 유럽위원회의 노력과 자원을 국가 및 특정 관심 분야에 집중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보고서 이후, 2019년 8월 31일까지 새로운 전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이 보고서는 또한 권리자, 특히 중소기업이 특정 제3국에서 사업 활동을 할 때 그들의 지식재산권에 미칠 잠재적 위험을 알리고, 따라서 그들이 무형자산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 전략과 운영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보고서는 정보의 출처로서 제3국의 당국에도 유용해야 한다.

처음으로, 식물 다양성 권리의 보호와 집행을 위한 별도의 부록이 마련되었다. 이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노출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 문제에서 식물 품종 보호의 중요성에 의해 정당화된다. 보도에 따르면 많은 EU 식물 품종들은 제3국에서 무력한 보호와 폐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EU의 품종업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실

을 입히고 있으며, 나아가 이 분야에 대한 추가 투자와 연구에 대한 생산동기가 상실되었다고 한다.

수확량의 향상, 효율적인 영양소 사용, 식물 해충과 질병에 대한 저항성, 해수와 가뭄에 대한 내성, 기후 스트레스에 대한 더 나은 적응성은 새로운 식물 품종업자들이 농업, 원예, 임업에서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에 대한 압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 역할이 된다. 기후변화와 국토에 관한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IPCC)의 최근 보고서(2019년)에 따르면, 식물 번식의 진보는 기후조건의 변화 하에 다양한 농작물과 관련한 식량 안보 강화에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작물을 기르게 되면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가뭄과 내열에 대한 내성을 증가시키며, 영양 공급과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

국가별 분석

〈중국〉 (우선순위1)

진전

중국은 최근 지식재산권을 담당하는 행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옛 중국 국가지식재산청(SIPO)은 저작권과 농업 지리적표시를 제외한 모든 지식재산권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현재는 중국 지식재산권 관리국(CNIPA)으로 바뀌어 비농특산물에 대한 특허, 디자인, 상표, 지리적 표시 등을 다루고 있다. CNIPA는 새로운 행정기관인 시장규제국(SAMR)에 보고하고, 집행사항도 개괄하여 국무회의에 직접 보고한다. 중국 국가판권국(NCAC)은 저작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유지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지리적표시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한다. 이 행정개혁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3개의 지식재산 전문법원을 설립하는 것은 분명한 진전이다. 그 뒤를 이어 항저우, 베이징, 상하이에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다루는 특정 인터넷법원이 생겨났다. 중국은 2019년 초 최고인민법원(SPC)의 일부로 지식재산 전문법원을 만들어 특허 사건에 주 초점을 맞추었다. SPC 내에 이와 같이 전문화된 지식재산

법원의 설립은 모든 수준에서 법원 결정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유망한 점으로 여겨진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은 지식재산 법안을 검토하고 개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상표법의 포괄적 개정뿐만 아니라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개정에 관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논평을 위해 발간된 특허법 초안에는 특허권 연장의 잠재적 포함, 손해배상 수준 증가 등 긍정적인 요소가 다수 포함됐다. 식물품종법 개정 또한 진행 중이다. 이 법의 채택은 중국이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1991)에 가입하는 데 더 가까워지게 할 것이며, 이는 환영할 일이다.

2019년 4월 20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여러 지식재산법을 개정했는데, 이는 악의적 등록에 관한 내용의 상표법을 강화했고,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 경쟁 행위 금지법을 개정했다. 2019년 1월, 중국은 악의적 상표등록 신청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공개 상담을 시작하였다. 이 지침의 초안은 이제 새로운 조항을 법률에 반영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EU가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전자상거래법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플랫폼별 온라인 침해 문제를 해결하였다.

개선 및 조치에 대한 우려

최근 몇 년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국의 법체계가 실질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법률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는 여전하며, 이는 종종 관계당국에 법과 규정의 실질적인 시행에 대해 이례적으로 넓은 재량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특허 출원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중앙집중적, 국부적으로 설정한 수량 기반의 하향식 인센티브가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014-2020 지식재산 전략에서 정한 중국의 특허 상용화 전략이 좋은 예시이다. 부여된 발명 특허의 품질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남아 있다. 더욱이, 실용모델의 광범위한 사용은 특정 기술 분야의 지식재산 권리 집단을 빈틈없이 만들어, 새로운 발명의 특허성과 사업화를 방해한다. 이해관계자들이 강조하는 또 다른 문제는 중국 침해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모색한 외국 기업의 특허에 대해 무효화 절차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EU 기업들은 기술통신 표준 '4G'와 같이 특정 표준 기능에 필수적인 기술에 대한 표준 필수 특허(SEPs)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EU 이해관계자들은 중국 기업들이 적절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러한 기술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중국 경쟁 당국은 종종 SEPs의 외국인 보유자에게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고, 터무니없이 낮은 사용료율을 설정하거나, 비즈니스 협상에 영향을 주기 위해 "비공식적인" 연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적용 가능한 규칙과 지침은 충분한 법적 확실성 및 타당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상표와 관련하여, 중국의 주요 관심사는 계속해서 부정한 상표등록이다. 최근 중국의 상표법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상표권 소유자의 사인이 회사명으로 사용되는 것은 그들을 보호하는 데에 중요한 허점으로 남아있다. 2019년 4월 부정 상표 등록과 관련한 상표법 개정안이 가시적인 진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EU 이해관계자들은 중국에서 디자인 보호 기간이 짧은 것에 대해 계속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디자인법 개정안은, 헤이그 시스템에 맞춰 디자인 특허 보호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이를 중국 제도가 도입하는 것을 EU가 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에 관해서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중국 저작권법 개정안은 아직 계류 중이다. 공개적인 이슈는 저작권 기간의 연장뿐 아니라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의 공연의 방송 제작자 및 실연자에 대한 보상 권리 도입을 포함한다.

EU 이해관계자들은 화학 물질에 대한 규제 데이터 보호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중국은 다른 등록 범주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어느 나라에서도 화학물질이 시판된 적이 없을 때만 "새로운" 물질로 정의한다. 이런 관행은 사실상 외국 제품을 차별한다.

영업 비밀과 관련해, EU 이해관계자들은 기밀 비즈니스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행정 및 규제 절차에 있어서 비효과적인 보호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유럽 회사들은 중국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외국 회사로부터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포함한 영업 비밀의 추출 및/또는 다른 양보에 대해 계속 불평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규제 및 행정환경에서

가능한 것인데, 중국은 종종 불투명하고 거추장스러운 인허가 시스템뿐만 아니라 적절한 행정적 검토 가능성 부족으로, 외국 기술을 추출해내기 위한 중국 공동 벤처 파트너와의 협력의 여지를 두고 있다. EU 기업들도 불공정한 상업적 이용과 사업 정보의 무단 공개에 대하여 재판 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보호를 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불공정 경쟁행위 금지법 개정이 실제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이다.

무역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중국 2025 전략'과 같이 국가가 정의한 핵심 기술 영역에서 외국 기술을 흡수하고 중국화 하려는 중국의 목표('재혁신')이다.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책은 다양하다. 이와 병행하여, 과학기술 진보에 관한 법률은 중국 정부가 후원하는 프로젝트에서 획득한 지식재산권과 기술을 중국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당국의 승인 대상인 외국 법인에 대한 지식재산권 이전 관련 대책이 2018년 3월 19일 국무회의로 강화된다. 중국의 인간 유전자원 검토 관련 규정에도 유사한 요구사항이 내재되어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은 많은 중국 공공 조달 절차가 외국 기업에 기술이나 노하우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유도 또는 강제기술이전(FTT)이 시스템적인 문제로 계속 대두되고 있다. 이는 시장 접근, 투자 접근 또는 기타 행정 승인과 교환하여 외국 기업이 중국에 기술을 이전할 것을 요구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정부 혹은 민간에 의해 행해지는 다양한 관행을 포함하는 복잡한 현상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외국 기업들이 특정 시장에 접근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전 조건으로 종종 시장 비율 이하에서 기술을 허가하도록 강요한다. 그러한 기술 이전은 공동기업의 요구사항, 지분한도, 허가, 허가 절차 또는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의 불충분한 보호를 포함하여 정책 지침, 법적 기구 및 관행을 통해 유도되거나 강제된다.

중국 정부의 위조 방지 노력은 인정하면서도 신기술과 엄청난 양의 침해에 발맞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 지재청(EU IPO)의 연구인 '위조 및 불법 복제 상품 무역의 경제적 영향 지도화(2016년)'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주요 위조품 생산국이다. EU의 '지식재산권 세관 집행에 관한 보고서'는 홍콩(중국)을 포함해 압수된 위조품의 약 80%가 중국산임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소비자에게 잠재적으

로 위험할 수 있는 가짜 의약품과 완구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앞선 품목, 고가의 패션 아이템 등 모든 종류의 위조품이 있다. 이해관계자들은 중국 당국의 상황 개선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상황이 여전히 매우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의 확산으로 중국 위조품과 불법복제 상품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접근이 보다 광범위하고 용이해짐에 따라 디지털 환경은 최근 몇 년간 상황을 분명히 악화시켰다.

2018년 채택돼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전자상거래법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법적 책임과 인수 조항이 불명확한 통보와 인수 절차로 인해 시행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한다. 따라서 중국이 적용 지침을 발표하는 등 새로운 전자상거래 입법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해관계자들은 또한 일대일로(Chinese Belt & Road Initiative, BRI)의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EU로 위조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히 통관 분야에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해관계자들은 또한 법적 절차와 법 집행기구에 의한 국내 권리자와 외국인 권리자의 차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이는 특히 행정 및 법원 절차상 영업 비밀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중국 당국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권리자의 우려를 보다 일반적으로 다루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파악한 구체적인 문제점 중 하나는 행정적 절차나 사법적 절차로 제출된 모든 외국 문서가 번거로운 공증 및 합법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되풀이되는 또 다른 문제는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획득이 어렵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지급된 손해배상은 실질적인 손실을 보상하지도 않고, 미래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한다.

중국 지식재산권 집행의 중요한 단점은 여러 지방과 도시 사이의 큰 차이이다. 베이징이나 상하이와 같은 도시에서는 행정부와 법원의 기준이 전반적으로 더할 나위 없고, 또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중국의 덜 발달된 지역에서는 전문성 부족 등의

심각한 문제가 대두된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은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행정기관과 법 집행기관 사이의 불충분한 협력과 외국인 권리자들이 당국으로부터 동등한 집행 조치를 얻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한다.

중국은 헤이그 협정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고, 최근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1991)에 가입하지 않았다.

EU 조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 개선을 위한 중국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사용되었다.

EU와 중국의 대화는 14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이 방법은 양쪽이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EU-중국 간 지식재산 대화는 연 1회, 기술 수준에서의 EU-중국 간 지식재산 워킹 그룹은 보통 연 2회 개최된다.

EU 지식재산청이 시행하는 기술협력 프로그램 지식재산 핵심 중국(IP Key China)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개선을 목적으로 우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모범 사례를 교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지식재산 핵심 중국 프로그램은 2017년 9월에 시작되어 4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EU와 중국 공동관세협력위원회도 지식재산권 집행에 대한 협력의 중요한 부분을 대표하고 있다. 2009년 제정되어 EU-중국 간 통관협력과 지식재산권 집행 계획을 위한 전략적 구조를 담당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의심을 받는 상품이 홍콩(중국)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회는 홍콩(중국) 당국과 직접 지식재산권의 세관 집행 협력에 관한 행동 계획 또한 수립했다.

또한 위원회는 중국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집행하려는 EU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중소기업 업무지원센터(IPR SME Helpdesk)를 중국에 설립했다. 헬프라인, 교육, 웹 기반 자료 등 업무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정보는 무료로

제공된다. 중국 지식재산권 중소기업 업무지원센터의 운영 기간이 2018년 초에 3년 더 연장되었다.

EU와 중국은 위조 상품 및 권리 침해로부터 중국의 유럽GI 100개와 EU의 중국GI 100개를 보호하기 위한 양자협정 협상을 타결했다. 양측 175개의 추가 명칭은 협정 발효 후 4년 이내에 동일한 수준의 보호 혜택을 받게 된다. 그 협정은 발효되기 전에 EU의 내부 입법 절차를 따를 것이다.

〈태국〉 (우선순위3)

진전

현 태국 정부의 정치적 약속과 지식재산권 부서의 분명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태국에서는 제한적인 진전이 있었다. 지식재산권 집행을 다루는 당국과 기관 간의 조정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집행소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개선되었다. 태국은 2019년 1월 시각장애인 및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통상적인 인쇄물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출판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라케시 조약을 체결했다. 태국은 2017년 11월 '상표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약 관련 의정서'에 가입한 데 이어 국제 상표 출원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 최근의 관련 법 개정은 '컴퓨터범죄법'의 개정을 포함한다. 태국 당국은 전자상거래와 소셜미디어 플랫폼, 브랜드 소유주 간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보였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모조품의 이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관계자간 양해각서 체결을 촉진했다.

특허 출원의 행정을 개선하고 이 분야의 막대하게 쌓인 업무를 줄이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개선 및 조치에 대한 우려

EU 이해관계자들은 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에 여전히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한다.

특허에 관하여, EU 이해관계자들은 심사원의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지식

재산사무소가 신청 물량을 따라갈 자원이 부족하여 특허 심사가 상당량 적체되고 있다고 보고한다. 특허 심사 기간은 태국의 특허 기간의 대부분을 포함한다. 최근 밀린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취한 조치가 우려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과 관련하여, EU 이해관계자들은 신탁관리시스템이 최소한의 투명성, 책임성, 좋은 관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고한다. 이러한 입법 체계는 권리자가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다수의 신탁관리단체(CMO)가 운영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여전히 주된 문제로 남아 있다. 사용자들은 태국의 신탁관리단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또한 EU 이해관계자들은 기술적 보호 조치의 우회 및 권한 관리 정보의 무단 변경 및 제거에 대한 적절한 법적 보호가 부족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보고한다. 저작권법은 기술 보호 조치의 우회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만 사전에 보호를 차단하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예외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EU 이해관계자들은 모조품과 불법 복제품의 광범위한 이용가능성이 지식재산권 집행에 있어 심각한 우려로 남아 있다고 보고한다. EU 지식재산청과 OECD의 '모조품 및 불법 복제품 거래 동향 연구(2019년)'에 따르면 태국은 전 세계의 위조 상품 및 불법 복제품에 대한 총 관세 압류 건수를 기준으로 꾸준히 6대 출처국에 속하고 있다. EU 지식재산청과 OECD의 '모조품의 실거래 경로 매핑(2017년)' 연구에서도 태국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가죽제품, 신발 등 모든 분야에서 위조 상품 수입 상위 10개국에 속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EU 이해관계자들은 위조품의 온라인 판매량이 지난 2년간 증가했다고 보고한다. 태국의 전자상거래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다양한 짝퉁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플랫폼과 권리자 간의 협력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전한다.

온라인 불법 복제 행위와 관련해, 온라인 불법 복제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컴퓨터범죄법의 개정안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U 이해관계자들은 몇몇의 사례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이 법에 따라 제정된 절차는 지나치게 길고 복

잡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보인다. 몇 가지 상황의 경우, 이 절차에 따른 지시가 보장되지 않았다.

국경 조치에 관하여, EU 이해관계자들은 제한된 인력과 자원으로 인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국경 조치가 부족하다고 보고한다. 이해관계자들은 또한 지난 2년 동안 국경에서 모조품의 압수 건수가 크게 감소했으며, 태국은 주로 중국에서 유래된 모조품의 주요 운송 거점이 되었고, EU와 세계 각지로 향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민·관 집행과 관련해 EU 이해관계자들은 사법적, 행정적 절차가 더디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권리를 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 집행 기관이 관여하고 위조 및 불법 복제 네트워크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사법 절차는 특히 복잡하다. 특히 재침해자에 대한 벌금을 포함한 벌칙은 효과가 낮아 아무런 억제 효력이 없다.

태국은 몇 년 전부터 WIPO 저작권 조약, WIPO 공연 및 음반협약, 헤이그 협정,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1991)을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EU 조치

2013년 3월, EU와 태국은 태국 내에서 효과적이고 적절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을 보장하는 규정을 포함 시킬 목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정치적 영향으로 최근 2년간 교섭이 중단된 상태다.

EU와 태국은 매년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상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지식재산대화(IP Dialogue)를 개최한다. 지식재산권 집행 활동에 대한 다자간 조약의 가입 준비와 구체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입법 절차가 지식재산대화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2017년 9월부터 시작된 지식재산 핵심 동남아(IP Key Southeast Asia) 프로그램에 따라 태국을 비롯한 지역 전역에서 지식재산청의 기술적 역량을 향상시키고 현대화하고, 모범 사례를 교환하고, 지식재산의 높은 보호 및 집행 표준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며, 지식재산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경쟁의 장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

동으로 조직되었다.

EU의 ASEAN 지역 통합 지원 프로그램(ARISE Plus)도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개선을 통해 ASEAN 국가 간 경제 통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속되어 왔다. EU는 ARISE Plus의 지식재산권 구성요소에 따라 태국과 같은 ASEAN 국가들이 글로벌 보호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플랫폼을 개발하며, 시기적절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ASEAN 지식재산청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 및 규제의 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활동에는 지식재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강화와 생산 부문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가 포함될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ASEAN 지역 통합을 지원하고 지식재산의 생성, 보호, 활용, 관리 및 집행을 위한 시스템을 더욱 업그레이드 및 개선하는 것이다.

끝으로 ASEAN 지식재산권 중소기업 업무지원센터(IPR SME Helpdesk)는 무료 정보 제공 및 기타 서비스 제공을 통해 EU의 중소기업이 태국을 포함한 역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무료 헬프라인, 교육 및 웹 기반 자료가 포함된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모니터링

〈베트남〉

진전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법체계에 어느 정도 진전을 보였다. 2018년 4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관점에서 본 2009년 지식재산법 개정 법률 및 법률 일부 조항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시행되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지침은 베트남의 지식재산권법에 사용되는 특정 용어를 명시함으로써 법률적 명확성을 제공한다.

2018년 10월에는 베트남 시장감시국을 산업통상부 산하 시장감시총국으로 격상시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투쟁을 개선했다. 정보에 따르면 해당 부서 산하에 63개의 도 단위 시장 감시 부서들을 둔다.

개선 및 조치에 대한 우려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하여, EU 이해관계자들은 악의적인 상표 출원이 증가했다고 보고한다. 국제 표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법률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지식재산권 집행 부족이라는 점이다.

OECD와 EU 지재청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많은 분야에서 모조품과 불법 복제 상품 무역의 중요한 생산국으로 남아 있다. 최근 EU의 지식재산권 세관 집행에 관한 보고서에는 베트남이 EU 세관에 억류된 지식재산권 침해로 의심되는 상품과 관련하여 검증 대상 상위 4개국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베트남이 2017년 억류된 모든 보석류 및 기타 액세서리의 거의 25%를 차지했으며, 전체 담배의 31%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와 관련해서는 2016년의 수치에 비해 2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U 이해관계자들은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 광범위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침해자에 대한 제재는 억제 효과가 미흡하고 관세 당국을 비롯한 지식재산 관리 담당자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되어왔다. 베트남의 집행 체계는 매우 복잡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권리자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

베트남은 아직 WIPO 저작권 조약, WIPO 공연 및 음반에 대한 조약, 산업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을 비준하지 않았다.

EU 조치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은 2019년 6월 30일 체결돼 현재 비준 절차를 밟고 있다. FTA에는 베트남이 TRIPS 협정의 기준을 넘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약속하는 실질적인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의 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협정으로 EU 혁신, 예술품 및 브랜드가 더 강력한 집행 조항을 통해 불법 복제되지 않도록 더욱 잘 보호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EU의 제약 분야는 데이터 보호의 개선과 마케팅 허가 과정에 지연이 있을 경우 최대 2년의 특허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

다는 가능성으로부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베트남은 계속해서 EU로부터 지식재산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적 지원을 받았다. 2017년 12월 종료된 유럽 무역 정책 및 투자지원 사업(MUTRAP)은 31개 시·도에서 약 130개의 기술지원 활동과 74개의 보고서 및 연구 서류의 발간, 300여개의 워크숍 및 교육과정 구성으로 그 목적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2017년 9월부터 시작된 지식재산 핵심 동남아(IP Key Southeast Asia) 프로그램에 따라, 베트남을 비롯한 지역 전역에 있는 지식재산청의 기술 역량을 향상, 현대화시키고, 모범 사례를 교환하였으며, 지식재산의 높은 보호와 집행 기준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등 지식재산 이해 관계자에게 보다 공정한 경쟁시장을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 조직되었다.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개선을 통해 ASEAN 국가 간 경제 통합 확대를 목표로 하는 EU의 ASEAN 지역 통합 지원 프로그램(ARISE Plus)에 따라 베트남에 추가 기술 지원이 주어진다. ARISE Plus의 지식재산권 구성 요소 아래, EU는 베트남과 같은 ASEAN 국가들이 글로벌 보호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ASEAN 지역 플랫폼을 개발하며, 시기적절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 향상을 목표로 ASEAN 지식재산청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 및 규제의 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민간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으로는 지식재산의 사회적 인식 강화와 생산 부문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등이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ASEAN 지역 통합을 지원하고 ASEAN 지역의 지식재산의 생성, 보호, 활용, 관리 및 집행을 위한 시스템을 더욱 업그레이드하고 개선시키는 것이다.

끝으로 ASEAN 지식재산권 중소기업 업무지원센터(IPR SME Helpdesk)는 무료 정보 제공 및 기타 서비스 제공을 통해 EU의 중소기업이 베트남 등 지역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무료 헬프라인, 교육 및 웹 기반 자료가 포함된다.

2020 저작권 수출에 따른 통상 현안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발 행 일 : 2020년 12월

저 자 : 김찬동 박윤석 김효주 김세창 안진영

발 행 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5층

전화 : 055-792-0000(대표)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copyright.or.kr/

인 쇄 : 더조은디자인연구소 (전화 : 055-763-4455)

총 서 명 : 저작권연구 2020-02

I S B N : 978-89-6120-468-2 (94010)

I S B N : 978-89-6120-047-9 (세트)

※ 본 연구보고서는 나눔글꼴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